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7

Ⅱ. 사업별 검토 ····· 8

【일반회계】 ····· 8

<세 출> ····· 8

1. 기본경비 사업: 과다한 전용 등을 통한 국외업무여비 집행 지양 ····· 8

❖ 대통령경호처 ····· 10

Ⅰ. 개 관 ····· 10

1. 결산 개요 ····· 10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

Ⅱ. 사업별 검토 ····· 15

【일반회계】 ····· 15

<세 출> ····· 15

1.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 문제 ·· 15

2.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비비 편성 후 이월 및 불용, 예비비를 통한 특수활동비 증액 부적절 ····· 18

❖ 국회 ····· 21

Ⅰ. 개 관 ····· 21

1. 결산 개요 ····· 2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6

Ⅱ. 사업별 검토 ····· 27

【총 괄】 ····· 27

1. 주요 재정사업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 노력 필요 ····· 27

【일반회계】 ····· 31

<세 출> ····· 31

2.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아르고스 인지도·활용도 미흡 ·· 31

3. 예산정책처정보화 사업: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용도·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35

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미흡 등 ····· 37

❖ 국가인권위원회 ·····41

Ⅰ. 개 관 ····· 41

1. 결산 개요 ····· 4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4

Ⅱ. 사업별 검토 ····· 45

【일반회계】 ·····45

<세 출> ····· 45

1.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 전문상담위원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4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법무부 ·····51

Ⅰ. 개 관 ····· 51

1. 결산 개요 ····· 5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7

Ⅱ. 사업별 검토 ····· 58

【일반회계】 ····· 58

<세 입> ····· 58

1. 면허료 및 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관광활성화 효과성 검토 필요 ····· 58

2. 몰수금 및 추징금: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금액 증가에 따른 환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62

<세 출> ····· 65

3. 공증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이용 접근성 강화 필요 ···· 65

4.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 68

5. 의무관 임상연구비: 외국인보호소 의무관 미확보 문제 ····· 71

6. 형사보상: 형사보상금 집행에 있어 과다한 이·전용 발생 문제 ····· 74

7.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을 사업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77

8. 안미영 특별검사: 예비비 이월 집행 문제 ····· 79

9.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외부의료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83

【교도작업특별회계】 ····· 87

<세 출> ····· 87

10. 시설보완: 설계비의 추가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필요 ·· 8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89

<수 입> ····· 89

11. 일반회계 전입금: 법령에 규정된 수납비율 징수 필요 ····· 89

<지 출> ····· 92

12. 신변보호장치: 위치추적장치 유지관리 강화 필요 ····· 92

❖ 법제처 ····· 94

Ⅰ. 개 관 ····· 94

1. 결산 개요 ····· 9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9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7

Ⅱ. 사업별 검토 ····· 98

【일반회계】 ····· 98

<세 출> ····· 98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영상회의실 이용실적 제고 필요 ····· 98

2.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01

❖ 감사원 ····· 104

Ⅰ. 개 관 ····· 104

1. 결산 개요 ····· 10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0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8

Ⅱ. 사업별 검토 ····· 109

【일반회계】 ····· 109

<세 출> ····· 109

1. 감사활동경비: 일반연구비 전액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109

2. 적극행정지원 사업: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 강화 필요 ····· 112
3.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사업: 자산취득을 위한 공사비 전용 부적정 ····· 116
4.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 연수과정 직접 운영 필요 ····· 119
5.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 12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27

Ⅰ. 개 관 ····· 127

1. 결산 개요 ····· 12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3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0

Ⅱ. 사업별 검토 ····· 131

【일반회계】 ····· 131

<세 출> ····· 131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 131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교육훈련 실시에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 133

❖ 헌법재판소 ····· 135

Ⅰ. 개 관 ····· 135

1. 결산 개요 ····· 13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3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8

Ⅱ. 사업별 검토 ····· 139

【일반회계】 ····· 139

<세 출> ····· 139

1. 인건비: 심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채용 등 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139
2.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44

❖ 대법원 ····· 146

Ⅰ. 개 관 ····· 146

1. 결산 개요 ····· 14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51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2

Ⅱ. 사업별 검토 ····· 153

【일반회계】 ····· 153

<세 입> ····· 153

1. 징계부가금: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153

<세 출> ····· 155

2. 국선변호료 지원: 국선변호료 집행관리 철저 ····· 155
3.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신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57
4.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예산비목 편성 필요 ····· 159

5.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시스템 개발 일정 준수로 관리용역비의 불용 발생 최소화 필요 ····· 161
6.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목적에 필요한 국외여비 예산편성 필요 ·· 163

【등기특별회계】 ····· 166

<세 출> ····· 166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업(신규): 홍보강화를 통한 점역서비스 집행률 개선 필요 ····· 166

정 무 위 원 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171

Ⅰ. 개 관 ····· 171

1. 결산 개요 ····· 17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7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75

Ⅱ. 사업별 검토 ····· 176

【일반회계】 ····· 176

<총 괄> ····· 176

1. 조세심판 운영: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우선처리제도 활성화 필요 ····· 176
2.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협동연구의 취지에 맞는 성과인센티브 운용 필요 ····· 180

<세 출> ····· 184

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신규): 예비비의 부적정 사용 ····· 184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집행상황 점검 및 일반수용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186
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기여금 산출근거 마련 필요 ····· 191
6. 국내여비: 여비의 사후적 전용 지양 ····· 194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 ····· 197

❖ 국가보훈부 ····· 202

Ⅰ. 개 관 ····· 202

1. 결산 개요 ····· 20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0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8

Ⅱ. 사업별 검토 ····· 209

【일반회계】 ····· 209

<총 괄> ····· 209

1. 국립 영천·이천·산청·괴산 호국원: 인건비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 209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연착륙 방안의 마련 필요 ····· 213

<세 출> ····· 220

3. 생계지원금: 연례적 과다계상 ····· 220
4. 지방보훈회관 건립: 실집행 부진 및 이월 규모 과다 ····· 223
5. 보훈병원 진료: 예산 추계시 추세의 적정 반영 필요 ····· 226
6.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정절차 적기 이행 필요 ····· 229
7.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일반용역비 부적정 집행 ····· 232

8. 제대군인 의료지원: 형식적 추계 관행의 시정 필요 ····· 236
9. 정전70주년계기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 ····· 238
10.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집행 ····· 240
11.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지연 우려 ····· 242

【보훈기금】 ····· 242

<지 출> ····· 242

11.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지연 우려 ····· 242

❖ 공정거래위원회 ····· 245

Ⅰ. 개 관 ····· 245

1. 결산 개요 ····· 245
2.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 구조 ····· 247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8

Ⅱ. 사업별 검토 ····· 249

【일반회계】 ····· 249

<세 출> ····· 249

1.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 제고 필요 ····· 249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정비 및 홍보 강화 필요 ·· 255
3. 소비환경개선 사업: 동일 자율과제의 연례적·관성적 선정 지양 필요 ····· 259
4. 데이터포털 구축 사업(종료): 장기계속계약 시 1차년도 사업지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의 연쇄적 예산이월 유의 등 ····· 264

❖ 금융위원회 ·····269

Ⅰ. 개 관 ····· 269

1. 결산 개요 ····· 26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7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5

Ⅱ. 사업별 검토 ····· 276

【일반회계】 ·····276

<세 입> ····· 276

1.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의 예산안 연례적 미편성 부적정 ····· 276

<세 출> ····· 280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중도해지율 과소추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재원부족 초래 등 ····· 280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등 ····· 285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 보증)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보호 시 도덕적 해이 주의 필요 ····· 292

5.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결성·투자 필요와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보고 등 ····· 297

6.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결원에 따른 연례적 불용 및 직제 외 파견인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302

7.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지연 부적정 등308

8.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유상유지보수 부적정 등 ····· 3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 317

<총 괄> ····· 317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 사업방식 전환 검토 필요 ··· 317

【공적자금상환기금】 ····· 323

<총 괄> ····· 323

10. 일반회계전입금 등: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부진 등 ····· 32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332

<지 출> ····· 332

11.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의 전출규모 확대 필요 ····· 332

【신용보증기금】 ····· 336

<지 출> ····· 336

12.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대환보증 계획액 과다추계 및 연도 중 사업내용 임의 변경 부적정 ····· 33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341

<총 괄> ····· 341

13. 구상권관리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 철저 및 회수율 제고 필요 ····· 341

<지 출> ····· 347

14. 대위변제 사업: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347

❖ 국민권익위원회 ·····351

Ⅰ. 개 관 ····· 351

1. 결산 개요 ····· 35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5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55

Ⅱ. 사업별 검토 ····· 356

【일반회계】 ·····356

<세 입> ····· 356

1.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시 관계법령의 신중한 검토 필요 등 ····· 356

<세 출> ····· 360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연례적 과소추계 및 부적정한 전용 지양 ····· 360

3. 청탁금지제도운영: 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 363

4.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종료): 임시조직 운영 근거의 사전 확정 필요 … 36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67

Ⅰ. 개 관 ····· 367

1. 결산 개요 ····· 367

2. 2023년도 결산 재정구조 ····· 37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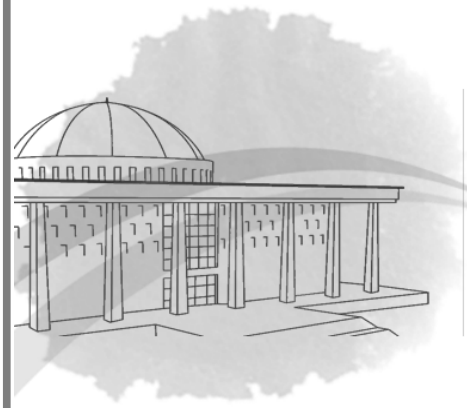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Ⅱ. 사업별 검토 ····· 372

【일반회계】 ·····372

<세 출> ····· 372

1. 총괄: 과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연사업 비중의 단계적 축소 노력 필요 ····· 372
2.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활성화 필요 377
3.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사업: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83
4.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 38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400만원(8%)이 적은 2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00만원(△58.9%)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97	297	665	368	297	297	273	△24	△392
총수입	297	297	665	368	297	297	273	△24	△392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총지출은 예산 대비 75억 8,000만원(7.7%)이 적은 909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9,200만원(7.9%)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3,132	93,132	84,251	△8,881	98,523	98,523	90,943	△7,580	6,692
총지출	93,132	93,132	84,251	△8,881	98,523	98,523	90,943	△7,580	6,69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으로, 2억 8,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억 7,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되고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97	297	-	297	284	273	-	10
합 계	297	297	-	297	284	273	-	1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85억 2,300만원으로, 이 중 909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75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8,523	98,523	-	±1,428	-	98,523	90,943	-	7,580
합 계	98,523	98,523	-	±1,428	-	98,523	90,943	-	7,58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자산은 전년 대비 944억 6,300만원이 증가한 7,918억 9,1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7억 8,4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5억 4,2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948억 9,5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1,200만원 증가한 14억 5,600만원으로 유동부채와 장기충당부채가 각각 9,000만원, 1억 2,200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42억 5,100만원이 증가한 7,904억 3,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8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8,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83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91,891	697,428	94,463	13.5
		유동자산	846	304	542	178.3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787,788	692,893	94,895	13.7
		무형자산	2,761	3,545	△784	△22.1
		기타비유동자산	496	686	△190	△27.7
	부 채		1,456	1,244	212	17
		유동부채	99	9	90	1,0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357	1,235	122	9.9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90,435	696,184	94,251	13.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98,535	95,550	2,985	3.1
	재정운영순원가		98,301	94,801	3,500	3.7
	재정운영결과		98,301	94,801	3,500	3.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2023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2개 프로그램, 8개 세부사업에서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당초 예산 편성과 다르게 국외업무여비를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외 출장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기본경비 사업: 과다한 전용 등을 통한 국외업무여비 집행 지양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 운용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08억 3,700만원 중 195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8%)되고, 12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20,697	20,697	-	1,036 △896	20,837	19,538	-	1,299	21,557
국외업무여비	276	276	-	426	702	702	-	-	426

나. 검토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당초 예산 편성과 다르게 국외업무여비를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외 출장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본경비 내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대통령 국외순방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

2) 일반회계-기본경비(1011-200)(총무비서관실)

초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용과 세목조정을 통해 4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외업무여비 전용 및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전용	기본경비	210-07 (임차료)	200	기본경비	220-02	부족 재원 마련
세목조정	기본경비	220-01 (국내여비)	226	기본경비	220-02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2019년 3억 1,000만원, 2020년 2억 1,300만원, 2021년 4억 500만원, 2022년 2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23년은 예산 대비 과다한 7억 200만원이 소요되었음.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3년에는 코로나 19가 안정되며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실무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수요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추경 (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D=B+C)	지출액 (E)	불용액	집행률 (E/D)
2019	300	300	15	315	310	5	98.4
2020	300	250	-	250	213	37	85.2
2021	270	270	150	420	405	15	96.4
2022	253	240	-	240	214	26	89.2
2023	276	276	426	702	702	-	10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 재구성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재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예산보다 154.3%를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억 4,700만원(767%)이 많은 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153.8%)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5	75	334	259	67	67	514	447	180
총수입	75	75	334	259	67	67	514	447	180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억 8,400만원(3%)이 많은 1,198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8,500만원(15.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6,996	96,404	103,821	7,417	116,322	116,322	119,806	3,484	15,985
총지출	96,996	96,404	103,821	7,417	116,322	116,322	119,806	3,484	15,9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7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수납 징수결정되어 5억 1,400만원이 수납(수납률 767%)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7	67	-	-	67	514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0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1,198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1%)되고 56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6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6,322		149	514	13,671	130,142	119,806	5,669	4,666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년 대비 362억 700만원이 증가한 7,701억 7,4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7,665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8억 2,0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억 4,600만원 증가한 7억 4,600만원으로 유동부채 7억 5,0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54억 6,000만원이 증가한 7,694억 3,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1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5,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70,174	733,967	36,207	4.9
		유동자산	126	25	101	404
		투자자산	361	433	△72	△16.6
		일반유형자산	766,583	729,763	36,820	5
		무형자산	3,061	3,703	△642	△17.3
		기타비유동자산	43	43	-	-
	부 채		746	-	746	순증
		유동부채	746	-	746	순증
	순자산		769,427	733,967	35,460	4.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1,137	104,668	16,469	15.7
	재정운영순원가		119,900	102,247	17,653	17.3
	재정운영결과		119,900	102,247	17,653	17.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와 경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경호업무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역량 강화를 목표로 예산을 집행함. 특히, 과학화된 첨단 경호경비 장비·시설물 도입 등 경호 과학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통령경호처는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소통하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집행 소요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하는 한편, 대통령실 청사 보안강화 공사 등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뒤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계획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 문제

가. 개 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은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정상 등에 대해 경호하는 것으로, 2023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현액 50억 500만원 중 45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0%)되고, 4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	-	-	5,005	5,005	4,507	-	498	-
운영비	-	-	-	2,823	2,823	2,495	-	328	-
여비	-	-	-	105	105	105	-	-	-
특수활동비	-	-	-	500	500	500	-	-	-
업무추진비	-	-	-	200	200	199	-	1	-
건설비	-	-	-	364	364	237	-	128	-
유형자산	-	-	-	1,013	1,013	971	-	42	-

2) 일반회계-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1231-309)(기획관리실)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소통하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집행 소요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경호안전 통제단, 각국 정상 전담 경호대를 편성·운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 50억 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호장비 임차에 필요한 임차료 14억 1,600만원, 특수활동비 5억원, 경호요원 방탄장비, 경호위해물품 검색 장비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억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예비비를 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고(예측불가능성),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출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기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충당할 수 없어야 하는(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그런데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고, 외교부의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이 2023년 예산안에 120억원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음.

[2023년도 외교부 소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본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일용임금(110-04)	사무원 6명, 에디터 1명, 연구원 3명 채용	389
일반수용비(210-01)	기획단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자문료, 자료제작비 등	319
특근매식비(210-05)	준비기획단 특근매식비	5
임차료(210-07)	준비기획단 사무실 및 사무기기, 정상회의 행사장, 의전차량 등의 임차	2,430
일반용역비(210-14)	정상회의 행사장 조성·홍보 및 부대행사 진행 등을 위한 용역비	7,117
국내여비(220-01)	직원·행사지원 인력 등의 국내 출장비 및 관계부처(부산시·해수부·문체부 등)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 출장비	52
국외업무여비(220-02)	사전협의 출장, 정상회의 참석자 초청	1,280
사업추진비(240-01)	정상회의 개최 관련 업무 협의, 오만찬 및 선물비 등	360
직책수행경비(250-02)	준비기획단 간부 직책수행경비 지급	15
합 계		12,000

자료: 외교부 2023년 예산안 편성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담당부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예산안 요구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증액 요구를 했어야 하나, 전반적인 회의 일정 및 경호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처럼 예비비를 통해 경호장비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소요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이 심의되지 않아 예산 소요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소통하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비비 편성 후 이월 및 불용, 예비비를 통한 특수활동비 증액 부적절

가. 개 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용산청사, 전직시설 등 경내·외 과학경호경비시설 구축 및 첨단경호경비장비 도입을 통해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47억 2,000만원 중 171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0%)되고 55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3)]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수행을 위한 직·간접적 경비편성 및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80억 1,100만원 중 176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되고, 3억 3,300만원 불용되었음.[4)]

[2023년도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호장비 시설개선	17,005	17,005	149	105	7,566	24,720	17,172	5,502	2,046	20,539
운영비	302	302	-	-	-	302	284	-	18	1,808
연구용역비	100	100	-	105	-	205	168	-	38	200
건설비	9,369	9,369	-	-	5,189	14,558	8,372	4,543	1,644	11,642
유형자산	7,234	7,234	149	△105	2,377	9,654	8,348	959	347	6,889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16,911	16,911	-	-	1,100	18,011	17,678	-	333	26,203
특수활동비	6,755	6,755	-	-	1,100	7,855	7,855	-	-	7,604

3) 일반회계-경호장비시설개선(1231-302)(기획관리실)

4) 일반회계-요인 및 국빈경호활동(1231-301)(기획관리실)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하는 한편, 대통령실 청사 보안강화 공사 등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뒤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계획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명목으로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예비비를 75억 6.600만원 편성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1231-301)' 사업에도 특수활동비 1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예비비를 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고(예측불가능성),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출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기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충당할 수 없어야 하는(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실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장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2023년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예비비가 배정된 일자는 2023년 9월 26일로, 당시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5]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도청 위협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차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대통령경호처의 설명대로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을 인정하더라도, 배정받은 예비비 75억 6,600만원 중 13억 4,400만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이월(54억 8,500만원)되고 불용(7억 3,700만원)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비해 집행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관련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	1,100	1,100	'23.9.26.	-	-
경호장비시설개선		7,566	1,344		5,485	737
합 계		8,666	2,444		5,485	737

자료: 대통령경호처

5) 2023.4.10.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있었음.

예를 들어, 대통령실 청사 보안강화 공사는 2024년 10월 말 완료예정이라는 점, 외산장비 구매는 납품지연으로 인해 2024년 6월 말 구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점에서 예비비의 적시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특수활동비 운용에 대한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비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억 7,800만원(23.3%)이 적은 32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00만원(△14.5%)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총수입	4,163	4,163	3,765	△398	4,196	4,196	3,218	△978	△547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7억 9,200만원(4.8%)이 적은 6,95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억원(6.1%)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총지출	703,841	699,809	655,471	△44,338	730,563	730,563	695,771	△34,792	40,30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1억 9,600만원으로, 34억 3,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2억 1,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6%)되고 1,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억 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196	4,196	-	4,196	3,437	3,218	15	205
합 계	4,196	4,196	-	4,196	3,437	3,218	15	20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430억 1,800만원으로, 이 중 6,957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93억 2,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9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30,563	730,563	9,422	△6,804 6,804	3,034	743,018	695,771	9,322	37,925
합 계	730,563	730,563	9,422	△6,804 6,804	3,034	743,018	695,771	9,322	37,92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회 자산은 전년 대비 27억 6,900만원이 증가한 6조 2억 5,3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 8억 1,600만원 및 무형자산 147억 8,7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83억 100만원 증가한 490억 600만원으로 유동부채 26억 9,700만원 및 장기차입부채 56억 5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억 3,200만원이 감소한 5조 9,512억 4,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2,827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7억 6,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572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6,7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6,000,253	5,997,484	2,769	0.0
		유동자산	3,678	3,943	△265	△6.7
		투자자산	816	-	816	-
		일반유형자산	5,919,299	5,931,825	△12,526	△0.2
		무형자산	76,299	61,512	14,787	24.0
		기타비유동자산	160	205	△45	△22.0
	부 채		49,006	40,705	8,301	20.4
		유동부채	15,537	12,840	2,697	21.0
		장기차입부채	33,455	27,850	5,605	20.1
		장기충당부채	14	16	△2	△12.5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5,951,247	5,956,779	△5,532	△0.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82,792	250,030	32,762	13.1
	재정운영순원가		757,256	707,389	49,867	7.0
	재정운영결과		757,256	707,389	49,867	7.0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회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역량 강화를 수행하였음.

2023년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인해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회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는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적절한 예산과목 조정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회도서관이 운영 중인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시스템 이용빈도, 인지도, 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활동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종류의 신설과 삭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서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의 형식적 개편보다 실질적으로 의원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슈와 논점」, 「국정감사 이슈분석」과 같은 대표 보고서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주요 재정사업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입법활동지원’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활동, 의원사무실 운영, 뉴스저작물 및 주요 언론사 DB 이용을 통한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53억 1,600만원 중 47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4%)되고, 8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72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세미나·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개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5억 9,300만원 중 57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3%)되고 18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3)]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국회 통합데이터센터와 디지털열람실 및 디지털 체험·전시관 등을 포함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 2,2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4)]

---

2) 일반회계-입법활동지원(1031-300)

3) 일반회계-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

4) 일반회계-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2023년도 국회 주요 재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입법활동지원	57,344	57,344	181	10 △2,219	-	55,316	47,235	847	7,234	50,450
입법 및 정책개발	7,639	7,639	-	△46	-	7,593	5,716	-	1,877	7,639
국회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3,022	3,022	-	-	-	3,022	-	-	3,022	2,613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인해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회사무처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SNS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정책세미나 요약영상 제작,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국회방송 SNS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SNS동영상 제작지원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정책세미나 요약 영상 제작 사업	820,000	331,094	-	488,906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600,000	-	544,414	55,586
국회방송 SNS 동영상 제작지원사업	1,030,000	721,153	162,810	146,037
기 타	550,000	-	-	550,000
합 계	3,000,000	1,052,247	707,224	1,240,529

주) 기타는 예측치 못한 집행 소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자료: 국회사무처

‘정책세미나 요약 영상 제작’ 사업은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각종 정책세미나·토론회 등을 요약영상, 숏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고, 의원실의 의정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

또한, SNS 인플루언서와 국회 구성원이 함께 출연하여 국회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사업인 ‘영상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획과 사업자 선정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불용액을 제외한 5억 4,4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

국회사무처는 향후 이처럼 사업예산 불용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는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적절한 예산과목 조정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9년 76.9%, 2020년 72.7%, 2021년 64.6%, 2022년 72.6%, 2023년 75.3%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 조정 등 방안이 필요함.

2020년 코로나 이후 2023년의 집행액이 가장 높아 집행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집행률(76.9%)보다는 낮은 수준임.[5)]

[최근 5년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8,337	8,337	-	200 △200	8,337	6,414	76.9	-	1,923
2020	8,337	5,937	-	100 △100	5,937	4,317	72.7	-	1,620
2021	7,681	7,681	-	-	7,681	4,959	64.6	-	2,722
2022	7,651	6,609	-	△10	6,599	4,792	72.6	-	1,807
2023	7,639	7,639	-	△46	7,593	5,716	75.3	-	1,877

자료: 국회사무처

5) 국회사무처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기본경비를 소진하였거나 연내 소진이 예상되는 의원실에 배분되는 추가지원경비의 비율을 2021년부터 확대(20% → 30%)하고, ② 2022년 추가지원경비의 지급 시기를 8월에서 6월로 앞당겼으며, ③ 2차 추가지원경비를 전체 의원실에 균등 배분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의원실에 재배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였으며, ④ 연구용역 비용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공동연구 발주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설명함.

국회사무처는 향후 70%의 기본지원경비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집행이 활발한 의원실이 더 많은 정책개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6] 이와 더불어 불용액 비중이 큰 일반수용비를 줄이는 대신, 토론회 개최 관련 사업추진비를 일정액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여러 차례 유찰과 가격협상 결렬로 인해 지연되다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타당성재조사[7]를 실시함에 따라 2023년 예산 30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러한 집행부진은 2022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안임.[8]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현재 매년초 의원실에 배정된 경비의 70%를 균등배분하고, 추가 경비에 대해 1차 신청을 받아 나머지 30%를 배정하게 됨. 추가 경비 미신청에 따른 예산 잔액에 대해 2차 신청을 받아 의원실에 배분함.

7) 「국가재정법」 상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실시함.

8)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국회사무처는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공사일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집행 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일반회계】

<세 출>

2.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아르고스 인지도·활용도 미흡

가. 개 요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 · 운영’ 사업은 뉴스·소셜 데이터 등 국회 외부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안 이슈 추출 및 관련 전문자료를 연계 제공하여 국회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억 5,500만원 중 6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도서관 운영	27,364	27,364	-	-	27,364	27,147	-	217	31,451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655	655	-	-	655	651	-	4	655

나. 검토의견

국회도서관이 운영 중인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시스템 이용빈도, 인지도, 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활동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일반회계-전자도서관 운영(3035-500)(정보관리국)

국회도서관이 2019년부터 서비스 중인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nanet.go.kr)는 뉴스 및 소셜미디어를 분석하여 국회도서관의 자료 등 국회 내·외부 자료와 융합하여 의정 현안과 관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최신이슈에 대한 뉴스 타임라인·언급량 추이 및 연관어 분석 등 뉴스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관련 뉴스와 지역구 이슈 분석 등 국회의원 맞춤형 서비스, 법률과 통계를 연계한 입법과 통계 서비스 등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함.

또한, 자연어 질의에 대해 검색 결과를 생성형 AI로 요약해 출처정보원과 함께 제공하는 ‘AI 서치’와 매시간 정치, 경제, 사회, 국회/정당 등 분야별 뉴스들을 생성형 AI로 요약하여 브리핑 형태로 제공하는 ‘이시각 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일평균 이용자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 일반 국민은 432명에 불과하고, 국회 내부직원의 일평균 이용자수는 30명 수준임.

[최근 3년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월별, 일평균 접속자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국회내부직원	일반국민	국회내부직원	일반국민	국회내부직원	일반국민
1월	395	502	894	2,715	519	4,004
2월	1,089	982	857	2,013	1,448	6,337
3월	895	1,222	1,096	3,414	936	10,016
4월	673	1,211	1,109	3,793	886	11,557
5월	711	1,244	819	3,654	802	12,832
6월	796	1,470	751	4,940	1,016	12,480
7월	715	1,685	774	3,889	908	21,432
8월	876	2,401	730	4,066	968	17,083
9월	928	1,658	659	4,320	857	15,363
10월	813	1,871	663	3,502	853	14,098
11월	773	1,798	739	3,426	1,217	17,733
12월	574	1,919	645	3,795	693	14,609
일평균	25	49	27	119	30	432

자료: 국회도서관

2023년 기준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일평균 접속자수 12,844명, 국회전자도서관 146,638명, 국회도서관 4,832명 등 국회도서관의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 이용빈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국회도서관 주요서비스 일평균 접속자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9,792	14,458	12,844
국회전자도서관	92,693	108,998	146,638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4,161	4,493	4,832
국가전략정보포털	-	-	3,770

주) 일반국민 접속자수 기준
자료: 국회도서관

특히, 「2023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인지율 28.8%, 이용 경험률 47.3%, 종합만족도 66.0점으로 국회도서관 서비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인지율, 이용경험률 및 종합만족도 현황]

(단위: %,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률(%)	종합 만족도(점)			
				적시성	정보내용(점)	편익성
최신정책정보	85.6	70.0	74.9	75	75.3	74.5
의회정보조사회답	85.2	80.4	73	71	73.6	74.3
팩트북(FactBook)	80.2	75.7	76.2	76	77.2	75.3
현안, 외국에선?	78.6	78.7	77.4	77.7	77	77.4
국회의원정책자료	75.1	70.5	72.1	72.1	72.1	72.2
입법지식서비스	61.1	67.5	74.3	74.1	74.5	74.3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47.1	49.6	69.6	69.2	70	69.6
국가전략정보포털	41.6	50.5	73.6	73.6	74.5	72.7
AI의정분석서비스아르고스	28.8	47.3	66	67.9	62.9	67.1

주) 인지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자료: 국회도서관, 「2023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국회도서관은 국회 직원·의원실 및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10]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활동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사용법 교육 및 설명회, 홍보 현황

내용	일자	대상
국회직원 대상 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분석 교육('22~'23) -아르고스 서비스 소개 및 데이터 활용 안내	2022.7.21., 2023.8.24.	국회직원
국회의원실 대상 아르고스 설명회 -아르고스 서비스 설명 및 시연 -이용 안내 리플릿 배포 -활용 경험 및 불편사항 등 설문조사 실시	2023.6.8.~ 6.30.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출입기자단 및 의원보좌직원 대상 간담회 -아르고스 서비스 설명 -아르고스를 활용한 국정감사 대비 아이템 발굴·추출 시연	2023.9.21.	국회 출입 기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
제22대 개원 기념 의원실 방문 설명회 -아르고스 서비스 설명 및 시연	2024.7.~	국회의원 보좌진

자료: 국회도서관

3. 예산정책처정보화 사업: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용도·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예산정책처정보화’ 사업은 예산정책처 내·외부 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노후 정보기기 교체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억 400만원 중 9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예산정책처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예산정책처정보화	861	861	143	-	1,004	964	-	40	969

나. 검토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재정통계시스템(www.nabostats.go.kr)은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임.

위원회 및 소관부처별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계, 북한통계, OECD · IMF · Worldbank 등의 국제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관련한 수정내역, 부대의견, 시정요구 등 국회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회심사연혁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구축 이후 매년 이용실적을 보면, 일평균 접속자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112→106→103→92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특히, 국회 내부직원은 2023년 기준 일평균 8.76명에 불과한 상황임.

---

11) 일반회계-예산정책처정보화(4033-500)(기획관리관)

[최근 5년간 재정통계시스템 접속자수 현황]

(단위: 명)

연도	국회내부			국회외부			합계		
	이용자수	월평균	일평균	이용자수	월평균	일평균	이용자수	월평균	일평균
2019	3,992	332.7	10.94	26,064	2,172.0	71.41	30,056	2,504.7	82.35
2020	3,776	314.7	10.32	37,211	3,100.9	101.67	40,987	3,415.6	111.99
2021	2,604	217.0	7.13	36,099	3,008.3	98.90	38,704	3,225.3	106.04
2022	2,676	223.0	7.33	35,219	2,934.9	96.49	37,895	3,157.9	103.82
2023	3,196	266.3	8.76	30,455	2,537.9	83.44	33,651	2,804.3	92.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와 같이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최신 통계수치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일부 통계들이 과거 수치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결국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12)]

실제 2023년 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의정활동지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메일링서비스 및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중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인지도가 가장 낮고, 홈페이지에 비해 활용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스템의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의원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관련 만족도조사 결과]

(단위: 점, %)

구분	국회의원			보좌진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점)	인지도(%)	활용률(%)	만족도(점)
홈페이지	68.0	68.2	73.0	74.4	72.7	70.9
메일링서비스	53.1	64.1	76.9	55.2	63.2	77.6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	**45.9**	**59.6**	78.3	**38.4**	**64.8**	74.3
인지도/활용률 및 만족도 평균	55.7	64.0	76.1	56.0	66.9	7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요약 보고서」, 2023.12. 재구성

12) 예를 들어, 2024.4.9. 기준, 위원회별 통계-법무부-난민인정현황은 2021년이 마지막 업데이트이나, 2023년에 이미 2022년 통계가 발표되었음(법무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3.6.)

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미흡 등

가. 개 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사업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억 8,500만원 중 7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9%)되고,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입법영향분석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5%)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882	882	-	25 △22	885	796	-	89	-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483	483	-	35 △44	475	443	-	31	-

주) 2024회계연도부터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으로 통합

나. 검토의견

첫째, 2020년 이후 입법조사처가 매년 초에 수립하는 보고서 발간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입법조사처는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종류별로 살펴보면, ‘NARS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는 당초 발간계획 수립 시에는 없었으나 10건이 발간되었고, ‘이슈와 논점’은 130건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13) 일반회계-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5032-301)(기획관리관)

14) 일반회계-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기획관리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NARS 현안분석’ 보고서는 계획 대비 34건 부족하여 실적이 크게 밑돌고 있고, ‘NARS 입법·정책’ 보고서는 12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NARS Brief’ 보고서는 2023년 신규로 29건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세미나·간담회 요약, 발간계획 소개, 자문기구 출범 보도자료 형태도 있어, 입법·예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서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계획 및 실적]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NARS 입법 · 정책	31	27	33.5	24	35	23
NARS 입법영향분석	3	3	8	7	1	2
NARS 현장실태조사	-	-	-	-	-	10
NARS 현안분석	77	53	61	42	66	32
이슈와 논점	118	123	153.5	129	131	130
외국 입법·정책 분석	38	16	15	11	18	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1	1	1	1	1	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2	1	1	1	-
NARS Brief	-	-	-	-	-	29
공동연구보고서	-	-	-	-	8	1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	-	-	-	3
기타 발간물	8	10	8	8	8	8
합계	276	235	281	223	269	259

주 1) NARS 입법영향분석은 사후입법영향분석,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는 사전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보고서
2) 기타 발간물은 학술지, 국회입법조사처보,, 연차보고서 등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의 핵심 업무 두 가지가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회답과 입법 및 정책 관련 보고서 제공이라고 보았을 때,[15] 매년 보고서 발간실적이 계획 대비 미진하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5)「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 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최근 3년간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접수 및 회답건수]

(단위: 건, 일)

연도	조사분석 접수건수	회답건수	철회건수	평균회답기간
2021	6,005	5,763	380	22.9
2022	5,286	5,071	270	15.7
2023	5,035	4,822	293	16.9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둘째,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의 개정을 통해 보고서 종류의 신설과 삭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서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의 형식적 개편보다 실질적으로 의원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슈와 논점」, 「국정감사 이슈분석」과 같은 대표 보고서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처는 2021년 12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개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NARS Issue of the Year)」를 기타보고서로 추가하여 2021년과 2022년 각각 2건, 1건 발간하였으나, 2023년은 1건의 발간계획에도 불구하고 발간실적이 없었음.

2023년 7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 「NARS 현장실태조사(NARS Field Research on Law and Policy)」와 「NARS 브리프(NARS Brief)」 보고서를 신설하고 각각 10건과 29건의 보고서를 중간에 발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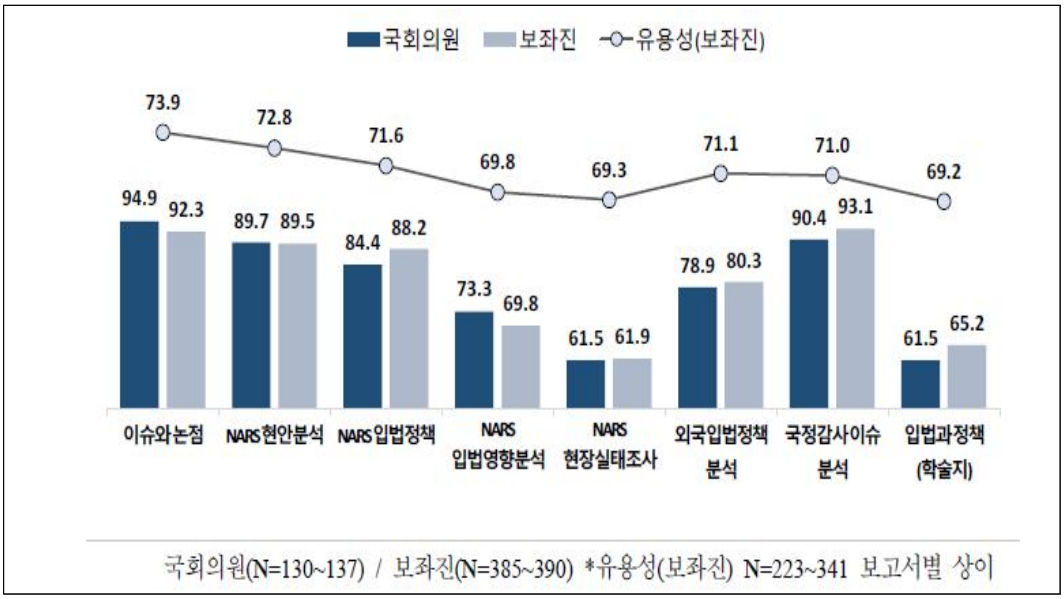
그런데 2023년 1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개정을 통해 같은 해 7월에 신설한 「NARS 현장실태조사 (NARS Field Research on Law and Policy)」를 다시 폐지하였고, 2023년 20건의 실적이 있었던 「외국 입법·정책 분석(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olicies)」도 폐지함.

의원실 등 수요자를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보고서를 개편하고, 보고서의 종류를 시의적절하게 변형·추가하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입법조사관들의 연간업무 계획 차질과 보고서의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측면도 있음.

향후 보고서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원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슈와 논점」, 「국정감사 이슈분석」과 같은 대표 보고서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처 발간물 열독률(읽은 비율) 및 유용성]

(단위: 건,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조사」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00만원(14.8%)이 많은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210.0%)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	12	10	△2	27	27	31	4	21
총수입	12	12	10	△2	27	27	31	4	21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억 4,200만원(△4.0%)이 적은 393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600만원(0.9%)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336	39,024	39,105	81	41,013	41,013	39,371	△1,642	266
총지출	39,336	39,024	39,105	81	41,013	41,013	39,371	△1,642	266

문의 : 신대용 예산결산조사관 sdy1123@assembly.go.kr (02-6788-567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3,100만원이 수납(수납률 115.3%)되었으며,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7	27	-	27	43	31	-	12
합 계	27	27	-	27	43	31	-	1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0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93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3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5,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1,013	41,013	-	-	-	41,013	39,371	384	1,257
합 계	41,013	41,013	-	-	-	41,013	39,371	384	1,257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의 229억 6,500만원보다 7,100만원(△0.3%)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1억 5,800만원 증가, 투자자산 2,100만원 증가, 일반유형자산 2억 9,400만원 감소, 무형자산 1억 4,100만원 증가, 기타비유동자산 9,7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프로그램순원가는 431억 1,500만원이며, 인건비 10억 3,500만원 증가, 복리후생비 1억 9,600만원 증가, 소모품비 2억 4,200만원 감소, 광고선전비 7억 4,600만원 감소, 지급임차료 1억 3,800만원 증가, 여비교통비 1억 6,200만원 증가, 연구개발비 1억 9,5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 대비 7억 3,000만원 증가하였음.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4억 5,000만원 증가함.

2023회계연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말순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29억 6,500만원보다 7,100만원(△0.3%)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 229억 6,5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 426억 6,300만원을 차감, 재원의조달및이전 426억 2,600만원을 가산, 조정항목 3,400만원을 차감한 결과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2,894	22,965	△71	△0.3
		유동자산	168	10	158	1,580
		투자자산	21	0	21	순증
		일반유형자산	17,498	17,792	△294	△1.7
		무형자산	2,373	2,232	141	6.3
		기타비유동자산	2,834	2,931	△97	△3.3
	부 채		0	0	0	0
		유동부채	0	0	0	-
		장기차입부채	0	0	0	-
		장기충당부채	0	0	0	-
		기타비유동부채	0	0	0	-
	순자산		22,894	22,965	△71	△0.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3,115	42,385	730	1.7
	재정운영순원가		42,663	42,383	280	0.7
	재정운영결과		42,663	42,383	280	0.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제고를 2023년도 업무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인권침해 및 구제의 전문적인 상담 수행이 목적이나, 상담 건수와 방문상담일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예산불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 전문상담위원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은 전문상담원을 고용하고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인권관련 전문 상담을 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300만원 중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6%)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상담서비스 접근성제고	177	177	-	△10	167	140	-	27	423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117	117	-	△14	103	82	-	21	101

나. 검토의견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 사업은 전문상담위원 인원 수와 서비스 이용자의 방문 상담 일수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예산의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전문상담위원 상담 서비

2) 일반회계-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인권상담조정센터)

스의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함.

동 사업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방문상담 운영을 통하여 인권 관련 침해 및 진정 등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한 건수는 2019년 2,245건에서 2023년 715건으로 68% 감소하였으며, 내부직원 및 일반 상담사의 상담비중이 70%를 넘어 전문상담위원의 전문상담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상담 건수]

(단위: 건수, %)

구 분	계	인권전문상담위원		직원 및 상담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9년	2,245	1,210	53.9	1,035	46.1
2020년	1,028	253	24.6	775	75.4
2021년	899	316	35.2	583	64.8
2022년	808	270	33.4	538	66.6
2023년	715	208	29.1	507	70.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수는 2019년 51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2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팬데믹이 해제된 2023년에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감소하여 26명의 인원으로 축소되었음.

[최근 5년간 전문상담위원 수]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변호사	22	13	13	14	13
노무사	9	12	12	10	10
군인권 전문가	2	2	2	1	1
수화통역	2	-	-	1	1
기타	16	-	-	1	1
계	51	27	27	27	2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의 감소와 함께 상담희망자 방문일수와 상담건수도 2019년 각각 884일, 1,210건에서 2023년 153일, 208건으로 급감하였음.

[최근 5년간 전문상담위원 상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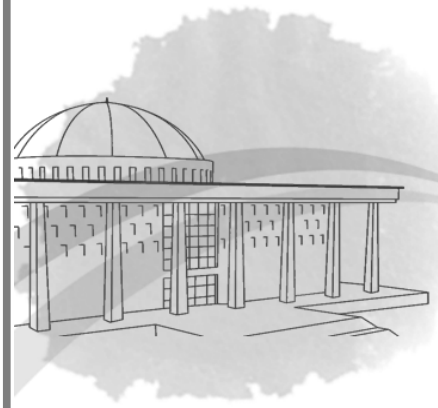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단위: 일,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문 일수	884	301	305	220	153
상담 건수	1,210	253	316	270	20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상담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래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831억 8,000만원(12.9%)이 많은 1조 5,98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1억 6,600만원(17.1%)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20,468	1,420,468	1,359,572	△60,896	1,410,649	1,410,649	1,591,479	180,830	231,907
기 금	3,998	3,998	5,433	1,435	4,342	4,342	6,692	2,350	1,259
총수입	1,424,466	1,424,466	1,365,005	△59,461	1,414,991	1,414,991	1,598,171	183,180	233,166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95억 4,000만원(△0.9%)이 적은 4조 1,915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2억 600만원(1.7%)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91,958	4,080,098	4,042,935	△37,163	4,148,364	4,148,364	4,111,155	△37,209	68,220
기 금	82,689	82,689	78,403	△4,286	82,721	82,721	80,389	△2,332	1,986
총지출	4,174,647	4,162,787	4,121,339	△41,448	4,231,085	4,231,085	4,191,544	△39,540	70,20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4,673억 1,300만원으로 1조 6,607억 4,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6,454억 2,1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1%)되고 1억 2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52억 2,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345,834	1,345,834	-	1,345,834	1,536,209	1,521,207	102	14,900
교도작업특별회계	121,479	121,479	-	121,479	124,536	124,214	-	323
합 계	1,467,313	1,467,313	-	1,467,313	1,660,745	1,645,421	102	15,223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3,073억 200만원으로, 이 중 4조 2,523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30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였으며, 419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176,002	4,176,002	6,860	△1,437	1,525	4,185,823	4,139,309	12,345	34,169
교도작업특별회계	121,479	121,479	-	-	-	121,479	113,046	689	7,744
합 계	4,297,481	4,297,481	6,860	△1,437	1,525	4,307,302	4,252,355	13,034	41,91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133억 4,700만원으로 1,353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되어 1,336억 5,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16억 7,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347	113,347	135,333	133,658	-	1,675
합 계	113,347	113,347	135,333	133,658	-	1,67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133억 4,700만원으로, 이 중 1,336억 5,8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7.9%)되고 23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였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347	113,347	-	113,347	133,658	-	2,340
합 계	113,347	113,347	-	113,347	133,658	-	2,34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법무부 자산은 전년 대비 3,430억 5백만원이 증가한 12조 9,88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유형자산이 2,216억 3,700만원, 유동자산이 684억 3,3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84억 2,900만원 감소한 1,140억 5,3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가 286억 2,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41억 8,8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914억 3,400만원이 증가한 12조 8,745억 9,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법무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3,96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2억 6,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4,00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 7,6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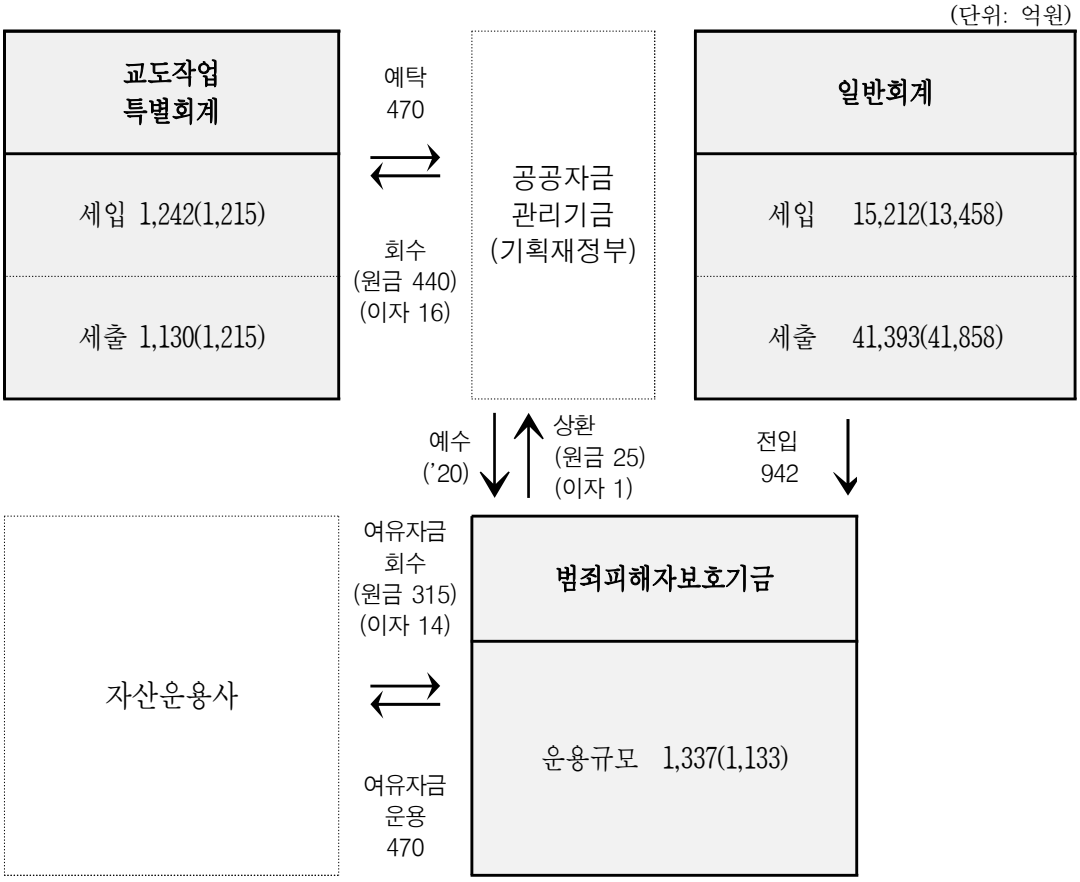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2,988,650	12,645,645	343,005	2.7
		유동자산	265,020	196,587	68,433	34.8
		투자자산	12,000	11,500	500	4.3
		일반유형자산	12,522,496	12,300,859	221,637	1.8
		무형자산	103,722	93,770	9,952	10.6
		기타비유동자산	85,412	42,929	42,483	99.0
	부 채		114,053	162,482	△48,429	△29.8
		유동부채	28,115	33,732	△5,617	△16.7
		장기차입부채	20,957	35,145	△14,188	△40.4
		장기충당부채	64,981	93,605	△28,624	△30.6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2,874,597	12,483,163	391,434	3.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396,248	1,480,515	△84,267	△5.7
	재정운영순원가		4,400,517	4,423,331	△22,814	△0.5
	재정운영결과		4,400,355	4,423,331	△22,976	△0.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범무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2개 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1. 총계기준
2. ( )내 수치는 예산현액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 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 합리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안전과 사회통합 실현,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한 복지인권 강화,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따른 총 13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범죄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 제고, 현대적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 교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사회통합 실현, 인권침해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112개국 무사증 입국자 중 23개국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는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협의를 거쳐 시행한 국가적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고, 연도 중 정책시행으로 당초 세입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는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이용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대상 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 증가로 이·전용을 통하여 예산편성액 400억원의 42%인 168억 5,2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는 바, 형사보상금의 보상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 추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 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관광활성화 효과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응시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등 각종 출입국 허가증 발급 민원 수수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373억 7,1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 되었음.[2)]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50,123	50,123	37,371	37,371	-	-	100	22,061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입국 전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며,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는 전자여행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한화 1만원)임.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112개국 무사증 입국자 중 23개국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는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협의를 거쳐 시행한 국가적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고, 연도 중 정책시행으로 당초 세입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과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112개국 무사증 입국자 중 23개국(대만·미국 및 일본 등) 입국자에 대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3]를 2023. 4. 1. ~ 2024. 12. 31.까지 시행함.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산업 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진작을 위하여,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여행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면제하여 한국 방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3개국(대만·미국 및 일본 등)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4]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국 입국 신청 시점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면제 적용 기간이 달라져 전자여행허가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의 시행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수수료 수납액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예산 편성액은 446억 6,0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24억 7,100만원으로 수납률은 50.3%으로 낮아졌음.

---

3)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3. 3. 29.)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 불허율 등은 낮은 23개 국가·지역에 전자여행허가제(K-EAT) 적용을 한시 면제함(2023. 4. 1. ~ 2024. 12. 31.).

4)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은 2023. 7. 3.부터 기존 2년에서 1년을 연장한 3년으로 확대하였음.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부항목별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법조시험응시, 자격승인심사	808	762	800	796	800	787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등	238	239	222	248	222	290
출입전자민원	3,570	8,217	4,427	9,724	4,427	13,800
한미자동심사	20	3	14	9	14	22
전자여행허가제(K-ETA)	-	515	12,800	19,417	44,660	22,471
합 계	4,636	9,736	18,263	30,195	50,123	37,371

자료: 법무부

2023년 무사증 입국자 수는 703만명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2023. 4. 1.~ 12. 31.) 입국자는 596만명으로 나타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실시되기 전 2023년 1~3월 기간 평균 월 4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인 2023년 4~12월 기간 평균 월 1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함.

[2023년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실적]

(단위: 명, 건, 천원)

구 분		무사증 입국자	K-ETA 작성 입국자		
		입국자 수	입국자	K-ETA 신청 건수	금액
수수료 납부	1월	258,279	254,135	317,243	3,172,320
	2월	275,002	270,645	360,905	3,609,130
	3월	539,472	519,495	524,886	5,248,834
무사증 입국자 수수료 면제 적용	4월	592,224	354,589	129,218	1,292,000
	5월	563,526	199,002	113,678	1,136,760
	6월	626,600	172,822	106,625	1,066,220
	7월	657,546	164,189	101,972	1,018,900
	8월	669,224	141,740	100,773	1,007,620
	9월	697,043	166,497	109,655	1,096,540
	10월	787,754	207,359	108,648	1,086,340
	11월	725,026	177,036	87,870	878,740
	12월	639,868	167,632	72,663	726,620
	합계	7,031,564	2,795,141	2,134,136	21,340,024

자료: 법무부

관광 수요는 물가·환율·국가 매력도·관광 인프라 및 계절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분야로,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국이 비면제국보다 방한 회복률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방한 회복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입국자 수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엔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입국자의 수의 상관관계는 모호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방한률 제고와 관련한 정책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정부의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한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무사증 입국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법무부는 동 조치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몰수금 및 추징금: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금액 증가에 따른 환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몰수금 및 추징금’ 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몰수물품·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052억 6,0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5)]

[2023년도 몰수금 및 추징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몰수금 및 추징금	130,898	130,898	105,260	105,260	-	-	100	130,898

나. 검토의견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몰수금 및 추징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당초 예산의 80.4%인 1,052억 6,000만원임

최근 4년간 몰수금 및 추징금 당초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0년 100.5%, 2021년 92.5%, 2022년 90.4% 및 2023년 80.4%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일반회계-몰수금 및 추징금(56-562)(검찰국)

[최근 4년간 몰수금 및 추징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0	114,906	114,906	114,906	115,489	115,489	100.5	100.0	-
2021	168,839	168,839	168,839	156,115	156,115	92.5	100.0	-
2022	119,651	119,651	119,651	108,127	108,127	90.4	100.0	-
2023	130,898	130,898	130,898	105,260	105,260	80.4	100.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몰수금 및 추징금 수납에 있어 예산규모를 산정할 시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등에게 가상자산 보전 절차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조직 강화(서울 서부·의정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신설 등) 및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전결정액[1)]	1,135,737	2,943,898	5,974,884	3,448,305	7,363,326
보전재산가액[2)]	342,124	572,246	1,207,742	830,873	1,161,300

주 1) 보전결정액(추징보전액)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금액으로 향후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 가능 액수

2) 법원의 보전결정에 따라 실제로 확보(보전조치)한 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전재산가액이 보전결정액(추징보전액)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임

자료: 법무부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인 몰수 및 추징보전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보전결정액 7조 3,633억 2,600만원, 보전재산가액 1조 1,6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3.5%, 39.8%가 증가하였음.

「형법」 제48조제2항[6]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한 집행대상금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집행대상금액 32조 2,589억원 중 923억 5,100만원(집행률 0.29%)이 집행되어 저조하였음.

또한 최근 5년간 집행대상금액은 평균 30조 5,493억원, 집행액은 평균 1,011억원으로 집행대상금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집행금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제추징금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추징금 대상액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대상금(A)	집행금(B)	공제	불능금액	미제(C)	집행대상금 대비 집행률(B/A)	집행대상금 대비 미제율(C/A)
2019	27,498,810	103,355	79,052	24,152	27,292,251	0.38	99.2
2020	30,648,984	100,104	24,303	32,785	30,491,792	0.33	99.5
2021	30,955,779	110,353	11,815	35,777	30,797,834	0.36	99.5
2022	31,383,785	99,307	1,647	24,868	31,257,963	0.32	99.5
2023	32,258,929	92,351	12,646	24,345	32,129,587	0.29	99.6

주) 추징금에는 대우사건 추징금 22조 9,465억원이 포함됨
자료: 법무부

범죄수익의 환수는 법원의 추징을 명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대부분의 경우 범죄인의 차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즉시 추징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향후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법령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6)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세 출>

3. 공증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이용 접근성 강화 필요

가. 개 요

‘공증시스템 운영’ 사업은 화상공증 등 전자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중 10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3년도 공증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274	1,274	6	-	1,280	1,273	-	7	820
공증시스템 운영	1,010	1,010	-	-	1,010	1,005	-	4	470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2018. 6. 20일부터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을 할 수 있는 화상공증을 도입함.

7) 일반회계-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법무실)

나. 검토의견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이용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대상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18년 6월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어 전자공증이 고도화되었으나,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지난 4년간 이용률의 증가는 0.14%p로 이용률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실적: 2018~2023년]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증건수	1,109,229	1,090,420	881,566	888,484	901,029	888,512
전자공증 건수[1]	372	254	1,834	2,641	2,763	3,128
화상공증 건수[2]	141	191	1,781	2,605	2,733	3,101
이용률[3]	0.0339	0.0231	0.2084	0.2972	0.3066	0.3520

주 1) 전자공증이 가능한 사서증서, 의사록, 정관인증에 대한 통계(화상공증 건수 포함)
2) 화상공증이란 공증인 대면이 필요한 종전 전자공증과 달리, 웹캠이나 스마트폰 같은 화상장치를 통해 완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 방식(2018. 6. 시행)
3) 이용률은 공증건수 대비 전자공증건수(화상공증건수 포함)를 나눈 값임
자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저조에 대하여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은 순차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공증이 가능한 대상문서가 한정되어 있었고, 시스템 안정성 등 일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공증 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2023년부터 전자공증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공증문서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차세대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공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임.

[2023년도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1차) 사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공증문서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 블록체인 관리 및 H/W, S/W 각 3식 신규 도입 - 공증인 온라인 대면을 위한 화상 솔루션 도입 · 공정증서 작성 및 인증에 관한 기능 구현: 공증인을 위한 웹 기안 기능 도입 · 전자공증문서 출력 활용을 위한 QR 및 바코드, 문서번호 등 인쇄물 검증 기능 도입 · 전자지갑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 · 신분증 범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확대 * 1차 사업 완료로 2024. 4.부터 개선된 전자공증시스템 시범운영	5.4억원 (5.4억원)

자료: 법무부

이외에도 「공증인법」제66조의3[8]에 의하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지정공증인)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정공증인이 되려면 스캐너 등 일정한 설비와 자격을 갖추어야 함. 현재 지정공증인의 수는 97명으로 전체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임명공증인(개인 사무소)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등) 총 325명 중 약 30% 수준으로 전자공증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될 필요도 있음.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대상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과 관련하여 대한공증인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하는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공증인법」
제66조의 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 ·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법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78억 2,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9)]

[2023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률구조	59,795	59,795	-	-	59,795	59,795	-	-	64,817
대한법률구조공단	57,827	57,827	-	-	57,827	57,827	-	-	62,897

나. 검토의견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공단의 자체수입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전체 지출액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한 부문을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자체수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공단은 2023년 자체수입 예산을 482억 7,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액은 399억 4,000만원으로 83억 3,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차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자체 수입이 과다하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공단이 수지차 기관임을 고려하면 자칫 사업비 지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9) 일반회계-법률구조(1131-300)(인권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현황: 2022~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A)	결산 (B)	차액 (A-B)	예산 (A)	결산 (B)	차액 (A-B)
사업수입	44,194	36,167	8,027	45,071	37,459	7,612
- 소송비용상환수입[1]	18,826	15,345	3,481	18,867	17,576	1,291
- 변호사보수비용상환수입	21,164	17,318	3,846	21,213	15,567	5,646
- 국선변호수입[2]	4,204	3,504	700	4,991	4,316	675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사업외수입	3,130	2,324	806	3,205	2,481	724
- 소송비용상대방상환[3]	2,543	2,159	384	2,637	1,907	730
- 임차보증금 회수	-	-	-	-	311	△311
- 차량 매각대	-	5	△5	-	-	-
- 기타유형자산 매각대	-	-	-	-	-	-
- 예금이자	10	12	△2	11	12	△1
- 기타수입	577	148	429	557	251	306
합 계	47,324	38,491	8,833	48,276	39,940	8,336

주 1) 상환수입(소송비용+변호사보수): 무료법률구조사건의 경우 의뢰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구조임. 정부지원금 또는 민간 출연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다가 소송종료 후 상환결정(소송비용+변호사보수)된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전입함. 정부지원금의 경우 불용액 발생 시 국고 반납하고, 민간출연금은 이월하여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함

2) 국선변호수입: 공단 변호사가 형사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된 후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국선 변호료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사업에 따른 정부지원금(범죄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공단에 배치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조력하고, 관련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구성)

3) 소송비용 상대방상환 : 공단에서 소송대리 한 사건 중 패소자인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부담액(의뢰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 부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즉, 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실제로 자체수입이 부족하게 될 경우,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퇴직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적립금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23년 재무상태는 자산 925억 3,500만원, 부채 674억 1,600만원, 자본 251억 1,900만원으로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268.4%이며, 부채 대부

분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656억 3,100만원임.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 산	92,535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41,803 50,732
부 채	67,416	· 유동부채(예수금,미지급금) · 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금)	1,785 65,631
자 본	25,119	· 이익잉여금(누적액)	25,119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은 공통처우 개선분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호봉승급분까지 반영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퇴직적립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퇴직적립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10]에 따라 적립할 퇴직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하여 퇴직금 적립의무액을 과소 적립하여 왔음. 2023년 퇴직금 적립률은 25.8%로 2022년 30.6% 대비 4.8%p가 감소하였음.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적립 현황: 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건비 결산 (A)	법정부담금 (B)	실제 퇴직금적립액(C)	퇴직금 적립의무액(D)	적립비율 (C/D)	실제급여 지급액(A-B-C)
2019	55,893	4,595	273	4,252	6.4	51,025
2020	57,824	4,841	935	4,337	21.6	52,048
2021	59,035	5,064	358	4,468	8.0	53,613
2022	61,899	5,315	1,407	4,598	30.6	55,177
2023	60,682	5,291	1,166	4,519	25.8	54,225

주) 적립 의무액은 실제 급여 지급액의 1/12임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은 퇴직급여충담금의 적립액을 증가시켜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5. 의무관 임상연구비: 외국인보호소 의무관 미확보 문제

가. 개 요

‘의무관 임상연구비’ 사업은 외국인보호소에 배치된 의무관의 임상연구를 지원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 2,700만원이 전액 전용(감)되었음.[11)]

[2023년도 의무관 임상연구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국인 보호관리	19,736	19,736	-	1,497	21,233	20,976	-	257	22,287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4,413	4,413	-	1,422	5,835	5,768	-	66	5,674
일반연구비	27	27	-	△27	-	-	-	-	27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특수한 진료환경에 따른 다양한 의료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의무관 임상연구비를 의무관의 결원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3개소(화성·청주·여수)에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법무부 훈령 제1496호) 및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이민조사과-6117호)에 따라 의무관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외국인보호시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전 단기간 보호되는 시설이나 최근

11) 일반회계-외국인보호관리(1233-30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신청과 소송 등으로 장기 보호되는 외국인이 증가(2021년 10,729명에서 2023년 37,846명, 증가율 253%)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의 기본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이 보호외국인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3개소에 각 912만원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의무관 퇴직 등으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

[의무관 임상연구비 집행 현황: 2020~2023년]

(단위: 천원)

구 분	의무관 임상연구(화성)		의무관 임상연구(청보)		의무관 임상연구(여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0	9.120	9.120	9.120	8.882	9.120	9.348
2021	9.120	-	9.120	9.120	9.120	9.120
2022	9.120	9.120	9.120	8.208	9.120	-
2023	9.120	-	9.120	-	9.12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 3개소의 임상연구비 집행액 부진에 대하여 의무과장의 공석(청주, 여수) 등으로 임상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임상연구비 편성예산 2,700만원은 외국인보호소의 공공요금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보강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등 외국인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특수한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관 등 의료진의 처우개선 등 적정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무관 임상연구 현황: 2020~2023년]

구분		연구 제목
화성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의 의료처우에 대한 미연방 규범과의 비교고찰
	2021	미실시('21. 4. 12. 의무과장 퇴직)
	2022	보호외국인들의 의무과 진료 방해 행태 및 의료갈등 개선방안 고찰
	2023	미실시(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청주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신 건강 문제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보호외국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영성에 대한 고찰
	2023	미실시(의무과장 휴직)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2020	의료네트워크를 활용한 급·만성 정신질환 보호외국인의 협력적치료관리 방안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2023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자료: 법무부

6. 형사보상: 형사보상금 집행에 있어 과다한 이·전용 발생 문제

가. 개 요

‘형사보상’ 사업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구금보상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68억 5,200만원 중 568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됨.[12)]

[2023년도 형사보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형사보상	40,000	40,000	-	16,852	56,852	56,851	-	-	40,000

나. 검토의견

형사보상금 지급 증가로 이·전용을 통하여 예산편성액 400억원의 42%인 168억 5,2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는데, 형사보상금의 보상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 추이를 반영하는 등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의 부족으로 2020년부터 매년 23~45억원 사이의 이·전용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형사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400억원과 이·전용을 통하여 168억 5,200만원(예산편성액의 42.1%)을 증액하여 56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12) 일반회계-형사보상(1337-302)(검찰국)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37,313	37,313	4,594	41,907	41,907	112.3	100.0	-
2021	40,000	40,000	4,390	44,390	44,387	111.0	100.0	3
2022	40,000	40,000	2,323	42,323	42,323	105.8	100.0	-
2023	40,000	40,000	16,852	56,852	56,851	142.1	100.0	-

자료: 법무부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전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 금액은 146억 5,000만원, 전용 금액은 21억 8,700만원으로 나타남.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용한 금액 중 가장 많은 이·전용(감)한 금액으로는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에서 141억 200만원이며, 형사부등 수사지원 6억 1,600만원,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3억 6,200만원,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2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형사보상금 지출을 위해서 이·전용으로 감액된 다른 세부사업은 계획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3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한 주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세목	금액
자체이용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14,102
자체이용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210-12(복리후생비)	362
자체전용	형사부등 수사지원	110-03(상용임금)	269
		320-09(고용부담금)	178
		310-04(기타보전금)	169
자체전용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430-01(자산취득비)	200
자체전용	검찰청시설운영	110-03(상용임금)	187
자체전용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340-02(국제부담금)	163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에 있어 법원의 판결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편

성 시 보상금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청은 연간 형사보상금 집행에 대한 사건 건수·구금 기간 등 형사보상금 지출액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형사보상금 예산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형사보상금 지급판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 등이 결정되는 문제 등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형사보상금 지출액과 관련한 자료 관리와 형사보상액 중 구금에 대한 보상액 산정[13]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해당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형사보상금의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형사보상의 범위는 구금에 대한 보상, 변호인 보수, 재판출석에 소요된 일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구금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금액을 최상한으로 함.

7.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을 사업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제부담금’ 사업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검사 1명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집행률 100%).[14]

[2023년도 국제부담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873	7,873	-	△290	7,583	7,583	-	-	7,924
국제부담금	313	313	-	△163	150	150	-	-	313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다른 정부 부처(특허청 등)의 국제부담금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지급하는 국제부담금을 지식재산 관련 법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을 동 국제기구에 검사 1명을 파견하는 경비로서 집행하고 있으나, 특허청 등 타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의 운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 기금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인식제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법무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양해각서(MOU)를 통하여 매년 검사 1명을 파견하고 있음.[15] 검사 파견경비로 사용하는 국제부담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4) 일반회계-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검찰국)

15) 법무부는 검사파견 필요성에 대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주도하는 UN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등 관련 규범을 성안하고, 각국 정부의 법집행과정에

편성예산이 없어 전용(증)을 통하여 집행하였고, 2020~2021년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국제부담금을 납부하였음. 2023년의 경우 2023년 파견자의 선발이 지연되어 2022년 파견자의 파견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2023. 11. 1.~2024. 3. 14.)을 제외하고 납부하였음.

[국제지적재산기구(WIPO) 납부 국제부담금 예결산 현황: 2019~2023년]

구분	편성 예산	WIPO 국제부담금	파견 기간	이·전용 등 여부
2019	-	224,364프랑(254백만원)	2019.4.1. ~ 2020.3.31.	승인전용
2020	263백만원	234,309프랑(286백만원)	2020.4.1. ~ 2021.3.31.	내역변경
2021	263백만원	265,261프랑(344백만원)	2021.11.1. ~ 2022.10.31.	내역변경
2022	286백만원	196,729프랑(284백만원)	2022.11.1. ~ 2023.10.31.	2022년 부담금을 2022 ~ 2023년 2개년간 분할 납부
2023	286백만원	86,721프랑(122백만원)	-	
2024	286백만원	257,464프랑(392백만원)	2024.3.15. ~ 현재	-

자료: 법무부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국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사 파견 부담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의를 진행” 하도록 하였음.[16)]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부담금 지급방식을 파견자 급여 등을 포함한 부담금 일체를 지급하는 기존의 ‘신탁기금 협정 방식’에서 급여 등은 제외하고 행정비용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모든 외부기관과의 인재 파견 방식을 ‘신탁기금 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경우에만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한국신탁기금(국제부담금) 출연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 보호 등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직원 파견은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향후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의 국제부담금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지급하는 국제부담금을 지식재산 관련 법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법무부는 국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사 파견 부담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

8. 안미영 특별검사: 예비비 이월 집행 문제

가. 개 요

‘안미영 특별검사’ 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4%)되었음.[17]

[2023년도 안미영 특별검사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안미영 특별검사	-	-	640	-	1,525	2,165	1,460	647	58	-

나. 검토의견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예비비를 별도 배정받지 않아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이월한 예비비를 전용을 통하여 증액집행하는 등 경비 집행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하였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18]에 따라 2022년 9월 수사완료 이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특검은 2023년도 상반기 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받지 못하였는 바,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2년 예비비 배정액 42억 6,506만원의 15%인 6억 4,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부족할 시 2023년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하였음.

---

17) 일반회계-안미영 특별검사(1339-308)(검찰국)

1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수 등)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2022년 말 2023년의 특검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비목별 집행액을 산출 후 그 금액을 반영한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 예비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국가재정법」 제48조[19]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2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예비비 배정과 관련 특별검사·기획재정부 협의 내용]

일자	주요 내용
2022. 12.	2023년도 상반기 예비비 신청
	기재부와 협의 (2022년도 집행잔액의 15%를 이월하여 사용하고, 이후 부족시 2023년도 예비비 신청)
2023. 1	2022년도 집행잔액 불용처리 및 이월 신청
	이월액 배정

자료: 안미영 특검

또한 2023년 상반기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2022년 배정액의 15%인 6억 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면서 사무실 임차료로 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실제 임차료 부족으로 1억 1,600만원을 국내여비 등 타 비목에서 전용하여 충당하였고, 임차료 4개월분을 지연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1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함(p144).

[임차료로 전용(감)한 세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감)
전용	국내여비(220-01)	42	△41
전용	특근매식비(210-05)	39	△37
전용	일반수용비(210-01)	51	△32

자료: 안미영 특검

[2023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백만원)

예비비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배정사유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안미영 특별검사 (1339-308)	2023년 하반기 운영경비	860	821	2023. 6.19.	-	39
	안미영 특별검사 (1339-308)	2024년 상반기 운영경비	665	0	2023. 12.28.	647	19
	소 계		1,525	821		647	58
합 계			1,525	821		647	58

자료: 법무부

따라서 2023년 상반기 예비비 예산 편성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고, 2022년 예비비 이월 편성으로 인하여 비목간 전용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료 4개월분을 지연 집행하는 등 경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특별검사 예산과 관계되는 부처는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안미영 특별검사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안미영 특별검사	-	-	640	-	1,525	2,165	1,460	1,525	821	647	58
- 보수 (110-01)	-	-	359	△27	738	1,070	737	712	405	331	2
- 기타직보수 (110-02)	-	-	20	10	60	90	52	70	22	18	20
- 일반수용비 (210-01)	-	-	51	△32	34	53	38	2	24	15	0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47	△6	75	117	94	70	52	18	5
- 특근매식비 (210-05)	-	-	39	△37	6	7	3	△32	1	3	2
- 임차료 (210-07)	-	-	39	116	311	465	365	427	211	94	6
- 유류비 (210-08)	-	-	6	△6	1	2	0	△5	0	0	1
- 기타운영비 (210-16)	-	-	0	0	2	3	2	3	1	1	0
- 국내여비 (220-01)	-	-	42	△41	2	3	1	△39	0	1	1
- 사업추진비 (240-01)	-	-	0	7	17	24	16	24	9	8	0
- 직책수행경비 (250-02)	-	-	0	20	44	64	45	64	25	0	19
- 특정업무경비 (250-03)	-	-	5	0	7	11	8	7	3	3	0
- 고용부담금 (320-09)	-	-	30	△26	222	227	76	196	46	149	2
- 공사비 (420-03)	-	-	0	21	6	27	21	27	21	6	0
합 계	-	-	640	-	1,525	2,165	1,460	1,525	821	647	58

자료: 법무부

9.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외부의료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수용자 급식·피복·일상용품과 보건의료,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31억 6,700만원 중 2,830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3년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52,286	252,286	-	30,881	283,167	283,066	-	101	269,102
의료비	12,663	12,663	-	3,657	16,320	16,320	-	-	13,246
건강보험예탁금	20,265	20,265	-	5,044	25,309	25,309	-	-	20,265

나. 검토의견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연례적으로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으로 수용자 호송에 따른 여비 등 관련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용자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의료비 예산 126억 6,300만원 대비 36억 5,7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건강보험 예탁금 예산 202억 6,500만원 대비 50억 4,400만원이 초과 집행

21) 일반회계-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교정본부)

되었음.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 예결산 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비	예산	10,863	9,833	11,144	12,479	12,663
	결산	11,003	11,738	16,381	14,478	16,320
	차이	△140	△1,905	△5,237	△1,999	△3,657
건강보험 예탁금	예산	14,206	16,659	19,924	19,924	20,265
	결산	19,381	19,844	17,825	20,000	25,309
	차이	△5,175	△3,185	2,099	△76	△5,044

자료: 법무부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22]에 따라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자의 증가 및 교정시설 등의 의료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외부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수용자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의 초과집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의료진 확충,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등 질병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7. 12.)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2023년 54개 교정기관 내 의무관은 정원 118명 대비 현원 83명으로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교정기관 의무관 정현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무관	정원	116	117	117	118	118
	현원	89	91	90	83	83
	차이	△27	△26	△27	△35	△35

자료: 법무부

한편 수용자들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수용자 호송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 및 여비 등 관련 경비가 소요됨.

구체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수용자 호송인원은 13.4%가 증가하였고, 특히 병원 진료 호송으로 2022년 41,243명에서 2023년 48,349명으로 7,106명(증가율 17%)이 증가하였으며, 병원 입원 호송으로 2022년 1,990명에서 2023년 2,377명으로 387명(증가율 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용자 주요 호송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송	출정	병원 진료	병원 입원	합계
2022	47,313	216,602	41,243	1,990	307,148
2023	48,359	249,204	48,349	2,377	348,289

자료: 법무부

2023년 호송여비는 예산 25억 100만원 대비 집행액은 33억 1,400만원으로 이·전용(증) 8억 1,300만원으로 초과집행되었음.

[수용자 호송여비 집행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용인원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예산액(A)	2,399	2,601	2,601	2,189	2,501
집행액(B)	2,752	2,269	2,704	2,184	3,314
차이(A-B)	△353	332	△103	5	△813
집행률	114.7	87.3	104.0	99.8	132.5

자료: 법무부

따라서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증가에 따라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의 소요가 증가되고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으로 수용자 호송에 따른 여비 등 관련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도작업특별회계】

<세 출>

10. 시설보완: 설계비의 추가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시설보완’ 사업은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개량 및 확충과 기존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작업장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5억 6,400만원 중 56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7%)되고, 6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도 시설보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시설보완	6,564	6,564	-	-	6,564	5,693	689	182	4,475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	3,430	3,430	-	-	3,430	3,430	-	-	-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작업장 설치사업을 실시할 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추가적인 설계비 소요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1년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 사업을 시작하여 설계용역(2021. 7. ~ 10.)을 실시하고, 공사 계약(2021. 12.)을 체결하였음.

동 공사는 2022년 6월 시공자가 하도급 업체에 장비 대금을 미지급하여 장비업체들

23) 교도작업특별회계-시설보완(1535-302)(교정본부)

이 공사를 거부하여 중지되었음. 2022년 7월 시공사의 계약불이행으로 법무부는 강원조달청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2022년 8월에 계약해지가 결정되었음.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4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21년 설계비 1억 5,325만원, 공사비 12억 5,217만원 및 감리비 3,332만원 등 총 14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2022년으로 공사비 27억 700만원과 감리비 3,5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2년에는 공사비 3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사비 24억 500만원과 감리비 3,500만원 등 총 2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법무부는 2022년 9월 동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및 공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3년 4월 공사업체를 선정·계약하여 공사를 진행(2023. 4. 24. ~ 11. 30)하여 2023년 12월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법무부는 동 공사에 설계비 1,500만원, 공사비 33억 7,671만원 및 감리비 3,848만원 등 총공사비 3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사업을 시작한 2021년에 설계비로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2023년 공사 재개 시 설계비로 다시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강원북부교도소 작업장 설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21	153	1,252	33	1,439	공사비: 2,707 감리비: 35	-	교도소(신축) 준공지연으로 인한 작업장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2022	-	322	-	322		공사비: 2,405 감리비: 35	시공사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2022. 8.)
2023	15	3,377	38	3,430	-	-	
합계	168	4,951	71	5,190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3년 공사가 재개되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설계 업체에게 설계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작업장 설치 공사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개월로 장기적인 중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작업장 설치 위치 조정 등의 주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사례와 같은 추가 설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 입>

11. 일반회계 전입금: 법령에 규정된 수납비율 징수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 전입금’ 은 벌금 수납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수납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및 징수결정액은 942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음(수납률 100%).[24]

[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전입금	94,200	94,200	94,200	94,200	-	-	100	86,121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의 수납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벌금에 100분의 8을 수납하여 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3회계연도 수입액 중 70.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형사소송법」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인 100분의 8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25]하고 있음.

---

2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일반회계 전입금(91-911)(인권국)

2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벌금의 100분의 8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 어려움 등으로 매년 벌금 수납액의 8% 금액을 수납하지 않고 있음. 2023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벌금 수납액 1조 2,428억 1,400만원의 8%인 994억 2,400만원이 수납되어야 했으나, 942억원만이 수납되어 52억 2,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벌금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벌금 수납액		1,143,747	1,020,899	1,064,874	1,242,814
일반회계 전입금(6~8%)		68,625(6%)	81,672(8%)	85,190(8%)	99,425(8%)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	82,440	106,054	94,200	94,200
	수납액	82,440	106,054	94,200	94,200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벌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실제 수납액과 법정 전입금액을 비교하면, 2020~2022년까지 3년간은 법정전입금보다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법정전입금보다 과소 수납이 발생하였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의 70.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벌금 수입의 비율(8%)을 수납하도록 사후정산 절차방안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
	계획	결산	
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417	1,540	417
경상이전수입 (과징금,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3,925	5,152	4,51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805	32,766	46,002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94,200	94,200	86,121
총 계	113,347	133,658	137,054

자료: 법무부

<지 출>

12. 신변보호장치: 위치추적장치 유지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결정 및 신변보호장치 지급을 통해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현액은 17억 6,300만원 중 13억 7,500만원을 집행(집행률 78%)하고 3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26)]

[2023년도 신변보호장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564	2,923	-	2,923	2,521	-	402	3,446
신변보호장치	2,404	1,763	-	1,763	1,375	-	388	2,045

나. 검토의견

신변보호장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9년에 도입한 위치확인장치 구형 모델 2,300대는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청이 보유한 위치확인장치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수량조절 등 위치확인장치의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2022년말 신규 위치확인장치를 구입하여 2023년말 10,172대를 보유하고 있음. 위치확인장치는 주로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접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량을 경찰청에서 보유·지급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도 검찰 송치 사건 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등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위치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경찰청)

수량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5개년간 연도별 위치확인장치 구매·폐기·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매	경찰청	2,300	-	1,400	-	6,300
	검찰청	-	172	-	-	-
	소계	2,300	172	1,400	-	6,300
폐기	경찰청	2,050	-	-	-	-
	검찰청	-	171	-	-	-
	소계	2,050	171	-	-	-
보유	경찰청	2,300	2,300	3,700	3,700	10,000
	검찰청	171	172	172	172	172
	소계	2,471	2,472	3,872	3,872	10,172

자료: 경찰청

위치확인장치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치확인장치 지급기간이 2개월 정도로 경찰청의 경우 2023년도 보유기기 10,000대 중 24,250대를 지급하여 보유기기의 약 두배 이상의 활용을 보이고 있으나, 검찰청의 경우 2023년 172대 중 7대를 지급하여 보유기기 중 약 4.1% 활용을 보이고 있음.

[최근 5개년 위치확인장치 지급실적]

(단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찰청	지급실적	13,686	14,773	24,810	29,372	24,250
	보유수량	2,300	2,300	3,700	10,000	10,000
검찰청	지급실적	32	30	18	15	7
	보유수량	171	172	172	172	172

자료: 경찰청

2023년말 현재 경찰청·검찰청이 확보하고 있는 10,172개의 위치확인장치 중 경찰청이 2019년에 도입한 구형 모델 2,300대는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치확인장치는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필요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치확인장치와 112 관제시스템 연계가 중요하여 위치확인장치의 결함이 없도록 평소에도 보유중인 위치확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함.

또한, 검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위치확인장치의 활용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검찰청 보유분에 대한 수량 조절 등을 통하여 위치확인장치의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순증인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98.6%)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289	289	-	-	4	4	△285
총수입	-	-	289	289	-	-	4	4	△285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억 600만원(△2.5%)이 적은 426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200만원(4.8%)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3,194	42,952	40,670	△2,282	43,728	43,728	42,622	△1,106	1,952
총지출	43,194	42,952	40,670	△2,282	43,728	43,728	42,622	△1,106	1,95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되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4	4	-	-
합 계	-	-	-	-	4	4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37억 2,800만원으로, 이 중 426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11억 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3,728	43,728	-	±198	-	43,728	42,622	-	1,106
합 계	43,728	43,728	-	±198	-	43,728	42,622	-	1,106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법제처 자산은 전년 대비 27억 3,5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7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 5억원, 투자자산 4,800만원, 일반유형자산 9,000만원, 무형자산 25억 9,700만원 각각 증가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원 감소한 결과임.

부채는 전년 대비 유동부채 200만원이 감소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7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법제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3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3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2,887	20,152	2,735	13.6
		유동자산	501	1	500	50,000
		투자자산	64	16	48	300
		일반유형자산	14,435	14,345	90	0.6
		무형자산	7,885	5,288	2,597	49.1
		기타비유동자산	2	502	△500	△99.6
	부 채		-	2	△2	△100
		유동부채	-	2	△2	△1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2,887	20,150	2,737	13.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 순원가		43,506	41,997	1,509	3.6
	재정운영 순원가		43,448	41,975	1,473	3.5
	재정운영결과		43,448	41,975	1,473	3.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법제처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법제처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실용적 법제 구축,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3개 세부사업에서 정부 주요정책의 입법 총괄·지원, 법령정보제공, 법제정비, 행정법제 혁신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법제처는 영상회의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회의실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임차료가 집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대상자별 입법체험활동의 맞춤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수료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영상회의실 이용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관운영기본경비’는 기관의 운영지원과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공사비(420-03목)’는 사무실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며, 2023년 예산현액 2억 5,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공사비 예산으로 수행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사업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영상회의실 조성 등을 위한 공사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 2,2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하였음.[2)]

[2023년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기본경비	2,662	2,662	-	±36	2,662	2,570	-	92	3,277
공사비	251	251	-	-	251	251	-	-	75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회의실 조성	22	22	-	-	22	22	-	-	-

2) 일반회계-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영상회의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임차료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2023년 3월에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관련 공사를 수행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3] 조성을 완료하였음. 동 회의실 조성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음향시스템 915만원, 제어시스템 620만원 및 설치·시험 노무비 414만원 등이 집행됨.

[회의실 조성 세부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 내역	집행액
영상 회의실 조성	음향시스템	9.2
	제어시스템	6.2
	설치 및 시험 노무비	4.1
	산업안전관리비	0.4
	합 계	21.8

자료: 법제처

동 회의실 조성이 완료된 2023년 4월 이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총 회의 개최 33건 중 22건은 조성된 회의실을 이용(이용률 66.7%)하였음. 동 회의실을 이용하지 않은 11건의 회의는 외부회의실(서울정부청사 및 임차)에서 개최하여 임차료로 699만원을 집행하였음.

법제처에 따르면, 영상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내부 회의실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회의실을 이용한 사유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위원들의 회의 참석 용이성 등의 사유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법제처는 원격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처 차장이 위원장, 공무원인 당연위원 13명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130명 등 총 144명(2024년 7월말 기준)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

여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였으므로 영상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회의실 이용시에는 정부종합청사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임차료 집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회의실 개최 세부내역]

(단위: 명, 백만원)

외부회의실 이용			임차료 집행내역
일자	회의장소	참석인원	
4. 4.	서울정부청사	18	-
5. 2.	서울정부청사	20	-
5. 30.	서울○○○	19	0.99
6. 13.	서울정부청사	19	-
7. 4.	서울정부청사	19	-
8. 29.	서울○○○	18	0.99
9. 5.	서울○○○	20	0.99
10. 10.	서울○○○	20	0.99
11. 7.	서울정부청사	19	-
12. 12.	스○○○○○	21	0.60
12. 19.	서울○○○	18	2.43
합 계			6.99

자료: 법제처

2.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은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9,9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령정보제공	1,950	1,950	-	8.6	1,958	1,890	-	68	1,718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403	403	-	△4	399	388	-	11	372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 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경우 수료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대상인원 1,300명)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법제교육, 학교규칙 제・개정대회를 실시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대상인원 402명)으로 구분됨. 사업수행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대상자(어린이와 청소년)를 구분하여 대상자별 입법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4) 일반회계-법령정보제공(1031-300)(법제정책국)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 선정에 대하여 어린이법제관의 경우 일상생활 속 법을 주제로 찬반 토론 등 체험 위주의 과정을 진행하여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청소년법제관의 활동은 법 교육을 통하여 소속된 기관의 학교 등의 규칙을 만들어 봄으로써 민주 시민 의식 제고 및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2023년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입법체험활동 참여현황]

(단위: 명)

구분	활동명 (집행액)	세부 내용	참여자 수
어린이 법제관 (9개 활동)	토론마당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656
	기본법제교육 (1, 2차)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1차: 128 2차: 138
	모의의회	모의로 의원이 되어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 실시	499
	법기관 탐방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법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33
	법안 만들기	모의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240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280
	독서 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 제출	885
	어울림한마당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탐색기회 제공	165
	한마당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 격려를 위한 수료 행사 진행	113
	소 계		3,137
청소년 법제관 (6개 활동)	기본법제교육 (1, 2차)	헌법, 입법과정, 생활법령 강의 및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법안만들기 활동 진행	1차: 387 2차: 308
	토론마당	청소년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243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진행	350
	규칙 제정·개정 대회	소속 기관 규칙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다른 청소년법제관과 토론을 통해 직접 제·개정해 봄	351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370
	진로탐방 간담회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 제공	402
	소 계		2,411

자료: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되어 활동 마일리지를 50점 이상 적립하면 수료를 할 수 있는 데 활동 마일리지는 입법체험 행사참여(20점), 독서감상문 작성(20점), 법안 제출(15점), 생활법령 퀴즈 참여(10점) 등 활동별로 부여하고 있음.

어린이법제관 수료자의 점수 분포를 보면, 수료자 중 가장 많은 인원(60.7%)이 수료 기준 50점 이상에서 149점 사이에 있고, 점수 분포 범위는 최저점수 50점과 최고점수 950점으로 900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활동별 참여점수(10~20점)에 비해 낮은 수료기준(50점)을 적용하고 있어 많은 활동을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동일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참여하여도 수료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낮은 수료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법제관의 수료자는 2023년 모집인원 1,300명 중 782명(수료율은 60.1%)으로 최근 3개년간 수료율이 60%대 초반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3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자 점수 분포]

점수	50 ~149	150 ~249	250 ~349	350 ~449	450 ~549	550 ~649	650 ~749	750 ~849	850 ~949	950 이상	총계
인원	475명	107명	42명	34명	16명	7명	5명	1명	2명	93명	782명

자료: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2021~2023년]

구분	2021	2022	2023
수료율	61.5%	61.5%	60.1%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 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경우 수료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170만원(14.4%)이 많은 7억 3,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70만원(29.6%)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16.0	716.0	564.0	△152.0	639.0	639.0	730.7	91.7	166.7
총수입	716.0	716.0	564.0	△152.0	639.0	639.0	730.7	91.7	166.7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6억 1,900만원(△3.4%)이 적은 1,327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800만원(4.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6,307	135,221	127,204	△8,017	137,381	137,381	132,762	△4,619	5,558
총지출	136,307	135,221	127,204	△8,017	137,381	137,381	132,762	△4,619	5,558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억 3,900만원으로, 7억 3,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3,07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0%)되고 30만원은 미수납되었음.[2)]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39.0	639.0	-	-	731.0	730.7	-	0.3
합 계	639.0	639.0	-	-	731.0	730.7	-	0.3

주) 미수납된 277,330원은 2024년 1월 수납 완료

2) 미수납된 277,330원은 2024년 1월 수납 완료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89억 4,897만원으로, 이 중 1,327억 6,173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11억 6,8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0억 1,89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37,381	13,738	1,568	1,246 △1,246	-	138,949	132,762	1,168	5,019
합 계	137,381	13,738	1,568	1,246 △1,246	-	138,949	132,762	1,168	5,01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감사원 자산은 전년 대비 78억 4,600만원이 증가한 2,332억 8,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5억 9,900만원에서 9억 3,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57억 20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37억 5,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7,400만원 증가한 15억 7,3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 79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7,200만원이 증가한 2,317억 1,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감사원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6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464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5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감사원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33,285	225,439	7,846	3.5
		유동자산	932	2,599	△1,667	△64.1
		일반유형자산	224,677	218,957	5,720	2.6
		무형자산	7,330	3,576	3,754	105.0
		기타비유동자산	346	307	39	12.7
	부 채		1,573	1,399	174	12.4
		유동부채	10	11	△1	△9.1
		장기충당부채	1,563	1,388	175	12.6
	순자산		231,712	224,040	7,672	3.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6,693	144,954	1,739	1.2
	재정운영순원가		146,469	144,844	1,625	1.1
	재정운영결과		146,469	144,844	1,625	1.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감사역량을 선택과 집중' 하는 것을 감사운영 기조로 삼고, 이를 위해 총 10개 세부사업에서 공공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 등의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 사업 일반연구비를 집행하며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원은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를 집행하며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자산취득을 위해 공사비를 전용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감사원은 '감사기구역량강화(ODA)' 사업을 2021~2022년에는 감사교육원이 직접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3년부터 용역체결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용역으로 인한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감사원은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은 본예산 대비 46.7%의 증액조정(총 9차례의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내역과 상이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국제교류행사의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감사활동경비: 일반연구비 전액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가. 개 요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감사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67억 4,700만원 중 159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1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1)]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감사활동경비	17,078	17,078	88	95 △514	16,747	15,966	124	657	16,938
일반연구비	1,900	1,900	66	△150	1,816	1,688	98	29	1,700

감사활동경비 중 일반연구비(260-01)는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수행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용역 수행 용도로 편성되어, 예산현액 18억 1,600만원 중 16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0%)되고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1) 일반회계-감사활동경비(1131-303)(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2] 에 따르면 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2021년에 계약이 체결된 연구용역 과제 18건 중 수의계약은 15건, 2022년 16개 과제 중 15건이며, 2023년 13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만 추진되어 수의계약 비중이 증가하였음.[3]

특히 감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에 따라 연구과제들이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6건의 용역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3년 감사활동경비 연구용역 특수지식 요구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집행	이월	계약자	계약기간
대형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 감사체계 확립 연구	37.4	37.4	-	○○○○○ 조합	2023. 3. 2.~ 2023. 4. 16.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요인 등 분석 연구	48.5	48.5	-	한국노동 연구원	2023. 3. 15.~ 2023. 7. 1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3) 13건 중 4건은 저가, 3건은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6건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을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집행	이월	계약자	계약기간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39.7	39.7	-	한국내부 통제학회	2023. 4. 5.~ 2023. 8. 4.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연계 방안 및 사례 연구	50	50	-	○○○○ 학회	2023. 7. 26.~ 2023. 12. 26.
각급 기관의 고충민원(감사제보) 이송 처리실태 분석	36.4	36.4	-	○○○○○ ○○○학회	2023. 8. 7.~ 2023. 12. 21.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연구	48	23.7	24.3	○○○○○ ○학회	2023. 7. 26.~ 2023. 12. 22.

자료: 감사원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요인 등 분석 연구’,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필요할 수 있으나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렵고,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감사원은 계약상대방이 특수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자료·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6건 중 5건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음.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려운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시정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5)]

5)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서 및 특수지식 보유 근거자료의 경우, ‘해당 사항은 연구용역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구계획서에는 관련 감사계획 · 범위 · 방향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곤란’하고, 5건의 연구결과보고서의 경우 ‘ 외부에 공개할 경우 향후 감사 관련 용역 및 자문을 기피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 적극행정지원 사업: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 강화 필요

가. 개 요

‘적극행정지원’ 사업은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감사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4,100만원 중 3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7%)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적극행정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적극행정지원	341	341	-	-	341	316	-	25	263

주) 2024년 예산부터 재심의 처리 관련 예산은 세부사업 ‘감사활동경비’로 이관되었음

나. 검토의견

2023년 재심의 평균처리기간이 474일로 전년 대비 149일 증가하였는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6조[7)]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8)]에 의거하여 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처분요구를 받은 자, 소속 장관, 감독관의 장

6) 일반회계-적극행정지원(1131-304)(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7)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8)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직권 재심의), 제40조(재심의의 효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처분요구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법」 제38조 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재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474일로, 2021년 이후 재심의 청구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7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연 도	전체 처리 건수	기한 준수 처리 건수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처리 건수		평균 처리기간
			2개월~1년	1년 초과	
2017	94 (100.0)	7 (7.4)	51	36	328
			87(92.6)		
2018	51 (100.0)	7 (13.7)	26	18	287
			44(86.3)		
2019	32 (100.0)	6 (18.7)	17	9	231
			26(81.3)		
2020	48 (100.0)	5 (10.4)	36	7	213
			43(89.6)		
2021	46 (100.0)	4 (8.7)	18	24	294
			42(91.3)		
2022	22 (100.0)	2 (18.2)	9	11	325
			20(81.8)		
2023	53 (100.0)	2 (3.8)	18	36	474
			51(96.2)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평균처리기간의 장기화 원인으로 재심의 청구대상 확대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10)]

그러나 최근 5개년 재심의 인용이 매년 10건 이하이고, 대부분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재심의 청구인의 신속 구제가 이루어지기

9)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0) 재심의 청구대상 확대: 2020.10월 권고·통보 추가, 2021.2월 청구권자 범위 확대, 소속 장관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가 가능해짐

어려워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유형별 재심의 처리 상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계	인 용			기각	각하	취하	
						소계	취소	변경				
2019년	계	74	20	54	32	2	1	1	22	4	4	42
	변상판정	8	5	3	6	-	-	-	5	-	1	2
	징계 · 문책	46	8	38	18	1	-	1	15	-	2	28
	시정·주의 등	20	7	13	8	1	1	-	2	4	1	12
2020년	계	79	42	37	48	9	4	5	24	7	8	31
	변상판정	6	2	4	2	-	-	-	2	-	-	4
	징계 · 문책	41	28	14	28	4	-	4	18	-	6	14
	시정·주의 등	31	12	19	18	5	4	1	4	7	2	13
2021년	계	82	31	51	46	1	-	1	38	3	4	36
	변상판정	5	4	1	1	-	-	-	1	-	-	4
	징계 · 문책	44	14	30	21	-	-	-	19	-	2	23
	시정·주의 등	33	13	20	24	1	-	1	18	3	2	9
2022년	계	94	36	58	22	0	0	0	20	1	1	72
	변상판정	14	4	10	4	0	0	0	4	0	0	10
	징계 · 문책	51	23	28	11	0	0	0	10	0	1	40
	시정·주의 등	29	9	20	7	0	0	0	6	1	0	22
2023년	계	110	72	38	56	10	2	8	45	-	1	54
	변상판정	10	10	-	3	-	-	-	3	-	-	7
	징계 · 문책	62	40	22	32	4	-	4	27	-	1	30
	시정·주의 등	38	22	16	21	6	2	4	15	-	-	17

자료: 감사원

이와 관련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시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에도 재심의 처리기간이 증가한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1]

11)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3년 2월 단순한 사안의 경우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심의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재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7)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관련 여비 집행실적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감사원은 2018년 2월 재심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그간 관계인 권익보호를 위해 청구권 확대·강화에 보다 치중한 결과 업무량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22년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그간 누적되었던 재심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자료: 감사원

3.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사업: 자산취득을 위한 공사비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사업은 감사인력 운용개선(국별 인력 통합 운영)을 시행에 따라 기존 건물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워크 공간을 구축하여 감사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9억 9,500만원 중 9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9%)되고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4,546	4,546	-	729 △761	4,514	3,411	930	173	3,240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1,100	1,100	-	430 △535	995	934	-	61	2,143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를 집행하며 자산취득을 위해 공사비를 전용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당초 2023년 1년 동안 본관 4개 층, 제2별관 2개 층, 제4별관 4개 층 등 총 11개 층·총 9,986.24㎡, 50개 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7월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공사비 예산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무용 가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2개 층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음.

12) 일반회계-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운영지원과)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 사업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본예산
- 일반수용비(210-01)	117	△32	85	73	-	13	158
- 실시설계비(420-02)	62	-	62	31	-	31	86
- 공사비(420-03)	913	△503	410	404	-	6	1,507
- 감리비(420-04)	1	-	1	-	-	1	26
- 시설부대비(420-05)	7	-	7	-	-	7	10
- 자산취득비(430-01)	-	430	430	426	-	4	356
합계	1,100	430 △535	995	934	-	61	2,143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4억 3,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통해 캐비닛 238개, 책상 143개, 옆서랍 143개, 회의용 탁자 25개, 의자 247개,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를 취득하였음.

[2023년 월별 사업 집행내역]

일정	계획	집행	비고
2023년 1월	실시설계		
2023년 2월~3월	개선공사 및 사무실 배치		
2023년 4월~5월		사무실 배치 검토	
		가구 교체 필요성 검토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2023년 7월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공사비→자산취득비, 430백만 원
		실시설계 완료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계약 체결	
		사무용 가구 계약 체결	캐비닛 238개, 책상 143개, 옆서랍 143개, 회의용탁자 25개, 의자 247개, 파티션 등
2023년 8월		본관 8층 착공	2023. 8. 14.
2023년 9월		본관 8층 준공	2023. 9. 1.
		본관 7층 착공	2023. 9. 3.
		본관 7층 준공	2023. 9. 17.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설 개선공사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구의 규격 불일치로 사무공간 재배치에 한계가 있어 신규 가구 구입이 필요하였는데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가구를 구매하

였고, 2024년에 잔여 사업 8개 층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취득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집행지침의 규정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전용을 통한 자산취득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무공간 재배치임에도 자산취득을 위해 전용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자산취득이 필요했다면 감사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취득소요를 파악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 연수과정 직접 운영 필요

가. 개 요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감사원 등 최고 감사기구에 우리나라의 선진 감사제도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여 해당 국가의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최고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297	297	-	-	297	294	-	3	292

동 사업은 2020년 2월 몽골·라오스·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4개 국가에서 감사교육원에 자국 감사기구 관리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신규편성되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2023년 감사원은 라오스·몰디브 및 르완다 3개국을 대상으로 감사기구역량강화(ODA)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별 감사기구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였음. 라오스와 몰디브는 초청연수, 르완다는 현지연수 및 온라인연수 병행으로 실시하였음.[14)]

13) 일반회계-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감사교육원)

14) 당초 3개국 모두 초청연수로 계획하였으나, 르완다 측에서 내부 업무일정 등으로 방한이 곤란하고, 감사교육원에서 르완다 현지로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르완다 과정은 현지연수와 온라인연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음.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감사기구역량강화(ODA) 사업을 2021~2022년에는 감사교육원이 직접 운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3년부터 용역체결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용역으로 인한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2022년까지 동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2023년부터 위탁용역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일용임금・일반수용비・임차료・국외여비(총 2억 4,2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2~2023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일용임금	37	37	22	-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일부, 임차료, 국외여비를 일반용역비로 전환함**
일반수용비	56	56	41	51	49	
임차료	35	35	25	-	-	
일반용역비	-	-	15	242	242	
국외업무여비	65	65	39	-	-	
사업추진비	4	4	1	4	4	
계	297	197	54	297	29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23년 4월 옴니매니지먼트 주식회사와 동 사업 초청연수 관련 항공권 구매・연수일정 진행 등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수과정 운영 및 진행 지원을 위탁하였음.

[감사기구 역량강화 일반용역비 계약 체결 내용]

○ 계약건명: 감사기구 역량강화과정 초청연수 용역
○ 계약상대자: 옴니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계약금액: 241,700,000원
○ 계약기간: 2023.4.20.~2023.11.30.
○ 주요 과업내용
- 3개 국가 초청연수 관련 항공권 구매, 연수일정 진행, 콘텐츠 제작, 연수장소 및 식사제공, 연수생 관리, 사후관리 등 연수과정 운영 및 진행 지원

자료: 감사원

그 결과, 2023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용역비에서 총 5,142만원의 간접비

용(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였음.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일부(5천만원 상당)가 간접비용으로 지출되며 동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든 것임.[15]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연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지원, 차량 및 사무실 임차 등 연수 관련 최소한의 지원업무에 대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임.

[2023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 예산집행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합계
일반용역비	직접비용 (항공료, 숙식비 등)	72,113	77,426	40,637	190,176
	간접비용 (일반관리비, VAT 등)	**17,175**	**17,175**	**17,175**	**51,524**
	소계	89,288	94,601	57,811	241,700
일반수용비	통·번역비, 강의료	11,157	11,360	12,080	34,597
	기타 운영비	4,613	4,613	4,613	13,840
	소계	15,770	15,973	16,693	48,437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1,333	1,333	1,333	4,000
합계		106,000	112,000	76,000	294,000

자료: 감사원

특히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도국 감사역량 강화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감사 관리과정' 사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는데,[16]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은 민간업체 대행으로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연수과정 직접 운영을 통한 간접비 지출 절감 등 예산상 비효율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특히, 2023년의 경우 당초 초청연수를 실시해야 할 계획이던 르완다를 현지연수 및 온라인연수로 실시함에 따라 비용절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간접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비 예산 감소는 점차 심화될 우려가 있음.

16) 감사원은 2005년부터 외교부의 글로벌연수(ODA) 사업 중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도국 감사역량 강화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2023년에는 '공공감사 관리과정'을 실시하였음.

[감사기구 역량강화 및 글로벌연수의 감사역량 강화과정 비교]

구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감사원 자체 초청연수사업)	글로벌연수(ODA) '공공감사 관리과정' (코이카→감사원 위탁사업)
수행방식	감사교육원 → 민간업체 대행	감사교육원 직접 수행
연수규모	3개국(라오스·몰디브·르완다) 45명	5개국 15명
2023예산	2억 9,700만원(45명 × 6.6백만원)	7,500만원
2023결산	2억 9,400만원(29명)	6,900만원

주) 글로벌 연수 '공공감사 관리과정'의 예산액 및 결산액은 감사원과 KOICA의 위탁금액만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가. 개 요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은 국제기구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과 지도력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100만원 중 9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교류 협력강화	822	822	-	383 △204	1,001	988	-	13	854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본예산 대비 46.7%의 증액 조정(총 9차례의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① 기존 예정되었던 행사를 과다하게 증액 조정하고, ② 이에 따라 일부 내역 사업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③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 예산 심의내역과 상이한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먼저 **‘제59차 ASOSAI 이사회 행사 개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사원은 대규모 국제행사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1억 2,100만원(본예산의 183.3%)을 증액 조정한 후 총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음.

17) 일반회계-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기획조정실)

[제59차 ASOSAI 이사회 행사 개최 사업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비목	2023년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일반수용비(210-01목)	1,400만원	85만원
임차료(210-07목)	4,350만원	-
사업추진비(240-01목)	850만원	170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	1억 6,700만원
국내여비(220-01목)	-	1,500만원
계	**6,600만원**	**1억 8,400만원**

자료: 감사원

당초 감사원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ASOSAI 이사회 행사를 감사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개국 최고감사기구의 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세목조정 및 전용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증액 조정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음.

[ASOSAI 이사회 행사를 위한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3.3.6.)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수용비 (210-01)	25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용역비 (210-14)	제59차 ASOSAI 이사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회의전문업체에 행사준비 위탁
		임차료 (210-07)	88			
자체전용 (2023.6.12.)	기본경비 (1111-251)	복리후생비 (210-12)	2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용역비 (210-14)	ASOSAI 이사회가 당초 계획보다 일정, 참가국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용역비 예산이 부족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사업추진비 (240-01)	17			
자체전용 (2023. 9. 4.)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용역비 (210-14)	2023년 9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ASOSAI 이사회」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준비를 하던 중 차량 및 회의장 추가 임차 수요, 직원 출장 여비가 추가로 필요함을 확인, 이에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내 관서업무추진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에서 일반용역비와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ASOSAI 이사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국외업무여비 (220-02)	11		국내여비 (220-01)	
		일반수용비 (210-01)	6			

자료: 감사원

그러나 행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의 283.3%를 증액 조정하는 것은 동 사업의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함. 행사 규모를 고려할 때,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직접 수행이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과다한 증액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음.

다음으로, 감사원은 내역사업 **'기타 국제교류사업'** 을 추진하며, 모든 내내역 사업 단위에서 세목조정·내역변경 등을 시행하였음. 동 사업은 전액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본예산 기준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사원은 이·전용 등을 통해 2억 2,100만원(본예산의 53.4% 증액조정)을 집행하였음.

[2023년 기타 국제교류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일자	예산액	세목조정 내역변경	집행액	비고
합계		**144**	**121 △44**	**221**	
감사기관간 고위급 교류협력	**4월~6월**	**77**	**36**	**113**	코로나 종료 이후 대폭 상승된 항공운임 등으로 인해 예산 초과 집행
MOU 및 관련 이행사업	-	7	△7	-	국제회의 참석한 기회에 MOU를 체결하게 되어 별도 비용 미발생
한중일 감사원 실무협력회의	6월	9	△3	6	개최국(중국)의 중식/석식 제공으로 식비 절감, 실무진의 숙박비 절약 등으로 여비 절감
MIKTA 감사원장회의 참석	-	29	△29	-	SAI20 회의에서 MIKTA 회원국들간에 회의 개최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개최국 선정이 지연되며 다음 연도로 연기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 방문	10월	22	△5	17	방문 기관을 예산과 달리 유럽이 아닌 동남아시아로 변경
루마니아 감사원 초청 방문	**4월**	**-**	**20**	**20**	**예산 편성시 예측 불가**
SAI20 국장급 회의 참석	**3월**	**-**	**15**	**15**	**예산 편성시 예측 불가**
SAI20 원장급 회의 참석	**6월**	**-**	**26**	**26**	**예산 편성시 예측 불가**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참석	**5월**	**-**	**24**	**24**	**예산 편성시 예측 불가**

자료: 감사원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타 내역사업인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관련 교류’의 내내역사업인 **‘INTOSAI 이사회 및 워킹그룹’**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행하지 못하였음. 감사원은 8개 워킹그룹 참여를 위해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에 감사기관 간 고위급 교류협력사업 등 기타 국제교류사업 예산을 1억 2,100만원 증액 조정함에 따라,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예정되어 있던 워킹그룹 참여를 하지 못한 것임.

한편 감사원은 **‘SAI20 국장급·원장급 회의 참석’**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감사원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국제교류 행사가 발생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다고 설명함.

국제교류 행사의 특성상 예산 편성 시 집행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모든 내내역사업 단위에서 이·전용 등이 발생하여 본예산 대비 46.6%를 증액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참고로, 동 사업의 최근 6개년 결산내역에서도 2023년과 같은 대규모 이·전용 등은 발생한 적 없음.

[2018~2023년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262	262	-	-	262	236	90.1	90.1	-	26
2019	161	161	-	-	161	156	96.9	96.9	-	5
2020	152	69	-	-	69	46	66.7	66.7	-	23
2021	755	755	-	91 △129	717	261	36.4	36.4	-	456
2022	637	637	-	66 △16	687	558	87.6	81.2	-	128
2023	822	822	-	383 △204	1,001	988	120.2	99.7	-	13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내역과 상이한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국제교류행사의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순증인 1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6.29%)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143	143	-	-	134	134	△9
총수입	-	-	143	143	-	-	134	134	△9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2억 2,200만원(△12.6%)이 적은 154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500만원(7.6%)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999	19,777	14,366	△5,411	17,683	17,683	15,461	△2,222	1,095
총지출	19,999	19,777	14,366	△5,411	17,683	17,683	15,461	△2,222	1,09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3억 1,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억 3,400만원이 수납(수납률 43.2%)되고 1억 7,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311	134	-	177
합 계	-	-	-	-	311	134	-	17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93억 1,600만원으로, 이 중 170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4%)되고 22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7,683	17,683	1,633	216	-	19,316	17,084	-	2,232
합 계	17,683	17,683	1,633	216	-	19,316	17,084	-	2,23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산은 전년 대비 6억 4,300만원이 감소한 132억 8,600만원으로, 이는 일반 유형자산이 2억 1,900만원 및 무형자산이 15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0억 1,500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6,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9,300만원 감소한 2,300만원으로 유동부채 9,3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한 132억 6,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4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18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9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286	13,930	△644	△4.6
		유동자산	2,174	1,159	1,015	87.6
		투자자산	61	-	61	-
		일반유형자산	2,854	3,073	△219	△7.1
		무형자산	8,197	9,697	△1,500	△15.5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23	116	△93	△80.2
		유동부채	23	116	△93	△80.2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3,263	13,813	△550	△4.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454	3,885	2,569	66.1
	재정운영순원가		18,455	14,406	4,049	28.1
	재정운영결과		18,455	14,406	4,049	28.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 시행된 이후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기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총 7개 세부 사업에서 공수처 정보화시스템 구축,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수사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운영 사업자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산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가. 개 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사건관리·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2억 8,200만원 중 22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형사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아홉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925	1,925	666	-	2,591	2,582	-	9	3,851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622	1,622	660	-	2,282	2,280	-	2	1,906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운영 사업자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산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01-300)(수사과)

공수처는 용역업체(LG CNS)와 2022년 6월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구축을 완료하고 법무부 및 경찰 등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사업(2022. 8. 4. ~ 2023. 5. 31.)을 수행하였음.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새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고, 새로 구축된 시스템 개발업체가 정보시스템의 원천적인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무상 하자보수(1년)를 수행함.

그러나 공수처의 전산 인력은 1명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전산 인력이 부재하고, 신설 조직으로서 기존 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후 바로 외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수처 자체 전담인력의 부재는 형사사법 정보업무 내용의 기밀성에 대한 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2023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내역]

구분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기간	2022. 8. 4. ~ 2023. 5. 31.	2023. 6. 1. ~ 2023. 12. 31.
사업 금액	10억 9,900만원	16억 1,700만원
담당 업체	㈜엘지씨엔에스	㈜엘지씨엔에스
업무 내용	법·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형사사법기관의 정보 유통 및 표준 연계 체계 개선 등)	법·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형사사법기관의 정보 유통 및 표준 연계 체계 개선 등)
		HW, 상용 SW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 관리 등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으로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담 전산 인력을 확보하여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교육훈련 실시에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가. 개 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 및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0억 1,500만원 중 1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700만원을 불용함.[3)]

[2023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970	1,970	45	-	2,015	1,388	-	627	1,720
일반용역비	160	160	38	-	198	188	-	10	160

일반용역비 내역사업으로는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2023년 결산액 1억 6,800만원)이 있으며,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사업은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2023년 일반수용비(2,000만원)를 일반용역비(2,000만원)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함.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에 부합한 예산편성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목변경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은 공직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금융거래 정보 등의 비정형 대용량 수사자료에서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임.

2023년에 실시한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사업은 2022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 도입 후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결과에 따라 실제 수사사례

3) 일반회계-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수사기획관)

를 접목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었음.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은 교육생의 지식수준에 따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2단계)으로 세분화하고, 각 과정당 각각 7명, 5명이 수료하였음.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현황]

구분	기간	주요 내용	교육 장소	수료인원
기초과정	'23. 7. 17. ~ 7. 19.	SNA 활용한 수사정보분석 등 기초 분석기법 교육	코지 모임공간 (서울 서초구)	7명
심화과정	'23. 7. 24. ~ 7. 26.	Python, I-Base 활용 등 수사정보 분석 집중 교육	경찰대학 사이버수사실습실 (충남 아산)	5명

자료: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수사업무 수행에 있어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 훈련을 시행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파악으로 교육 시설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한 예산 비목을 사전에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공수처는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이 구축된 교육 시설과 공수처 수사업무 활용에 필요한 강의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용역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일반수용비 예산 중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세목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실시를 위한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변경 (2023.7.1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 수용비 (210-01)	2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 용역비 (210-14)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용역을 위한 세목변경

자료: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향후 수사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교재 제작 등에 대한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00만원(△7.7%)이 적은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20.0%)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80	480	45	△435	39	39	36	△3	△9
총수입	480	480	45	△435	39	39	36	△3	△9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억 4,000만원(△3.1%)이 적은 53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000만원(7.3%)이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3,145	52,862	50,072	△2,790	55,492	55,492	53,752	△1,740	3,680
총지출	53,145	52,862	50,072	△2,790	55,492	55,492	53,752	△1,740	3,68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9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9	39	-	39	36	36	-	-
합 계	39	39	-	39	36	36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4억 9,200만원으로, 이 중 537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고 17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5,492	55,492	-	22 △22	-	55,492	53,752	-	1,740
합 계	55,492	55,492	-	22 △22	-	55,492	53,752	-	1,74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헌법재판소 자산은 전년 대비 22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41억 1,8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2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6억 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5억 6,300만원, 무형자산이 17억 2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7,900만원 감소한 38억 1,9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2억 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5억 4,400만원이 증가한 2,102억 9,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62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6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4,118	211,852	2,266	1.1
		유동자산	617	16	601	3,756.3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05,827	205,264	563	0.3
		무형자산	7,667	5,965	1,702	28.5
		기타비유동자산	6	608	△602	△99.0
	부 채		3,819	4,098	△279	△6.8
		유동부채	1,413	1,482	△69	△4.7
		장기차입부채	2,406	2,615	△209	△8.0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10,299	207,755	2,544	1.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6,245	53,758	2,487	4.6
	재정운영순원가		56,209	53,712	2,497	4.6
	재정운영결과		56,209	53,712	2,497	4.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결산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행정 서비스 실현,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반 조성, 국제교류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 업무의 효율적 지원, 대국민 재판서비스 제고,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고, 헌법연구관(보) 채용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인건비: 심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채용 등 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인건비’ 예산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318억 6,000만원 중 309억 9,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7.3%)하였음.[2)]

[2023년도 인건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31,860	31,860	-	-	31,860	30,995	-	865	33,533

나. 검토의견

첫째,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고 연간 2,500건이 넘는 접수 건수 처리를 위하여 헌법연구관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헌법재판의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2조[3)]에 따라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

2) 일반회계-인건비(1001-150)(행정관리국)

3) 「헌법재판소법」

쟁의심판·헌법소원 및 각종 신청사건· 특별사건 심판을 관장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2023년 2,591건으로 2019년 이후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2,500건이 넘고 있으며,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46.6건으로 나타남.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 현황: 2014~2023년]

(단위: 건,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건수	1,969	1,859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처리건수	1,888	1,937	1,976	2,425	2,447	2,519	3,042	2,621	2,675	2,659
헌법연구관 현원 (12월말 기준)	44	41	48	48	54	53	56	54	54	57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42.9	47.2	41.2	50.5	45.3	47.5	54.3	48.5	49.5	46.6

자료: 헌법재판소

2023년 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법」제38조[4]에 따라 심판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이 넘은 미제 사건 1,203건이 있으며, 2023년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지정재판부 제외)은 809.2일로 약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5]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49,862건 중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48,607건(97.5%)으로 대부분의 접수사건이 헌법소원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헌법소원 사건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68①)사건은 38,532건(77.3%),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68②) 사건은 10,406건(20.7%)으로 나타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재판이나 제도 등으로 구제가능한 수단이 없어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다른 일반 재판으로는 다툴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권리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평균사건 처리기간(지정재판부 제외)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은 732.6일로 나타남.

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가 사법·행정 등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인한 것으로 사건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의 접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4년 4월 기준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 75명 중 73명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자이고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2명[6]으로 파악되는 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38,532건에 이르는 등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도 최근 3년간 평균 48건으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민사·형사·조세 및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 사건처리 누계: 1988.9.1.~2023.12.31.]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위헌법률		1,114	342	99	18	7	-	386	-	79	-	130	1,061	53
탄핵		7	-	-	-	-	1	-	2	1	-	-	4	3
정당해산		2	-	-	-	-	1	-	-	1	-	-	2	-
권한쟁의		132	-	-	-	-	22	-	31	51	-	19	123	9
헌법소원	§68①	38,532	127	92	20	-	896	11	8,631	26,911 (25,133)	8	880	37,576	956
	§68②	10,075	265	119	32	21	-	2,905	-	5,992 (5,542)	2	156	9,492	583
	계	48,607	392	211	52	21	896	2,916	8,631	32,903 (30,675)	10	1,036	47,068	1,539
합계		49,862	734	310	70	28	920	3,302	8,664	33,035 (30,675)	10	1,185	48,258	1,604

주 1)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2) 헌법소원 §68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3) 헌법소원 §68②: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의 구제방법으로서 마련된 절차(위헌소원)
자료: 헌법재판소

6) 재직중인 헌법연구관 지원 시 자격구분 및 채용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2024. 4. 1. 기준)

지원자격별 구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4급이상 (5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기관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법률사무 5년 이상)
연구관	70	-	-	2	-
연구관보	3	-	-	-	-

자료: 헌법재판소

둘째, 2023년 인건비 불용액은 8억 6,500만원으로 퇴직·휴직 및 신규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채용 소요기간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7]에 따라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을 두며,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보)[8]을 두도록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헌법연구관의 정원은 72명이나 현원은 62명으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10명으로 나타남.

[헌법연구관(보) 정·현원 현황: 2021~2023년]

소속	2021년				2022년				2023년			
	헌법연구관		파견법관	파견검사	헌법연구관		파견법관	파견검사	헌법연구관		파견법관	파견검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재판소(연구부)	58명	54명	9명	4명	60명	54명	9명	4명	63명	57명	9명	4명
헌법재판연구원	9명	5명	-	-	9명	5명	-	-	9명	5명	-	-
합계	67명	59명	9명	4명	69명	59명	9명	4명	72명	62명	9명	4명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증원 현황: 2019~2023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원 인원	3명	3명	1명	4명	3명

자료: 헌법재판소

7)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8) 「헌법재판소법」제19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함.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연구관(보)로 증원된 인원 3명과 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인원 4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채용공고에서 임용까지 3 ~ 9개월이 소요되었음. 이로 인해 결원에 따른 충원이 지연되어 업무 공백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9)]

특히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법무관 경력자의 경우, 합격자 공고 후 변호사 시험 결과(다음 연도 4월말)와 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종료(다음 연도 7월말) 후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정기 채용방식으로만 모집할 경우 채용공고에서 임용까지 5 ~ 9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있어 연 1회 정기채용방식 외에도 일반적인 지원 자격요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시기를 다양화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 소요기간]

채용 공고	채용 확정	임용일	임용 소요기간 (채용확정 이후)	임용인원
2022.10.	2022.12.	2023. 2. 1.	약 1개월	- 헌법연구관 2명 - 헌법연구관보 3명
		2023. 5. 1.	약 4개월	- 헌법연구관보 1명 (변호사 시험 합격후 임용)
		2023. 8. 1.	약 7개월	- 헌법연구관 1명 (법무관 경력자)

자료: 헌법재판소

9) 2023년도 헌법연구관(보) 채용 일정

채용공고(2022. 10월) → 원서접수(2022. 10월) → 서류전형(2022. 10월) → 인성검사(2022. 12월) → 집단토의면접(2022. 12월) → 개별면접(2022. 12월) →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2022. 12월) → 헌법연구관 인사위원 심의(2023. 1월, 7월) → 재판관회의 의결(2023. 1월, 4월, 7월) → 임용

자료: 헌법재판소

2.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은 우수 헌법수업 사례를 공유·활용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00만원 중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0)]

[2023년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7	1,867	-	-	1,867	1,837	-	30	1,878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	-	19	19	-	-	19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헌법수업 사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의 효과분석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은 헌법교육 우수사례를 일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자 교사들이 강의안을 제작하여 발표하고 우수한 수업사례에 대하여 포상하는 사업임. 2023년에는 경연대회에 신청자 16명 중 8명이 경연에 참가하여 대상 1명을 포함한 8명 전부가 입상하였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교사는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특수학교 교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참가 신청률 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도 시행하였으나, 2023년 참가 신청자는 2022년 25명에서 9명이나 감소한 16명으로 저조하였음.

10) 일반회계-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헌법재판연구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 실적: 2019~2023년]

구분	신청자	경연자	심사자	포상대상자 및 포상금
2019	17명	7명	5명(외부심사위원: 3명)	대상(300만원) : 1명 금상(200만원) : 1명 은상(150만원) : 2명 동상(100만원) : 3명
2020	14명	8명	5명(외부심사위원: 3명)	대상(300만원) : 1명 금상(200만원) : 1명 은상(150만원) : 2명 동상(100만원) : 4명
2021	17명	8명	5명(외부심사위원: 3명)	대상(300만원) : 1명 금상(200만원) : 1명 은상(150만원) : 2명 동상(100만원) : 4명
2022	25명	8명	5명(외부심사위원: 3명)	대상(300만원) : 1명 금상(200만원) : 1명 은상(150만원) : 2명 동상(100만원) : 4명
2023	16명	8명	5명(외부심사위원: 3명)	대상(300만원) : 1명 금상(200만원) : 1명 은상(150만원) : 2명 동상(100만원) : 4명

자료: 헌법재판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목적은 헌법 강의안을 실제 헌법교육에 활용하고자 함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사 자료집을 제작(연간 200부)하여 교원 연수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배부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게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헌법수업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우수 헌법수업 강의안에 대한 실제 활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216억 7,800만원(△29.2%)이 적은 7,790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 200만원(3.5%)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03,970	703,970	649,721	△54,249	932,516	932,516	673,378	△259,138	23,657
기 금	151,425	151,425	102,708	△48,717	168,193	168,193	105,653	△62,540	2,945
총수입	855,395	855,395	752,429	△102,966	1,100,709	1,100,709	779,031	△321,678	26,602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412억 5,500만원(△11.6%)이 적은 2조 696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7억 4,100만원(3.2%)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50,903	1,944,976	1,933,074	△11,902	2,013,406	2,013,406	1,999,506	△13,900	66,432
기 금	75,308	75,308	71,864	△3,444	75,244	75,244	70,173	△5,071	△1,691
총지출	2,026,211	2,020,284	2,004,938	△112,599	2,088,650	2,088,650	2,069,679	△241,255	64,741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1,685억 5,400만원으로 7,731억 9,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526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3%)되고 205억 8,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38,291	738,291	-	738,291	453,008	451,500	-	1,508
등기특별회계	430,263	430,263	-	430,263	320,182	301,102	-	19,080
합 계	1,168,554	1,168,554	-	1,168,554	773,190	752,602	-	20,588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190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조 272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4%)되고 196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2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775,798	1,775,798	9,881	-	-	1,785,679	1,762,999	17,198	5,481
등기특별회계	430,263	430,263	3,078	-	-	433,341	264,203	2,499	166,639
합 계	2,206,061	2,206,061	12,959	-	-	2,219,020	2,027,203	19,697	172,12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992억 8,500만원으로 1,384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68억 8,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9%)되고 15억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9,285	199,285	138,481	136,889	5	1,587
합 계	199,285	199,285	138,481	136,889	5	1,58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011억 8,100만원으로, 이 중 1,368억 8,900만원이 지출(집행률 68%)하고 28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9,285	199,285	1,896	201,181	136,889	2,871	4,095
합 계	199,285	199,285	1,896	201,181	136,889	2,871	4,09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법원 자산은 전년 대비 1,772억 1,400만원이 증가한 8조 8,158억 4,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888억 2,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678억 3,700만원, 무형자산이 7억 8,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97억 6,600만원 증가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0억 2,100만원 감소한 550억 4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51억 7,100만원, 장기충당부채 7,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 5억 5,1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07억 1,6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32억 3,400만원 증가한 8조 7,608억 3,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763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억 5,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750억 7,500만원 감소한 1조 7,034억 5,3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004억 6,800만원 감소한 1조 6,020억 6,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법원 제무재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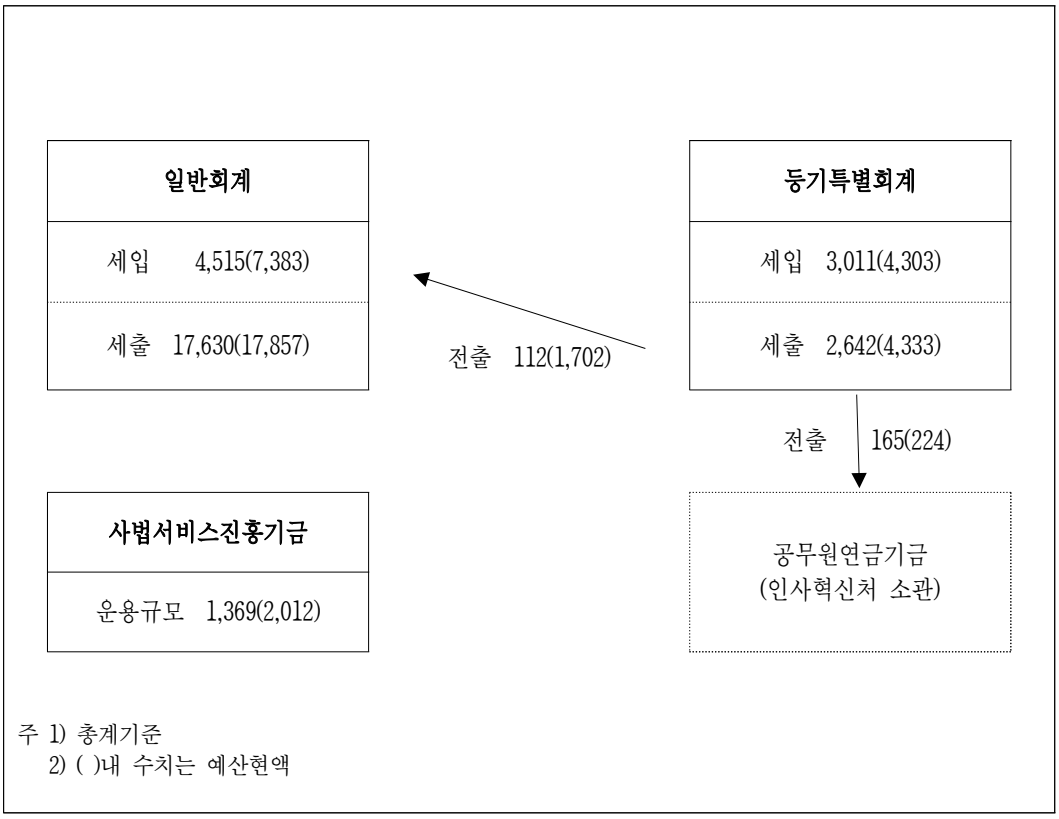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8,815,844	8,638,630	177,214	2.1
		유동자산	214,326	125,501	88,825	70.8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8,459,563	8,391,726	67,837	0.8
		무형자산	44,273	43,489	784	1.8
		기타비유동자산	97,681	77,915	19,766	25.4
	부 채		55,004	61,025	△6,021	△9.9
		유동부채	19,148	19,699	△551	△2.8
		장기차입부채	35,480	30,309	5,171	17,1
		장기충당부채	376	302	74	24.5
		기타비유동부채	-	10,716	△10,716	△100
	순자산		8,760,839	8,577,605	183,234	2.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76,375	534,433	△58,058	△10.9
	재정운영순원가		1,703,453	1,778,528	△75,075	△4.2
	재정운영결과		1,602,062	1,702,530	△100,468	△5.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대법원 결산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개 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1) 총계기준
2) ( )내 수치는 예산현액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대법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재판이 중심이 되는 독립되고 민주적인 법원’,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을 2023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50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구술 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실질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의 인권 보장,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세입예산액을 반영하는 동시에 징계부가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절차 관리 등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집행률 36.2%)하고, 1차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 바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가금: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가금’ 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2]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징계처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이득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징수결정액 10억 600만원이 전액 미수납(수납률 0%)되었음.[3]

[2023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가금	-	-	1,060	-	-	1,060	-	-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징수절차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 일반회계-징계부가금(56-564)(기획조정실)

대법원은 2023년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징계부가금 10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되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은 그 발생원인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수입 규모와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징계받은 자의 수납 일시가 일정치 않으며 수납액이 매해 소액인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징계부가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징수결정되고 수납률은 5%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징계부가금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시부터 세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4)]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2,375	15	-	0.6	2,361	-
2021	-	-	-	-	1,110	10	-	0.9	1,100	-
2022	-	-	-	-	1,109	49	-	4.4	1,060	-
2023	-	-	-	-	1,060	-	-	-	1,060	-

자료: 대법원

[징계부가금 징수 현황: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20	2,375(14건)	15(3건)	2,361
2021	1,110(12건)	10(1건)	1,100
2022	1,109(13건)	49(3건)	1,060
2023	-	-	1,06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미수납액 중 납부의무자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대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의 시효와 관련 적극적인 징계부가금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징계부가금 대상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국세청의 2023년 징계부가금 세입예산액은 3,000만원임 .

<세 출>

2. 국선변호료 지원: 국선변호료 집행관리 철저

가. 개 요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구속영장심문을 받은 피의자,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53억 2,900만원 중 652억 8,0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였음.[5)]

[2023년도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선변호료 지원	65,329	65,329	5	-	65,334	65,285	-	49	69,884

나. 검토의견

국선변호료 지급 사업에 있어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선변호료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국선변호를 신청한 총 접수 건수는 417,924건으로 전년 대비 38,341건(10.1%)이 증가되었고, 국선변호인(전담 및 일반[6)]) 선정 건수는 162,577건으로 전년 대비 16,765건(11.5%)이 증가하였음.

---

5) 일반회계-국선변호료 지원(1143-409)(사법지원실)

6) 국선변호인은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위촉을 받아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일정 수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변호사를 의미함(월 보수의 지급은 각 법원이 자체적으로 월 적정 건수(단독: 월 25~35건, 합의부: 월 20~30건))를 정하여 운영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함).
일반국선변호인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말함(국선변호인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기본 보수는 매건 각 550,000원).

2023년 국선변호료 총 지급액은 652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00만원임. 국선변호료 불용액 4,900만원은 각급 75개 법원에서 일반국선변호료 기본보수액(2023년 기준 50만원) 미만의 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임.

[국선변호료 지급 현황: 2021~2023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접수 건수[1]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전담+일반)[2]	국선변호료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2021년	380,064	140,627	61,567	58,133	3,484
2022년	379,583	145,812	61,000	60,586	406
2023년	417,924	162,577	65,334	65,285	49

주 1)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인신보호, 치료감호, 구속영장 청구사건, 소년사건, 체포·구속 적부심청구사건, 형사공판의 각 접수건수 총합

2) 국선변호인이 선정할 수 있는 인신보호, 치료감호, 구속영장 청구사건, 소년사건, 체포·구속 적부심청구사건, 형사공판의 각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총합

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선변호료 예산 배정 방식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연 3회, 일반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포함) 보수는 연 5회에 걸쳐 각급 법원에 배정하고, 배정받은 예산에 대한 집행방식은 75개 법원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음.[7]

국선변호료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 12. 1.부터 시행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4항에 따라 각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은 국선변호료의 지급지연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나, 2023년까지는 각 법원에서 국선변호료 집행과 관련하여 지급지연 등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다고 설명하였음.[8]

그러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각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은 국선변호료의 지급지연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는 취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7) 국선변호료 지급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

8)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의 증가, 기본 보수 인상 등으로 국선변호료 부족 상황이 예상되어 각 법원에 공문(2024. 5. 8.)으로 국선변호료 지급지연 보고를 요청하여 각 법원의 지연지급액을 파악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신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서류 제출 및 열람 등 절차진행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전자적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8억 2,900만원 중 13억 8,700만원을 집행(집행률 36.2%)하였음.[9)]

[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3,829	3,829	-	-	3,829	1,387	2,389	53	12,585

나. 검토의견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집행률 36.2%)하고, 1차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시스템 구축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국민 전자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임.[10)]

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예산액 38억 2,900만원 중 13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36.2%)되고 23억 8,900만원이 이월(이월률 62.4%)되는 등 사업집행이 저조함.

---

9) 일반회계-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4)(사법정보화실)

10)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2025년(구축비 약 236억 1,200만원(2023~2024년 164억 1,400만원, 2025년 71억 9,800만원(안))이며, 2026~2030년 유지·보수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3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내역
구축사업	일반연구비	3,637	1,368	2,221	개발비, 평가위원수당, 조달수수료
감리	일반연구비	154	3	147	평가위원수당, 조달수수료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연구비	23	1	21	평가위원수당, 조달수수료
기타운영지원	일반연구비	15	15	-	조달수수료
합 계		3,829	1,387	2,389	-

자료: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률 저조의 사유로 대법원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연(계약일: 2023. 7.)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의 오픈일정 연기(2024. 9. → 2025. 1.)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일정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일정이 연장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과업기간 변경내역]

구분		1차	2차	3차
개발	기존	2023. 7. 31. ~ 2024. 5. 1. (9개월, 275일)	2024. 5. 2. ~ 2025. 5. 1. (12개월, 365일)	2025. 5. 2. ~ 2026. 3. 31. (11개월, 334일)
	변경	2023. 7. 31. ~ 2024. 6. 30. (11개월, 335일)	2024. 7. 1. ~ 2025. 8. 31. (14개월, 427일)	2025. 9. 1. ~ 2026. 7. 31. (14개월, 427일)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존	2023. 12. 5. ~ 2024. 5. 31.	2024. 6. 1. ~ 2025. 5. 31.	2025. 6. 1. ~ 2026. 4. 30.
	변경	2023. 12. 5. ~ 2024. 7. 31.	2024. 8. 1. ~ 2025. 9. 30.	2025. 10. 1. ~ 2026. 8. 31.

자료: 대법원

따라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을 기반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 일정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만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일정이 연속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예산비목 편성 필요

가. 개 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법원도서관(법마루) 이용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서관 시설 의무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액 3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됨.[11]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서관 운영지원	2,732	2,732	-	△154	2,578	2,577	-	1	2,825
시설장비유지비	157	157	-	△154	3	3	-	-	-

나. 검토의견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점자 보도블럭 설치 등을 위하여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이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함에 따라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향후 적정한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12]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2023년 1억 5,7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시설장비유지비 비목(210-09)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를 위한 비용으로서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 공

11) 일반회계-도서관 운영지원(7031-307)(법원도서관)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인 공사비 비목(420-03)으로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와 비목변경을 위한 전용 절차 등에 대한 논의하였으나 협의과정 지연 등으로 비목변경을 못하여 결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법원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치내역	예산액
점자블록 보완 설치	마두역에서 법원도서관(법마루) 주출입구, 청사 내 화장실 입구 등	14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 주차구역(법원도서관 주출입구 부근), 노후한 인도슬라이드 개선, 청사 내 계단 핸드레일	7
자동문 설치 및 촉지도	법원도서관 주출입구 출입문 자동문 설치, 출입문 앞 촉지도 설치	12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 전용 화장실 2개소 설치	70
기타 공사 소요경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54
합 계		157

자료: 대법원

2023년 대법원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동 비목 예산액 중 일부(300만원)를 법원도서관 종합열람실 정문 출입구 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 집행하였음.

집행되지 못한 1억 5,400만원은 전액 이·전용되는 등 예산편성시 비목에 대한 오류로 장애인 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목적 및 집행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계획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210-09)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치내역	예산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9)	법원도서관 종합열람실 정문 출입구 시설유지보수	2.6

자료: 대법원

5.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시스템 개발 일정 준수로 관리용역비의 불용 발생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편하여 불편했던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전자적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43억 8,400만원 중 148억 200만원을 집행(집행률 60.7%)하였음.[13)]

[2023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정보화)	18,461	18,461	5,923	-	24,384	14,802	9,354	229	13,278
관리용역비	765	765	-	-	765	544	-	221	7,287

나. 검토의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절차 진행이 늦어져 관리용역비가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발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관리용역비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은 4차연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93억 5,400만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구축일정이 지연되고 있음.[14)]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3차년도)과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HW) 도입이 2023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개발생산성 감

13) 일반회계-차세대전자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사법지원실)

14)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2020~2029년)의 총사업비 2,134억 6,900만원(구축비 1,020억 9,400만원(2020~2024년), 유지보수비 1,094억 2,800만원(2024~2029년)임.

소, 개발자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개발 인력 수급 문제, 법원 시스템 개발사업 자체의 높은 난이도 등 사업 내·외부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하고 있던 사업 진척에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서비스 오픈 일정이 연기(2024. 9. → 2025. 1.) 되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결산내역: 2020~2023년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9,964	7,247		7,247	2,827 [2,827]	39.0	39.0	4,313	107
2021	21,994	21,994	4,313	26,307	14,073 [14,073]	64.0	53.5	11,791	444
2022	21,262	21,262	11,791	33,053	26,732 [26,732]	125.7	80.9	5,923	398
2023	18,461	18,461	5,923	24,384	14,802 [8,879]	80.2	60.7	9,354	229

자료: 대법원

2023년도 관리용역비 예산 편성은 대법원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비 중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6억 4,426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분담금 1억 2,074만원으로 총 7억 6,500만원이 편성됨.

전체 대법원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중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분담금 산출은 기존 예산 배정금액 7억 6,500만원 중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도입 일정 지연으로 재산정되어 최종 5억 5,025만원으로 산정되었고 낙찰차액(433만원)을 포함한 집행액은 5억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임(불용률 40.6%).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재산정액	집행액	불용액
관리용역비	765	550	544	221(낙찰차액 4.3 포함)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발 일정의 준수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비인 관리용역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목적에 필요한 국외여비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외국과의 사법 외교 기능 강화를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9억 3,400만원 중 76억 2,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6.1%)하였음.[15)]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8,142	8,142	-	△208	7,934	7,626	-	308	7,586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	128	128	-	-	128	127		1	128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80	80	-	-	80	80	-	-	80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은 특허·중재 등 전문법률분야에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체계를 소개하고 최신 사법 분야의 주제를 논의·토론하여 사법 분야의 국제적 관심 제고, 사법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사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임.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사업은 세계 각국 사법부 및 관련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 인적·물적 교류 등으로 사법외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사업’에 필요한 국외여비의 미편성으로 인하여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15) 일반회계-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기획조정실)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사업은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외국 권위자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사법연수원 주최 '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과 서울가정법원 주최 '면접교섭의 현황과 과제'를 선정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대법원은 2023년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사업에 필요한 국외여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사업으로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으로 국제기구 및 외국 사법부 소속 전문법률분야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외여비 편성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 사업(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필요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타 사업(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사업) 수행에 있어 계획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향후 대법원은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 사업부와의 정기교류 사업에서 편성된 국외여비를 활용하지 않도록 국제심포지엄 사업에 필수적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제심포지움 및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주요 내용</th><th rowspan="2">집행액</th></tr>
<tr><th>주최</th><th>주제</th><th>주요 연사</th></tr>
<tr><td rowspan="2">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움 개최</td><td>사법연수원 (2023. 11.)</td><td>‘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td><td>Katherine B. FORREST(미국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파트너변호사), Benes Z. ALDANA(미국 National Judicial College 원장), Gerd WINTER(독일 브레멘대학교 교수), Mary WOOD(미국 오리건대학교 교수), Dennis VAN BERKEL(네덜란드 우르헨다재단 변호사)</td><td rowspan="2">일반수용비 (55)
임차료 (34)
일반용역비 (30)
업무추진비 (8)</td></tr>
<tr><td>서울가정법원 (2023. 11.)</td><td>서울가정법원 개원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td><td>윤진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버나뎃 드수자(미국 뉴올리언스 가정법원판사), 니노미야 슈헤이(리츠메이칸대학교 명예교수), 카렌 빌다(함부르크 지방법원 판사), 케네스 얩(싱가포르 가정법원 사무국장[판사]), 쓰루오카 겐이치(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 전무이사)</td></tr>
<tr><td colspan="4">소 계</td><td>127</td></tr>
<tr><td rowspan="3">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사업</td><td>사법연수원 (2023. 11.)</td><td>‘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td><td>Katherine B. FORREST(미국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파트너변호사), Benes Z. ALDANA(미국 National Judicial College 원장), Gerd WINTER(독일 브레멘대학교 교수), Mary WOOD(미국 오리건대학교 교수), Dennis VAN BERKEL(네덜란드 우르헨다재단 변호사)</td><td rowspan="2">국외여비 (40)</td></tr>
<tr><td>서울가정법원 (2023. 11.)</td><td>서울가정법원 개원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td><td>윤진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버나뎃 드수자(미국 뉴올리언스 가정법원판사), 니노미야 슈헤이(리츠메이칸대학교 명예교수), 카렌 빌다(함부르크 지방법원 판사), 케네스 얩(싱가포르 가정법원 사무국장[판사]), 쓰루오카 겐이치(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 전무이사)</td></tr>
<tr><td colspan="3">· 외국인 방문자 등을 위한 대법원 기념품 구입 등
·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지역 세미나 관련 비용</td><td>일반수용비 (40)</td></tr>
<tr><td colspan="4">소 계</td><td>80</td></tr>
</table>

자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세 출>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업(신규): 홍보강화를 통한 점역서비스 집행률 개선 필요

가. 개 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신규) 사업은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점역 신청이 있는 경우 점자 문서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액 2억 600만원 전액이 이·전용(감) 되어 집행액은 없음.[16)]

[2023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등기업무 운영지원	23,986	23,986	805	1,306	26,096	25,816	47	232	24,561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	206	206	-	△206	-	-	-	-	31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점자 문서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방안 마련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점역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점자법」제12조의2[17)]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사)한국

16) 등기특별회계-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기획조정실)

17)「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역을 요청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임.

대법원은 「점자법」의 개정(2020. 12. 8.)에 따라 점역을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22. 8. 9.)하는 등 점역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였으나, 점역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2023년 7월에 1건이 수행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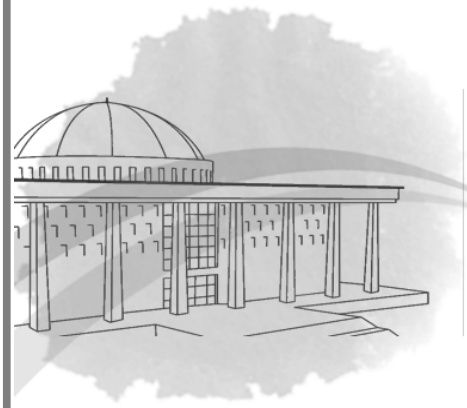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대법원은 점역서비스에 대한 홍보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음성으로 시각장애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인 '넓은마을'을 통하여 점자 문서 제공을 홍보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지사항에 '점자 문서 제공 서비스 안내'를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점자판결문 제공 서비스' 사업[18]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함한다.)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8) 대법원은 소송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점자판결문 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00억원 중 집행액은 35억 8,400만원임(집행률 17.9%).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5,800만원(1,121.7%) 많은 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1.7%)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	23	286	263	23	23	281	258	△5
총수입	23	23	286	263	23	23	281	258	△5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32억 4,000만원(△3.4%) 적은 6,533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1,500만원(3.7%)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54,721	654,721	629,860	△24,861	676,615	676,615	653,375	△23,240	23,515
총지출	654,721	654,721	629,860	△24,861	676,615	676,615	653,375	△23,240	23,515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00만원으로, 2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3	23	-	23	281	281	-	-
합 계	23	23	-	23	281	281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782억 4,900만원으로, 이 중 6,533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8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64,685	664,685	553	-	-	666,319	641,874	45	24,4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930	11,930	-	-	-	11,930	11,501	-	429
- 투자계정	11,930	11,930	-	-	-	11,930	11,501	-	429
합 계	676,615	676,615	553	-	-	678,249	653,375	45	24,82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 대비 13억 4,500만원이 증가한 4,136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7억 4,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12억 4,1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3억 7,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200만원 증가한 15억 4,4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4억 4,6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억 4,200만원 증가한 4,121억 2,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405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억 1,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60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2,3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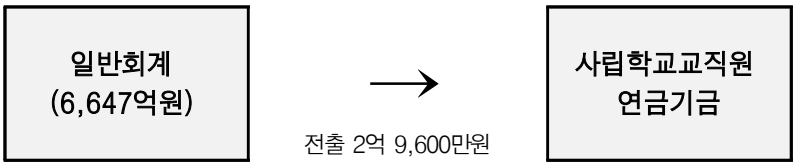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13,664	412,319	1,345	0.3
		유동자산	808	740	68	9.2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407,384	407,008	376	0.1
		무형자산	4,278	3,487	1,241	35.6
		기타비유동자산	745	1,085	△340	△31.3
	부 채		1,544	1,142	402	35.2
		유동부채	-	44	△44	△10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544	1,098	446	40.6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12,120	411,178	942	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40,515	521,698	18,817	3.6
	재정운영순원가		660,892	645,269	15,623	2.4
	재정운영결과		660,892	645,269	15,623	2.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가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2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해당기금으로 전출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흐름도]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체계적 관리, 국정과제의 체계적 점검·관리,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규제개혁,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및 대국민 정당과의 소통 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세심판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우선처리제도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선정과정에서 성과인센티브 책정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시 관계법령상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넷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운용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매년 수행하는 연구기관 평가가 기관 발전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총 괄>

1. 조세심판 운영: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우선처리제도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인건비·경상비 및 정보화사업 등의 재원을 지원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관련 사업의 예산현액 합계 163억 800만원 중 155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6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2)]

[2023년도 조세심판원 운영 관련 세부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750	11,750	-	△48	11,702	11,120	-	502	11,610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65	665	-	56 △15	706	689	-	18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3,595	15	126 △119	3,617	3,477	-	140	1,342
조세심판 정보화 (정보화)	283	283	-	-	283	278	-	5	433
합계	16,293	16,293	15	±0	16,308	15,564	-	665	14,100

2)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나. 검토의견

첫째, 조세심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나, 매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심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조세심판의 법정 처리기한은 90일 이내이나, 매년 연례적으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건이 발생하고 있음.[3)]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도별 조세심판의 평균처리기간은 최단 160일·최장 234일 수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당해연도에 처리된 16,485건의 조세심판 중 약 50.0%에 해당하는 8,244건만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었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세심판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처리결과	
	전년 이월	당해연도 접수	합계	법정기한 내 처리 (A)	법정기한 초과	합계 (B)	기간 내 처리비율 (A/B)	평균 처리기간
2019	3,045	8,658	11,703	2,680	5,973	8,653	31.0	160
2020	3,050	12,795	15,845	1,048	11,234	12,282	8.5	178
2021	3,563	13,025	16,588	4,149	7,998	12,147	34.2	196
2022	4,441	10,373	14,814	656	10,909	11,565	5.7	234
2023	3,249	16,781	20,030	8,244	8,241	16,485	50.0	172

자료: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전년 대비 처리건수의 증가에도 평균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는 입장이나, 단축된 처리기간(172일) 역시 법정기한인 90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긴 기간이어서 향후에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다만, 같은 기간(2019-2023년) 처리대상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심판부 소속 서기관·사무관[4)]의 현원 1인당 처리대상 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이나 쟁점설명기일제도[5)] 합리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이하에서는 조세심판 관련 주요 직책을 역할에 따라 조세심판관·심판조사관 및 서기관·사무관으로 구분하였음. 조세심판관은 조사서·결정서 작성을 총괄하고 주·부심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심판조사관은 조사서·결정서 중간검토를, 심판부 소속 서기관·사무관은 조사서·결정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조세심판 관련 실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음.

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최근 5년간(2019-2023년) 직책별 1인당 조세심판 처리대상건수]

(단위: 건)

연도	처리대상 건수 (A)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심판부 소속 서기관·사무관	
		현원 (B)	1인당 건수 (A/B)	현원 (C)	1인당 건수 (A/C)	현원 (D)	1인당 건수 (A/D)
2019	11,703	6	1,951	13	900	58	202
2020	15,845	7	2,264	16	990	64	248
2021	16,588	8	2,074	16	1,037	62	268
2022	14,814	8	1,852	17	871	61	243
2023	20,030	8	2,504	18	1,113	60	334

주) 조세심판사건 1건당 조세심판관 1인·심판조사관 1인 및 서기관 또는 사무관 1인이 배정됨
자료: 국무조정실

둘째, 우선처리제도(fast-track)에 의해 특별히 조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건을 선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활용실적이 부진하고 법정기한 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원이 운용하는 우선처리제도는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신청에 의해 우선처리 대상 사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것임.[6)]

그런데 관련 처리건수가 최근 4년간(2020-2023년) 최대 29건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4년간 최대 0.3%에 그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체 처리사건 대비 우선처리 사건 비중]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체처리 사건(A)	12,282	12,147	11,565	16,485
우선처리 사건(B)	8	5	29	23
비율(B/A)	0.0	0.0	0.3	0.1

자료: 국무조정실

5) 쟁점설명기일제도는 청구 세액이 고액이거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통상 단일 차수로 의결하도록 개최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1차(쟁점설명기일)와 2차(추가심리 후 결정일)로 구분하여 쟁점설명 및 추가 심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6)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한다.

또한 우선처리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소요기간의 예측가능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우선처리제도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청구시 우선처리사건 신청의 경우				조사 중 우선처리사건 신청의 경우				합계	
	80일 이내		80일 초과		45일 이내		45일 초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3	37.5	5	62.5	-	-	-	-	8	100.0
2021	2	40.0	3	60.0	-	-	-	-	5	100.0
2022	14	48.3	14	48.3	1	3.4	-	-	29	100.0
2023	15	65.2	8	34.8	-	-	-	-	23	100.0

자료: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신청인이 우선처리사건의 심판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평균 처리기간이 최근 4년간 가장 길었던 2022년(234일)의 경우 활용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점, 제도운용의 실효성이 확실해지면 신청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선처리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협동연구의 취지에 맞는 성과인센티브 운용 필요

가. 개 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은 협동연구사업 중에서 연구기관이 기획·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함)가 선정·평가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연구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2023년에 추진된 20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의 예산현액 47억 3,600만원 중 43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8%)되고 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성과인센티브	
						예산 현액	집행액
중국종합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741	834	756	78	74	67
세계지역 전략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620	627	622	5	62	55
중국종합연구	산업연구원	179	379	305	74	21	17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125	143	137	6	13	13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90	114	99	-	19	18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80	230	210	-	38	38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30	180	173	-	29	28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80	241	203	-	38	38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50	150	129	21	15	15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9	120	116	4	14	13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80	95	86	9	16	8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성과인센티브	
						예산 현액	집행액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 방안: 발달장애청소년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76	84	79	-	8	8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Ⅱ)	육아정책 연구소	183	198	168	30	8	6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1	111	110	1	10	10
청년종합연구Ⅲ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90	325	310	15	20	1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89	108	104	4	26	22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국제물류 공급사슬관리 정책 연구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427	430	419	11	43	4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46	47	47	-	4.6	4.6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90	93	93	-	9	9
녹색경제 협동연구	한국환경 연구원	227	227	227	-	-	-
합계		**4,113**	**4,736**	**4,393**	**258**	**468**	**43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소관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과 연구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동연구사업은 연구성과 관리를 위해 연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성과인센티브를 책정하여 평가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위탁개발비를 제외한 순연구비의 5% 이내,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총연구비의 10% 이내에서 성과인센티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조사나 행사성 경비의 증가만으로도 성과인센티브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총연구비에서 협력기관이 아닌 용역업체 등에 지급되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성과인센티브를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연구비는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무관한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상관 없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증가되더라도 총연구비가 증가하여 책정가능한 성과인센티브의 한도액이 증가하게 됨.[8]

실제로 아래 표에서의 현황을 보면, 협력기관이 아닌 용역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총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9.4%까지 분포하고 있어,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무관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따라 성과인센티브의 상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총 연구비 (A)	협력기관 위탁연구개발비	협력기관 외 위탁연구개발비 (B)	비중 (B/A)
중국종합연구	741,000	355,000	0	0.0
세계지역 전략연구	620,000	260,000	0	0.0
중국종합연구	378,582	81,000	74,100	19.6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	142,682	70,000	0	0.0
평화통일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243,983	44,939	15,000	6.1
한국정치 콜로키움: 담론과 소통 시리즈	49,270	30,000	10,000	20.3
북한 식량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식량 교환 프로그램	160,000	35,000	5,000	3.1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90,000	33,000	0	0.0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2/2)	180,000	87,500	12,000	6.7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의3차년도)	130,000	23,787	14,000	10.8

7) 동 규정에 따르면,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위탁개발비를 제외한 순연구비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8) 이에 반해, 연구회가 기획·주관하는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순연구비’의 5% 이내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위탁연구개발비가 증가하더라도 책정가능한 성과인센티브의 규모에는 차이가 없음.

(단위: 천원, %)

사업명	총 연구비 (A)	협력기관 위탁연구개발비	협력기관 외 위탁연구개발비 (B)	비중 (B/A)
농촌과 청년: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의2차년도)	180,000	51,000	30,000	16.7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5의1차년도)	150,000	50,000	9,500	6.3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II)	100,000	36,000	3,000	3.0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198,000	70,000	8,000	4.0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연구	95,428	30,000	3,000	3.1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 방안(2023)	83,690	5,000	24,750	29.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III	119,571	6,000	69,500	58.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I	110,834	8,000	76,950	69.4
청년종합연구I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325,016	99,807	151,000	46.5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II	108,302	16,000	30,000	27.7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국제물류 공급사슬관리 정책 연구	430,471	53,000	198,000	46.0
첨단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VI)	47,450	17,100	0	0.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93,133	27,000	0	0.0
녹색경제협동연구	247,897	57,938	10,000	4.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위탁연구개발비에 협력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가 포함되므로, 총연구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협력기관이 늘어날수록 성과인센티브 지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협력기관 외 용역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위탁개발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성과인센티브 지급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협력기관의 참여 수준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총연구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모두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등에 지급되는 위탁연구개발비만 제외하는 등의 대안이 존재함.

따라서 연구회는 단순 조사 및 행사성 사업 등에 관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신규): 예비비의 부적정 사용

가. 개 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비비 4억 2,400만원이 배정되어 2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7.8%)되고,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	-	-	424	424	245	-	178	72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회의체는 2000년(1기)부터 2008년(4기)까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2.4. 시행) 시행으로 법정위원회로 격상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법」(2010.4.14. 시행)의 시행으로 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되었음.

2023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의해 국조실 소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9) 일반회계-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경제조정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출소요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되었는데, 향후 국무조정실은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경비로 정의되고 있음.[10] 따라서 지출소요의 예측불가능성이 예비비 사용을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음.

동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22년 1월 4일에 제정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출소요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가능하였음.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동 사업 지출소요를 2023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연중(23.3.22.) 예비비를 배정하여 추진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자금 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배정사유
일반 예비비	424	245	23.3.23.	-	17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설치 → 위원회 법정 업무 수행과 연례행사 추진 등을 위한 신규 예산소요 발생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전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른 차기 위원회 구성 보류 및 실무조직인 추진단 규모 미확정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미확정이 주된 사유라면 본예산 반영 이후에도 수시배정 등에 의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존재하였음.[11]

향후 국무조정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2024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회의체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10)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1)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집행상황 점검 및 일반수용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개 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8억 5,000만원 중 49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8%)되고, 8억 4,400만원은 불용, 4,500만원은 이월되었음.[12)]

[2023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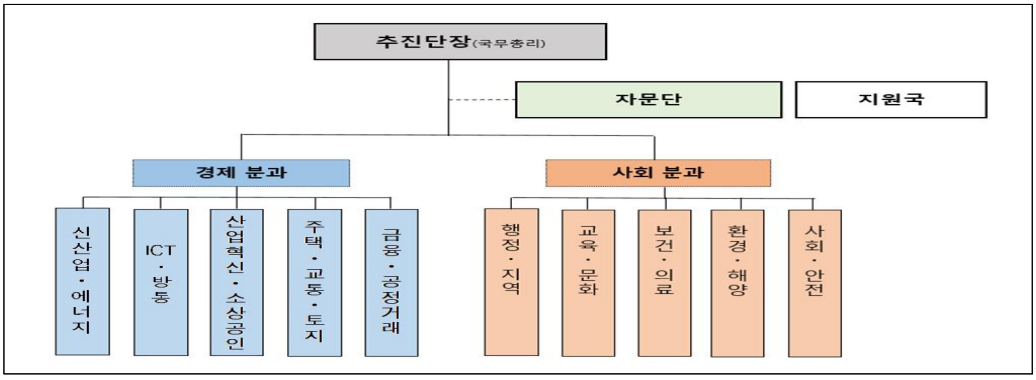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630	5,630	220	23	5,850	4,950	45	844	5,154
추진단 운영	4,486	4,486	-	23 △23	4,486	3,952	-	534	4,282
덩어리규제 발굴	402	402	171	-	573	410	45	117	402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385	-	-	385	196	-	189	312
추진단 홍보	358	358	49	-	407	402	-	5	158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6호, 2022.6.22. 제정·시행)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존속기한은 최소 만 3년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3)]

동 추진단은 추진단장, 자문단, 지원국 외 2개 분과 및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 전문위원은 전직공무원(90명) 및 경제단체·연구기관 소속 파견 인력(33명) 등으로 충원되고 있음.

12) 일반회계-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규제혁신추진단)

13)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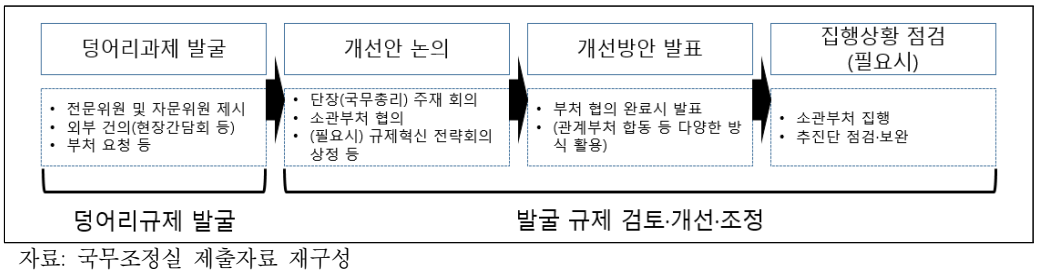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첫째, 추진단이 2023년 연말까지 발표한 118건의 세부 개선과제 중 102건(86.4%)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2022년에 발표된 34건의 세부 개선과제는 만 1년 이상 이행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집행상황의 적극적 점검이 필요함.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출범 이후 2023년 연말까지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으며, 19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개선과제의 합계는 118건임.

동 사업의 업무프로세스는 ① 덩어리 규제 발굴 → ② 개선안 논의 → ③ 개선방안 발표 → ④ 집행상황 점검(필요시) 등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단계에 해당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 및 ②~④단계에 해당하는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업무프로세스]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3년 연말 기준 118건의 세부 개선과제 중 집행상황이 미확인된 건수가 102건으로 86.4% 수준이고, 특히 2022년에 발표된 '인증규제 개선방안(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알뜰폰 활성화' 등 2개 개선과제에 속한 34개 세부 개선과제에 대

해서는 만 1년이 경과하도록 집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규제혁신추진단 개선과제 집행상황 점검 현황(23.12.31. 기준)]

(단위: 건)

발표시점	개선과제명	세부 개선과제				
		합계	확인			미확인
			이행완료	추진중	합계	
2022.12.21.	인증규제 개선방안(인증 유효기간 연장)	30	-	-	-	30
2022.12.22.	알뜰폰 활성화	4	-	-	-	4
2023.1.19.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7	-	-	-	7
2023.2.23.	건축행정 국민체감 불합리애로개선	4	-	-	-	4
2023.3.2.	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5	-	-	-	5
2023.3.8.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유연화	4	-	-	-	4
2023.4.17.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5	-	-	-	5
2023.5.2.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6	-	-	-	6
2023.5.15.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8	-	8	8	-
2023.6.30.	국민의 바다 접근·이용 규제혁신	2	-	2	2	-
2023.8.24.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4	-	-	-	4
2023.8.24.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2	-	-	-	2
2023.8.24.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3	-	-	-	3
2023.9.20.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7	4	-	4	3
2023.11.8.	그림자규제 혁파	7	2	-	2	5
2023.12.8.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5	-	-	-	5
2023.12.19.	패자부활 창업지원	10	-	-	-	10
2023.12.20.	골프장 규제완화	3	-	-	-	3
2023.12.23.	신의료 기술평가 제도 개선	2	-	-	-	2
합계		118	6	10	16	102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와 같이 발표한 사항으로서 소관부처 주관으로 자율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추진단 설치 2주년을 맞아 개선과제가 어느 정도 누적된 만큼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 준비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개선과제의 발표만으로는 집행시기 및 집행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고, 집행 이후 환류를 통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표 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집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추진단 출범 이후 만 1년이 경과한 시점(23.7.31.)에서 민간 전문위원 90명 중 15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인력운용이 불안정하여 인건비 일부가 불용되고 주요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 또한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인력운용을 안정화하고 더불어 관련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규제혁신추진단은 만 3년 기한 임시조직으로, 출범 이후 만 1년 경과시점(23.7.31.)에서 임용포기(2명) 및 중도 퇴직(13명) 등의 사유로 민간 전문위원 정원 90명 중 15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인력운용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3년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전문위원 결원 현황(파견인력·행정실무원 제외)]

(단위: 명)

기준일자	정원(A)	현원(B)	결원(A-B)	비고
22.8.1. (출범시)	90	88	2	민간전문가 채용이후 미계약(2명)
23.7.31. (출범 후 만 1년 경과시)	90	75	15	미계약(명) 외 퇴직 등(13명)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거쳐 결원 모두를 충원하였다는 입장이나, 그 결과 당초 계상되었던 상용임금 26억 3,500만원 중 3억 2,300만원이 불용되고, 주요 내역사업인 ‘덩어리 규제 발굴’ 및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등 2개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1.6%, 50.9%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2023년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추진단 운영	4,486	3,952	-	534	88.1
덩어리규제 발굴	573	410	45	117	71.6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196	-	189	50.9
추진단 홍보	407	402	-	5	98.8
합계	5,851	4,960	45	845	84.8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민간 전문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평균연령 66.7세)이고, 직전연도인 2022년 10월에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한 적이 있어 대면접촉을 수반하는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회의체 운영과 직결되는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이 같은 연도에 회의체를 운용하였던 국무조정실의 타 사업들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집행률 69.3%)이므로, 인력운

용을 안정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회의체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4)]

[2023년 국무조정실 회의체 운용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예산현액			
	총 사업비	일반수용비 (A)	집행액 (B)	일반수용비 집행률 (B/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40	42	42	100.0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04	65	65	100.0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운영	163	44	44	100.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414	113	107	94.7
청년정책총괄조정 및 지원	9,018	784	733	93.5
미세먼지기획단 운영	543	107	97	90.7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658	157	137	87.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531	857	669	78.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846	1,487	1,091	73.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850	758	525	69.3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운영	423.6	86.5	4.5	5.2

주) 집행률-총 사업비 순으로 정렬
자료: 국무조정실

14)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는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회의체가 미구성·미운영되었음.

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기여금 산출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사업은 OECD 선진국의 제도·경험을 개발도상국 공무원에게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29억 9,400만원 중 29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3년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2,994	2,994	-	-	2,994	2,966	-	28	3,410

동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및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OECD와 체결한 MOU를 근거로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9.)·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4.)·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7.) 및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9.) 등이 출범하였음. 이후 2007년에 4개 센터가 OECD 서울센터(2007.2.)로 통합되었고, 2008년 7월에 명칭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15) 일반회계-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7035-315)(국정운영실)

나. 검토의견

국무조정실은 동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OECD 기여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기여금 인상 요구가 반복되고, 경쟁정책센터의 OECD 기여금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기여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2023년 예산현액 29억 9,400만원 중 OECD 기여금 합계는 8억 3,400만원으로, 사회정책센터에 20만 유로(€200,000), 경쟁정책센터에 21만 8,184유로(€218,184), 조세정책센터에 7만 달러($70,000), 공공관리정책센터에 9만 8,000유로(€98,000) 등을 지급시점 기준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각각 지급되었음.

그 중 ① 경쟁정책센터 및 사회정책센터 기여금은 파리 OECD본부 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② 조세정책센터 및 공공관리정책본부 기여금은 해당 센터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각각 지급되고 있음.

[2023년 센터별 OECD 기여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집행내역	용도
OECD 기여금	**834**	**4개 센터 기여금 합산**	**센터별 운용**
사회정책센터	286	€200,000를 원화로 지급	파리OECD본부 직원 인건비 지급
경쟁정책센터	310	€218,184를 원화로 지급	파리OECD본부 직원 인건비 지급
조세정책센터	95	$70,000를 원화로 지급	사업비 충당
공공관리정책센터	143	€98,000를 원화로 지급	사업비 충당

자료: 국무조정실

OECD 기여금의 운용 근거는 양해각서 제8호제2항의 마호·바호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음. 그런데, 양해각서 제8조제2항 마호·바호는 각각 “직원 고용 관련 모든 비용”(마호), “주요 작업내용 관련 모든 비용”(바호)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OECD 입장에서는 기여금 규모의 인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제8조(당사자의 책임)
② 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제3조 상의 직원* 고용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매년 OECD에 제공
바. **OECD가 제공하는 주요 작업내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매년 OECD에 제공
*제3조(파리 OECD본부 직원)
① 센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OECD는 가용 자금 한도 내에서 **최소 두 명의 A4 직급 전문관**을 센터업무에 배정한다.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① 2008년 이래 예산안 편성시 4개 센터 중 경쟁정책센터를 제외한 조세정책센터·공공관리정책센터 및 사회정책센터 등 3개 센터에 대한 기여금 규모를 동결해왔고, ② 기여금 책정 근거를 센터 통합 이전 OECD와 4개 부처가 각각 체결했던 MOU에서 준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 2008.07.01. 조약 제1903호)

제11조(발효 및 존속기간)
② 이 양해각서는 **전문에서 언급된 4개 센터*와 관련된 이전 협정 또는 약정**을 **무효화하고 대체한다.**

*** 한국 국제조세교육센터(1997),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2003),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2005),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2005)**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양해각서 규정(제8조 등)을 근거로 OECD로부터 기여금 인상 요구가 반복되고 있고, 경쟁정책센터에 지급되는 기여금이 최근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인상되는 등 지급규모가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양해각서 제11조제2항에 의해 센터 통합 이전 4개 부처와 OECD가 체결한 MOU가 실효되었으므로, 구체적 산출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쟁정책센터 OECD 기여금 편성 및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편성 기준 금액(€ 기준)	실집행액	
		유로(€) 기준	원화 기준
2020	200,000	217,105	292
2021	200,000	222,249	299
2022	230,000	238,303	335
2023	240,000	218,184	310

자료: 국무조정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기여금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도록 하고, 양해각서의 추가 연장 예정일(2026년 7월 1일)에 앞서 OECD 기여금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국내여비: 여비의 사후적 전용 지양

가. 개 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국내 공무출장을 위한 일비·식비·숙박비 및 운임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억 2,000만원 중 11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3년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489	6,489	-	△78	6,411	5,719	-	692	6,365
여비	1,182	1,182	-	458	1,640	1,593	-	47	1,242
국내여비	995	995	-	225	1,220	1,176	-	44	1,055

국내여비는 당초 9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족분 2억 2,500만원을 전용(증)하여 1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연중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3.3.2.)에 따라 일비·식비 및 숙박비 상한액 등이 개정 전에 비해 인상되었음.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3.3.2.) 전/후 비교]

(단위: 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1호	20,000	실비	20,000	25,000	실비	25,000
제2호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기타 지역 50,000)	20,000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기타 지역 70,000)	25,000

16) 일반회계-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총무과)

나. 검토의견

국무조정실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출장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출장 이후에 예산을 전용(증)하여 사후적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전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국무조정실은 여비의 사후적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2023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당초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내여비 인상 등의 사유로 2억 2,500만원을 전용(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예산현액 12억 2,000만원 중 11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결산]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995	995	225	1,220	1,176	-	44	1,055

국내여비 전용(증)은 11월 29일과 1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고, 전용(증) 규모는 각각 9,500만원과 1억 3,000만원임.

[2023년 국내여비로 이·전용 현황]

일시	이·전용 사유 및 금액
2023.11.29.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증원 운영(23.1.~)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반 지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3.3.)으로 인한 일비·식비 인상 등의 사유로 **9,500만원 전용**
2023.12.26.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3.3.2)에 따른 여비 인상 및 국정운영실 집회·시위 문화 개선, 평가실 국정과제점검회의 및 평정회의, 각종 현안보고 등 출장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충당 등의 사유로 **1억 3,000만원 전용**

자료: 국무조정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전용을 통해 당초 계상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동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예산 전용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 간의 유사성·사안의 시급성 및 필수적 경비의 충당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17]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023년 여비의 전용(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에 앞서 이를 예정하고 출장부터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의 전용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3년의 경우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수행된 90건(부족분 652만 9,200원)의 출장 및 동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수행된 57건(부족분 572만 6,250원)의 출장은 사실상 여비의 전용(증)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기 전에 출장이 수행되고 있음.

[2023년 국내여비 예산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행한 출장 내역]

(단위: 원, 건)

기간	해당 시점 기준 예산현액	직전 시점 지출소요 누적주)	해당 기간 출장 건수	해당 기간 추가 지출소요
2023.11.21.~11.28.	995,000,000	997,591,385	90	6,529,200
2023.12.19.~12.25.	1,090,000,000	1,099,295,575	57	5,726,250

주 1) 마지막 출장일 기준
2) 1행은 2023년 11월 20일, 2행은 12월 18일 기준 국내여비 지출소요 누적액
자료: 국무조정실

이처럼 예산의 전용이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출장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여비의 정산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족분의 발생시점을 출장 전에 특정하기 어렵고, 출장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출장 이후에도 여비의 지급규모 및 지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18] 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지출목적 등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사후적 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잔여재원을 고려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출장을 수행하고 부족분을 전용에 의해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출장을 남발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내여비의 운용에 있어 사전에 출장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전용 등에 의해 부족분을 충당함에 있어서도 국내여비의 사후적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1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

가. 개 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사업을 통해 연구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현액 412억 4,100만원 중 365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6%)되고, 36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내내역사업인 **‘평가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소관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500만원 중 7억 5,500만원을 집행(집행률 85.3%)하고,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19]

내내역사업인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평가사업 결과에 의해 선정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20]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37,366	37,366	3,875	-	41,241	36,543	3,601	1,097	18,777
기관고유사업비	3,168	3,168	166	-	3,334	2,442	439	453	11,967
평가사업	885	885	-	-	885	755	130	-	885
연구기관 인센티브	882	882	-	-	882	882	-	-	882

평가사업을 통한 연구기관 평가는 2019년 이래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하 기준에 따라 S-A-B-C-D의 5개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19) 일반회계-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기획평가본부)

20) 일반회계-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기획평가본부)

[평가사업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의 경우 2개 평가분야와 9개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되었고, 연구분야 평균 점수는 88.77점으로 B등급, 경영분야 평균 점수는 87.37점으로 B등급으로 확인되었음.

[2023년 연구기관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균점수)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균점수)
연구 분야	1-1. 목표의 타당성	B (88.21)	경영 분야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B (87.04)
	1-2. 이행 노력	B (86.68)		2-2. 사회적 책임	C (82.14)
	1-3. 목표 달성도	S (98.11)		2-3. 예산운용 및 결산	A (90.77)
	1-4. 사업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B (85.86)		2-4.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B (89.17)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B (88.76)
	연구분야 종합	B (88.77)		경영분야 종합	B (87.3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나. 검토의견

첫째, 연구회는 평가사업 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균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연구기관들의 자체수입 규모 대비 인센티브가 과소하고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기관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수를 줄이거나,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상승폭이 큰 기관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 ‘연구기관 인센티브’ 사업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연구기관에 일정액의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지급 현황을 보면,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관은 평가대상 26개 기관들 중 최소 11개 기관(42.3%), 최대 16개 기관(61.5%)이며, 2023년 기준 1개 기관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경상비의 최대 규모는 1억 700만원 수준임.

[최근 4년간(2020-2023년)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주]	지급대상 기관	인센티브	평가결과
2020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93	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43	B
	16개 기관 (전체기관 중 61.5% 비중)		
2021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90	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40	B
	12개 기관 (전체기관 중 46.2% 비중)		
2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88	A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78	A
	11개 기관 (전체기관 중 42.3% 비중)		
2023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107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7	B
	11개 기관 (전체기관 중 42.3% 비중)		

주) 연구기관 인센티브 사업 수행 연도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런데 최근 연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평균 총 수입(385억 6,900만원) 및 평균 자체 수입(187억 1,600만원)에 비해 인센티브의 최대 금액(1억 700만원)이 과소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선정기관 수를 줄이더라도 1개 기관이 획득가능한 인센티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6개 소관연구기관 재정규모/인센티브 금액 비교 (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26개 소관 연구기관 평균			인센티브 최대규모
총 수입	자체 수입	경상비	
38,569	18,716	2,017	10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둘째, 최근 6년간(2018-2023년) 수행한 평가사업에서 26개 연구기관 중 최소 22개 연구기관(84.6% 비중)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가 중간화되고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으므로, 향후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개선을 위한 적정수준의 유인을 제공하는 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회가 매년 수행하는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수월성 증진 및 기관의 발전방향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년간(2018-2023년) 수행된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26개 연구기관 중 최소 22개 연구기관(84.6%)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고 있으며,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이나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결과의 중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6년간(2018~2023) 평가등급별 기관 수 현황]

(단위: 개, %)

평가등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S	-	-	-	-	-	-	-	-	-	-	-	-
A	3	11.5	4	15.4	8	30.8	11	42.3	5	19.2	6	23.1
B	19	73.1	19	73.1	18	69.2	15	57.7	18	69.2	18	69.2
C	4	15.4	3	11.5	-	-	-	-	3	11.5	2	7.7
D	-	-	-	-	-	-	-	-	-	-	-	-
합계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주) 평가사업 수행연도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한 최근 6년간(2018-2023년)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C등급 이하로 분류된 14건의 사례 중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3개 기관이 각각 두 차례씩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유인이 적정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최근 6년간(2018-2023년) 평가결과 중 하위등급(C,D등급)에 선정된 기관 현황]

구분	2018	2019	2022	2023
C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총 4개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총 3개 기관)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총 3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 2개 기관)
D	-	-	-	-

주) 2020년, 2021년 시행한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따라서 연구회는 평가지표체계의 변별력을 재검토하고, 일부 기관이 반복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환류 및 적정 수준의 유인제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160억 300만원(△55.9%) 감소한 914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9,400만원(△11.7%)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304	9,304	6,381	△2,923	9,709	9,709	3,674	△6,035	△2,707
기 금	218,877	218,877	97,184	△121,693	197,765	197,765	87,797	△109,968	△9,387
총수입	228,181	228,181	103,565	△124,616	207,474	207,474	91,471	△116,003	△12,094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12억 8,900만원(△0.7%) 감소한 6조 1,570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65억 4,000만원(6.1%)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654,418	5,652,767	5,574,202	△78,565	5,955,048	5,955,048	5,924,713	△30,335	350,511
기 금	236,599	236,599	226,319	△10,280	243,302	243,302	232,348	△10,954	6,029
총지출	5,891,017	5,889,366	5,800,521	△88,845	6,198,350	6,198,350	6,157,061	△41,289	356,54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7억 900만원으로 79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억 7,400억원이 수납(수납률 45.9%)되고 2억 7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으며, 41억 1,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573	9,573	-	9,573	7,814	3,498	207	4,1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	61	-	61	28	22	-	6
- 투자계정	61	61	-	61	28	22	-	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	75	-	75	154	154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5	75	-	75	154	154	-	-
합 계	9,709	9,709	-	9,709	7,996	3,674	207	4,115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853억 7,000만원으로, 이 중 6조 173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215억 1,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64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029,898	6,029,898	34,261	±90,355	3,410	6,067,569	6,005,574	21,516	40,47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531	15,531	-	-	-	15,531	9,520	-	6,011
- 투자계정	15,531	15,531	-	-	-	15,531	9,520	-	6,0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70	2,270	-	-	-	2,270	2,27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270	2,270	-	-	-	2,270	2,270	-	-
합 계	6,047,699	6,047,699	34,261	±90,355	3,410	6,085,370	6,017,364	21,516	46,49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7,903억 900만원으로 9,202억 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005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9%)되고, 11억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86억 400만원은 미수납됨.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보훈기금	651,547	651,547	584,546	564,847	1,100	18,600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138,762	138,762	335,658	335,655	-	4
합 계	790,309	790,309	920,204	900,502	1,100	18,604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7,903억 900만원으로, 이 중 9,005억 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3.9%)되고 109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보훈기금	651,547	651,547	-	651,547	564,847	-	10,616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138,762	138,762	-	138,762	335,655	-	359
합 계	790,309	790,309	-	790,309	900,502	-	10,97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보훈부 자산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한 2조 2,408억 1,4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251억 1,6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 1,015억 6,000만원이, 일반유형자산 210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9억 7,400만원 감소한 567억 8,900만원으로 유동부채 20억 9,0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억 3,500만원 증가한 2조 1,840억 2,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조 9,25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4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조 13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6억 7,4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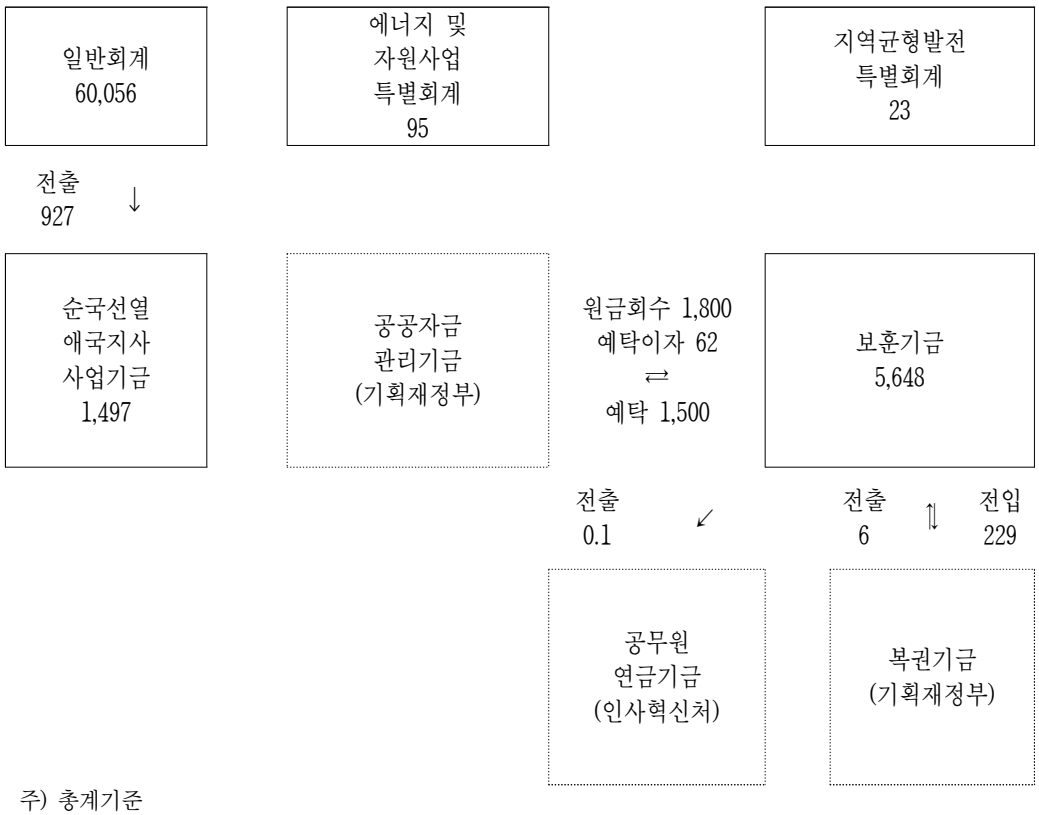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240,814	2,240,854	△40	△0.0
		유동자산	362,447	260,887	101,560	38.9
		투자자산	57,324	182,440	△125,116	△68.6
		일반유형자산	1,798,956	1,777,867	21,089	1.2
		무형자산	14,420	14,329	91	0.6
		기타비유동자산	7,667	5,331	2,336	43.8
	부 채		56,789	58,763	△1,974	△3.4
		유동부채	2,779	4,869	△2,090	△42.9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2,550	2,434	116	4.8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	-
	순자산		2,184,025	2,182,090	1,935	0.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925,223	5,602,735	322,488	5.8
	재정운영순원가		6,041,386	5,703,536	337,849	5.9
	재정운영결과		6,013,505	5,678,831	334,674	5.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를 강화하고,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알리며, 제대군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선양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총 83개 세부사업에서 보훈심사절차 개선, 보훈병원 의료시설 확충, 위탁병원 지정 확대, 국립묘지 조성·확충,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일부 국립호국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출규모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공무직 등 인건비의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건비가 예산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점검·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사업에서 지속적인 영업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일부 보훈병원에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의 여유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정지출구조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생활조정수당 중 생계지원금이 부적정한 추계방식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으므로, 추계방식을 조정하여 예산이 적정규모로 계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보조금 교부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여 교부금 전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립연천호국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그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사전계획 없이 실시하게 되어 사업비 대부분을 불용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초래되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총 괄>

1. 국립 영천·이천·산청·괴산 호국원: 인건비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가. 개 요

‘공무직 등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상용임금(110-03목), 복리후생비(210-12목) 및 고용부담금(320-19목)을 포함하는 것임.

‘국립영천호국원’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22억 1,000만원 중 2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고,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국립이천호국원’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13억 3,600만원 중 13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3)]

‘국립산청호국원’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17억 8,500만원 중 17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4)]

‘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 18억 3,900만원 중 18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5)]

---

2) 일반회계-국립영천호국원(3250-358)(국립영천호국원)

3) 일반회계-국립이천호국원(3250-360)(국립이천호국원)

4) 일반회계-국립산청호국원(3250-361)(국립산청호국원)

5) 일반회계-국립괴산호국원(3250-363)(국립괴산호국원)

[2023년도 국립 영천·이천·산청·괴산호국원 공무직 등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영천호국원	8,948	8,948	9,898	125	18,971	11,393	5,053	2,524	10,402
공무직 등 인건비	2,083	2,083	-	125	2,210	2,158	-	51	2,148
국립이천호국원	15,817	15,817	11,540	84	27,441	20,623	6,169	649	13,541
공무직 등 인건비	1,252	1,252	-	84	1,336	1,329	-	7	1,069
국립산청호국원	2,779	2,779	-	61	2,840	2,766	1	73	9,334
공무직 등 인건비	1,724	1,724	-	61	1,785	1,752	-	33	1,773
국립괴산호국원	9,732	9,732	1,583	77	11,392	9,723	1,590	80	7,604
공무직 등 인건비	1,762	1,762	-	77	1,839	1,829	-	11	1,819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초과근무 증가로 인건비가 초과집행되고 있는 일부 호국원들의 인력 운용 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공무직 인건비 중 상용임금(110-03목)은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국립영천·이천·산청 및 괴산호국원 등 4개 호국원에서 인건비에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립임실호국원·국립제주호국원 등 타 호국원 인건비로부터 총 3억 4,8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2023년 국립 영천·이천·산청·괴산호국원 공무직 등 인건비 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목-세목		세부사업	목-세목
내역 변경	국립임실호국원 (3250-358)	110-03	126	국립영천호국원 (3250-358)	110-03
내역 변경	국립임실호국원 (3250-359)	110-03	12	국립이천호국원 (3250-360)	110-03
내역 변경	국립제주호국원 (3250-367)	110-03	72		
내역 변경	국립제주호국원 (3250-367)	110-03	61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110-03
내역 변경	국립제주호국원 (3250-367)	110-03	77	국립괴산호국원 (3250-363)	110-03
합계			348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 재구성

인건비 초과지출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초과근무시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실제로 2023년 기준 인건비 초과지출(본예산 대비 집행률 100.0% 초과)이 발생한 영천・이천・산청・괴산 등 4개 호국원에서는 타 호국원 대비 1인당 초과근무 시수 및 초과근무수당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 국립묘지 공무직 인력 초과근무 현황]

(단위: %, 명, 시간, 만원)

구분	공무직 등 인건비 집행률주)	인원	초과근무 시수	연간 1인당 초과근무시수	연간 1인당 초과근무수당
국립이천호국원	108.1	29	7,892	272.1	537.6
국립괴산호국원	104.5	44	13,760	312.7	531.0
국립영천호국원	106.1	54	14,123	261.5	487.4
국립산청호국원	103.3	43	11,335	263.6	453.4
국립임실호국원	91.1	44	11,540	262.3	297.5
국립4.19민주묘지	96.7	9	1,709	189.9	195.9
국립3.15민주묘지	99.2	8	820	102.5	163.2
국립5.18민주묘지	95.3	23	1,968	85.6	147.0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90.6	7	422	60.3	100.1

주 1) 본예산 대비 집행률로 산정하였음
2) 국립제주호국원은 자료 미제출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며, 실무원, 의전단 등 일부 직종에서 초과근무 시수가 같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 초과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초과근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초과근무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운영내용이 유사한 시설들의 1인당 초과근무 평균 시수가 최소 60.3시간에서 최대 312.7시간까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초과지출이 발생한 4개 호국원의 경우 실무원 및 의전단 외에 다른 직종에서도 초과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초과근무 운용 현황을 점검하여 인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이천·괴산·영천·산청 호국원 직종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직종	본예산(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이천 호국원	**합계**	1,036	84	1,120	1,120	108.1
	실무원	577	11	588	588	101.9
	경비원	78	14	92	92	118.0
	운전원	58	6	64	64	110.3
	환경관리원	297	51	348	348	117.2
	고객안내원	26	2	28	28	107.7
괴산 호국원	**합계**	1,458	77	1,534	1,524	104.5
	실무원	462	20	482	482	104.3
	경비원	88	13	100	100	114.9
	운전원	29	4	33	33	113.8
	의전단	572	-	572	543	94.9
	환경관리원	308	40	348	366	118.8
영천 호국원	**합계**	1,725	126	1,851	1,831	106.1
	실무원	646	65	711	734	113.6
	경비원	138	18	156	156	113.0
	운전원	37	-	37	-	-
	의전단	553	-	553	547	98.9
	환경관리원	351	43	394	394	112.3
산청 호국원	**합계**	1,426	61	1,487	1,474	103.3
	실무원	450	14	464	457	101.5
	경비원	88	4	92	92	104.5
	운전원	33	3	36	35	106.0
	의전단	527	25	552	552	104.7
	환경관리원	328	15	343	338	103.0

자료: 국가보훈부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연착륙 방안의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복지시설 운영·주거환경 개선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등을 통한 의료사업·복지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공단에 일반회계·보훈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국가보훈부가 공단에 지원한 예산현액 7,505억 8,100만원 중 7,502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국가보훈부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코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합 계	701,223	700,766	-	49,815	750,581	750,264	-	54	680,134
일반회계 합계	694,681	694,681	-	49,815	744,496	744,186	-	47	672,358
보훈병원진료 (2150-365)	389,923	389,923	-	39,385	429,308	429,261	-	47	392,031
위탁병원진료 (2150-366)	267,426	267,426	-	7,946	275,372	275,372	-	-	256,315
보철구 지급[1] (2150-371)	5,997	5,997	-	-	5,997	5,997	-	-	5,845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2,365	2,365	-	2,284	4,649	4,649	-	-	2,365
고엽제환자검진[2] (2155-368)	2,664	2,664	-	200	2,864	2,864	-	-	2,664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2156-380)	2,343	2,343	-	-	2,343	2,343	-	-	3,223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156-382)	3,470	3,470	-	-	3,470	3,470	-	-	3,211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2156-383)	11,985	11,985	-	-	11,985	11,985	-	-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코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2156-385)	1,922	1,922	-	-	1,922	1,922	-	-	-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 (2156-392)	2,515	2,515	-	-	2,515	2,515	-	-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2156-393)	350	350	-	-	350	87	-	-	1,130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2156-397)	-	-	-	-	-	-	-	-	478
보훈정신계승발전[3] (2156-401)	3,721	3,721	-	-	3,721	3,721	-	-	5,096
보훈기금 합계	6,542	6,085	-	-	6,085	6,078	-	7	7,776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2160-439)	1,659	1,659	-	-	1,659	1,659	-	-	3,294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4] (2161-444)	4,883	4,426	-		4,426	4,419	-	7	4,482

주 1) 보훈부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보철구 담당자 교육' 관련 결산내역(예산액 600만원) 제외
2) 보훈부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검진워크숍 간담회' 관련 결산내역(예산액 300만원) 제외
3) 보훈부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보훈정신계승 연수' 관련 결산내역(예산액 1,400만원) 제외
4) 보훈부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관련 결산내역(계획액 35억 3,400만원) 제외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 검토의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영업비용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특히 인천보훈병원 등 보훈병원의 영업손실 규모가 상당하여 2023년 기준 509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여유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정지출구조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의 손익현황을 보면, 2023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509억원으로 같은 기간 최대 규모임. 또한 같은 기간(2019-2023) 매년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여 최소 196억원(2019년)에서 최대 1,177억원(2022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A)=(B-C)	△196	△703	△863	△1,177	△764
영업수익(B)	10,528	10,302	10,719	10,603	11,760
영업비용(C)	10,724	11,005	11,582	11,780	12,524
영업외이익(D)=(E-F)	205	305	741	777	255
영업외수익(E)	245	351	786	821	320
영업외비용(F)	40	46	45	44	65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G)=(A+D)	9	△398	△122	△400	△509
법인세 등(H)	3	△115	12	20	-
당기순이익(I)=(G-H)	**6**	**△283**	**△110**	**△420**	**△509**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의 영업수익은 의료사업·복지사업·장례사업·연구사업·기타 보훈복지시설 운영 및 보장구 판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실제로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91.9%~93.1% 수준으로 나타났음.

2023년 의료사업 수익은 1조 1,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억원(10.9%) 증가하였음. 이 중 국비 환자 진료수익이 전년 대비 852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환자 진료수익도 전년 대비 177억원 증가하여, 사실상 보훈병원 등을 통한 진료수익 증가가 의료사업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21-202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 유형별 영업수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영업수익 합계(A+B+C+D+E)	**10,719**	**100.0**	**10,603**	**100.0**	**11,760**	**100.0**
의료사업 수익(A)	9,979	93.1	9,778	92.2	10,810	91.9
국비환자 진료수익	7,039	65.7	6,959	65.6	7,811	66.4
일반환자 진료수익	2,918	27.2	2,797	26.4	2,974	25.3
위탁병원 관리수익[1)]	22	0.2	22	0.2	24	0.2
복지사업 수익(B)[2)]	597	5.6	645	6.1	759	6.5
장례사업 수익(C)	46	0.4	84	0.8	94	0.8
연구수익(D)	10	0.1	11	0.1	12	0.1
보장구 판매수익(E)	87	0.8	85	0.8	86	0.7

주 1) 위탁병원관리단 운영 목적 정부 지원금에 해당함
2) 보훈요양원 용역수익 외 복권기금・보훈기금 전입금 포함, 기타 보훈복지시설(보훈원・보훈휴양원・보훈재활체육센터・보훈교육연구원 및 주거복지사업) 수익 전체 포함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공단의 영업비용은 의료사업 비용・복지사업 비용·장례사업비・연구비・보훈복지사업비・보장구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료사업 비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실제로 의료사업 비용이 영업비용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90.1%~90.6% 수준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3년 기준 영업비용 합계가 전년 대비 745억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의료사업 비용의 증가분이 690억원(92.6% 비중)이어서, 사실상 의료사업 비용 증가가 영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3년간(2021-202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 유형별 영업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영업비용 합계(A+B+C+D+E+F)	**11,582**	**100**	**11,779**	**100**	**12,524**	**100**
의료사업 비용(A)	10,499	90.6	10,609	90.1	11,299	90.2
재료비	1,658	14.3	1,639	13.9	1,876	15.0
인건비	4,030	34.8	4,098	34.8	4,275	34.1
위탁진료비	3,394	29.3	3,390	28.8	3,652	29.2
기타 경비	1,417	12.2	1,482	12.6	1,497	11.9
복지사업 비용(B)[주)]	706	6.1	788	6.7	831	6.7
장례사업비(C)	46	0.4	52	0.4	52	0.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연구비(D)	43	0.4	42	0.4	45	0.4
보장구 제조원가(E)	90	0.8	86	0.7	89	0.7
일반관리비(F)	198	1.7	202	1.7	207	1.6

주) 보훈요양원·기타 보훈복지시설(보훈원·휴양원·연구원 등) 전체 운영비용 및 보훈단체 지원금 등 포함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을 종합하면, 공단의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이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2022년 4월까지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동 기간 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인해 저하된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2023년부터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 사실상 중단[6]되면서 영업손실이 가중되었다는 입장임.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3개년(2017~2019년)의 병상가동률은 87.7%~90.8% 수준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4개년(2020~2023년) 간 병상가동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연도별 6개 보훈병원 병상가동률 현황(2017-2023년)]

(단위: %)

연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간 병상가동률	90.8	89.9	87.7	78.0	80.7	70.2	78.6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한 2024년 1월 기준 병상가동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14.2%p 높게 나타나는 등 영업수익의 주요 지표인 병상가동률이 호전되고 있었으나 전공의 사직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 전년 동월 대비 월별 병상가동률 현황]

(단위: %, %p)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4년(A)	85.2	78.7	74.5	73.3	75.0	79.7
2023년(B)	71.0	76.4	76.8	77.6	77.7	81.2
차이(A-B)	14.2	2.3	△2.3	△4.3	△2.7	△1.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코로나19로 인한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2020년 92억원·2021년 525억원·2022년 439억원·2023년 41억원

그러나 의료사업 비용 중 재료비 및 인건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원가상승 및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광주·대구 및 인천 보훈병원 등 일부 보훈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훈병원 병상가동률·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앙	영업이익	13,128	△6,096	△19,142	△25,401	△10,034
	병상가동률	91.5	76.6	74.8	66.4	74.6
부산	영업이익	517	△2,805	△9,010	△8,478	△5,001
	병상가동률	89.7	84.3	85.0	79.3	84.1
광주	영업이익	△1,792	△6,939	△6,763	△17,976	△6,957
	병상가동률	87.3	79.4	89.2	68.5	83.8
대구	영업이익	△2,137	△9,621	△5,467	△3,967	△7,007
	병상가동률	85.1	77.6	83.5	80.8	81.5
대전	영업이익	3,014	△3,128	△4,648	△7,796	△4,497
	병상가동률	87.2	81.4	85.2	69.3	81.5
인천	영업이익	△8,622	△9,188	△8,971	△15,092	△11,304
	병상가동률	51.3	55.5	65.4	43.5	61.6
6개 보훈병원 합계		**4,108**	**△37,777**	**△54,001**	**△78,710**	**△44,800**
		87.7	**78.0**	**80.7**	**70.2**	**78.6**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반면, 같은 기간(2019-2023년) 진료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는 진료보상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 않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진료보상금(A)	669,677	616,545	631,840	642,464	715,401
진료보상금 外 정부지원금(B)	**93,028**	**139,271**	**144,272**	**107,565**	**108,269**
세출예산	18,183	39,386	51,017	19,120	34,034
복권기금	47,080	68,808	58,949	67,580	60,573
보훈기금	27,765	31,077	34,306	20,865	13,662
합계(A+B)	762,705	755,816	776,112	750,029	823,670

주) 해당 연도 예산현액 기준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단의 사업수행 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손실 누적이 우려되고, 정부의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와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공단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특성화 등에 의해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생계지원금: 연례적 과다계상

가. 개 요

‘생계지원금’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6억 9,400만원 중 42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2.8%)되고 24억 9,000만원이 불용됨.[7)]

[2023년도 생계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활조정수당	55,899	55,899	-	±1,430	55,899	53,404	-	2,495	89,526
생계지원금	8,124	8,124	-	△1,430	6,694	4,204	-	2,490	11,958

생계지원금은 2022년 2월에 신설된 것으로, 2022년 사업에서 생계지원금은 ①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자 1명 또는 ②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음.

2023년 사업부터는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미적용하도록 하였고, 2024년 사업에서는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미적용하도록 하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적으로 미적용하도록 하고 있음.[8)]

7) 일반회계-생활조정수당(1133-302)(보상정책국)

8) 1~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함.

나. 검토의견

생계지원금은 지급대상에 고령자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인원의 자연적인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2022년과 2023년 모두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고, 2024년 예산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례적 과다계상이 우려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생계지원금 예산이 매년 과다계상되어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당초 예산액 81억 2,400만원 중 14억 3,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감)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2.8%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2022년·2023년 생계지원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2022	6,874	-	6,874	3,851	56.0	56.0
2023	8,124	△1,430	6,694	4,204	51.7	62.8

자료: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이 2년 연속 과다계상된 것은 지원대상 다수가 고령임에도 지급가능인원 추계시 사망 등 예측가능한 감소요인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에 따른 추계인원을 전년도 추계인원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추계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또한 2024년 예산규모를 산출하면서도 실제 지급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추계하고 있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2022-2024년) 생계지원금 산출내역]

(단위: 명)

연도	추계된 지급인원	실제 지급인원	산출근거
2022	5,728	3,490	2020년 3월 기준 지급대상별 80세 이상 고령자 수에 기초수급자비율 곱하여 산정
2023	6,670	3,505	**2022년 추계인원 5,728명에**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인원(1,042명) 더하여 산정
2024	9,965	-	**2023년 추계인원 6,670명에**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인원(3,195명) 더하여 산정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 관계로 추계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나, 현재의 추계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과다계상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추계방식을 변경하여 연례적 과다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지방보훈회관 건립: 실집행 부진 및 이월 규모 과다

가. 개 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지자체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재원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3억 4,400만원 중 29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4%)되고, 3억 5,500만원이 불용됨.[9)]

[2023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방보훈회관 건립	3,344	3,344	-	-	3,344	2,989	-	355	3,750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비로 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데, 광역시·도는 총사업비의 50%(최대 15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시·군·구는 30%(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임.

9) 일반회계-지방보훈회관 건립(1238-231)(보훈단체협력담당관)

나. 검토의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시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국회 등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임.[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연례적 실집행 부진을 사유로 예산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예산이 2022년 대비 7억 3,900만원(28.4%) 증액되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사업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250	1,955	2,605	3,344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3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0.7% 수준으로 최근 4년(2020-2023) 중 가장 저조하였으며, 실집행단계의 이월액도 2022년 15억 1,600만원에 비해 7억 6,400만원(50.4%) 증가한 22억 8,000만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국가보훈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등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2020	2,250	2,000	2,000	1,234	3,234	1,670	51.6	1,564
2021	1,955	1,955	1,955	1,564	3,519	2,604	73.9	915
2022	2,605	2,250	2,250	915	3,165	1,649	52.1	1,516
2023	3,344	2,989	2,989	1,516	4,860	1,980	40.7	2,280

자료: 국가보훈부

2023회계연도에 추진된 13개 지방보훈회관 사업 중 ① 제주도·함평군 및 성주군 사업은 2023년 종료예정이었으나 실집행률이 각각 58.1%·49.4% 및 34.0% 수준이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② 부산 서구 및 홍성군 사업은 중도에 취소되었으며, ③ 속초시·대구 동구·진천군 및 김포시 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10) 2021회계연도 예정처 결산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2023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지역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불용	이월	특이사항
보령시	-	279	279	100	-	-	
제주도	750	1,498	870	58.1	-	628	사업 지연
함평군	250	494	244	49.4	-	250	사업 지연
성주군	250	250	85	34	-	165	사업 지연
부산 서구	-	**495**	-	-	**250**	-	**사업 취소**
홍성군	-	**105**	-	-	**105**	-	**사업 취소**
속초시	250	**250**	-	-	-	**250**	**전액 교부·이월**
대구 동구	250	**250**	-	-	-	**250**	**전액 교부·이월**
강진군	239	239	2	0.8	-	237	사업 지연
안동시	250	250	250	100	-	-	
용인시	250	250	250	100	-	-	
진천군	250	**250**	-	-	-	**250**	**전액 교부·이월**
김포시	250	**250**	-	-	-	**250**	**전액 교부·이월**
합계	2,989	4,860	1,980	40.7	355	2,280	

주) 굵은 글씨 및 음영처리는 사업 취소 또는 보조금 전액 이월 사례임.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시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보훈병원 진료: 예산 추계시 추세의 적정 반영 필요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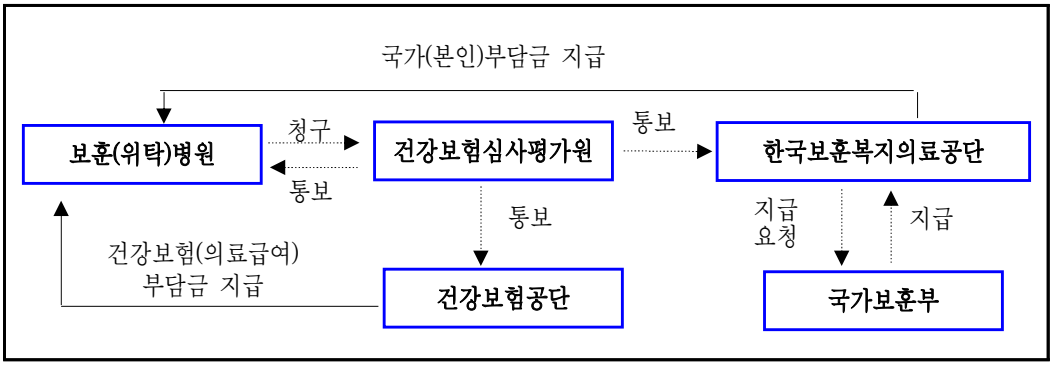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93억 800만원 중 4,292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3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병원 진료	389,923	389,923	-	39,385	429,308	429,261	-	47	392,031

[국가보훈대상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등 지원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11) 일반회계-보훈병원 진료(2150-365)(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실적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를 반영하는 안 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전용 및 내역변경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내역변경(증)에 의해 조정된 금액이 393억 8,500만원이어서 동 기간 중 최대 규모임.

[최근 4년간(2020-2023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2020	370,535주)	8,483	379,018	379,018
2021	385,503	9,508	395,011	395,011
2022	385,475	△1,408	384,067	383,634
2023	389,923	39,385	429,308	429,261

주) 2020년 예산액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동 사업 2023년도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지원인원은 실제 인원보다 과다 추계(243,732명)되었으나, 실적단가는 실제 단가 대비 과소추계(△15,880원)되었음.

[2023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계획/집행실적 비교]

(단위: 명, 원)

2023년도 예산계획(A)		2023년도 집행실적(B)		추계오차 (A-B)	
예상지원인원	예상실적단가	지원인원	실적단가	지원인원	실적단가
4,169,499	93,244	3,925,767	109,124	243,732	△15,880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3년 부족분 발생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감소하였던 내원이 급증하였고, 지원대상의 고령화로 인하여 실적단가(진료인원 1인당 지원금액)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4년간(2020-2023년)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보면, 진료인원이나 지원금액의 추세는 변동이 있으나 실적단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단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추세보다 직전시점의 단가를 추계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2020-2023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원)

연도	진료인원 (A)	지원금액 (B)	실적단가 (B/A)
2020	4,025,549	378,232	93,958
2021	4,008,853	394,265	98,349
2022	3,738,485	382,915	102,425
2023	3,925,767	428,394	109,124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 재구성

실제로 직전연도인 2021년의 실적단가인 98,349원을 반영하였다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시점인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2019-2021) 추세가액인 93,244원을 반영하였을 경우에 비해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였음.

또한 지원대상자 고령화 및 의료비 단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실적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중증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일수록 위탁병원에 비해 진료전문성이 높은 보훈병원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실적단가는 향후에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편성 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 반영 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6.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정절차 적기 이행 필요

가. 개 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경기·강원권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 지역에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3억 3,400만원 중 37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2.7%)되고, 12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묘지 조성	16,687	16,687	-	-	16,687	3,984	312	12,391	12,452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16,334	16,334	-	-	16,334	3,702	256	12,376	3,797

동 사업은 2019년 1월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되었고, 2019년 등록 당시 총사업비는 983억 1,100만원이었으나 1,019억 6,000만원으로 한 차례 증액조정되었음.

12) 일반회계-국립묘지조성(3250-364)(보훈예우국)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판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배정으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다가, 2023년에야 재정당국 요청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구상·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13)]

이는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규모·기간 등의 조정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시기별 주요 추진경과]

시기	주요 사업추진경과
2018.10.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상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제출
2018.12.	예비타당성 면제 보류 판정(사유: 사업계획 구체성 미흡)
2019.1.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신규등록(979억 9,200만원)
2019.12.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0.11.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국가보훈부-경기도-연천군) 체결
2021.11.	계획설계 완료
2022.6.	설계보상비·건설보상비 부족분 발생 사유로 증액 조정(983억원 → 1,020억원)
2023.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행(23.4.~23.11.)
2023.1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행 완료 및 총사업비 증액 조정(1,020억원 → 1,214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동 사업은 당초 등록된 총사업비가 979억 9,200만원 수준이어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3년에야 재정당국 요청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14)] 안장수요 급증 등으로 사

13)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① 사업구상 - ② 예비타당성조사 - ③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④ 기본설계 - ⑤ 실시설계 - ⑥ 발주 및 계약 - ⑦ 시공 등 총 7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이행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사업규모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임.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법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자 하는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정절차를 미이행한 채 추진되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실시(23.4.~23.11.)되면서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이 크게 지연되었음. 향후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토지보상 완료 및 연내 공사 추진을 예정하여 163억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재정당국 요청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23.4.~23.11.)하게 되면서 건설보상비(410-00목)를 제외한 공사비(420-03목) 등 관련 예산 12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본예산	전기이월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차기이월	불용액	본예산
합계	**16,334**	**-**	**-**	**16,334**	**3,702**	**256**	**12,376**	**3,797**
건설보상비(410-00)	3,686	-	-	3,686	3,686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743	-	-	743	-	47	696	-
공사비(420-03)	11,232	-	-	11,232	-	118	11,114	3,611
감리비(420-04)	566	-	-	566	-	-	566	115
시설부대비(420-05)	107	-	-	107	16	91	-	71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단계별 법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데 있으므로, 향후 국가보훈부는 법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7.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일반용역비 부적정 집행

가. 개 요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일반국민 대상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도구와 교육용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4억 3,000만원 중 33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3년도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정신 계승발전	17,271	17,271	-	-	17,271	16,695	-	576	15,407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3,430	3,430	-	-	3,430	3,376	-	54	2,246

15) 일반회계-보훈정신 계승발전(3145-401)(보훈문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서만을 근거로 수탁기관을 경쟁 없이 특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반경쟁 원칙의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청주교대)과의 사업도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동 사업 일반용역비(210-14목)를 재원으로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3년도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내역사업 계약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2023년도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	30	30	서울교대	23.03.~23.11.	수의계약
2023년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용역	30	30	대구교대	23.03.~23.11.	수의계약
2023년 보훈문화교육 협력사업 대행용역	20	20	공주교대	23.03.~23.11.	수의계약
2023년 보훈문화교육 협력사업 대행용역 계약	20	20	청주교대	23.06.~23.11.	수의계약
2023년도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문화교육 수업 경진 대회	20	20	부산교대	23.03.~23.11.	수의계약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용역	20	20	광주교대	23.03.~23.11.	수의계약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6건의 과제 중 서울교대·대구교대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2건의 과제는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한 근거 유무가 문제되고 있음.[16)]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청과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17)]에 의해 과제를 추진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18]에 규정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외 조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고, 수탁기관 중 청주교대는 지방보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업무협약만으로는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사업에서는 국가보훈부가 상기 2건의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계약 체결시 관계 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일부를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는 일반용역비(210-14목)로 예산을 계상하여 발주된 15억 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14억 4,500만원 및 조달수수료 1,300만원이 지출되어, 9,2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내역사업 낙찰차액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A)	계약금액 (B)	조달 수수료 (C)	낙찰차액 (A-B-C)
보훈문화교육수어안 개발공모 위탁사업	200	196	2	2
교과 연계 실감형 보훈 교재 개발 사업	200	187	2	11
2023년 보훈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용역	150	142	1	7
인터랙티브 체험형 보훈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000	920	8	72
합계	**1,550**	**1,445**	**13**	**92**

자료: 국가보훈부

17) **서울청-서울교대, 대전청-공주교대, 대구청-대구교대, 광주청-광주교대, 부산청-부산교대** 등 5개 지방보훈청-지역교육대학교 간 체결된 5건의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뜻함.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시 발생하는 추가소요에만 사용할 수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62-163쪽

1-12. 일반용역비(210-14목)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9,200만원 중 5,500만원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2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하였음.

[낙찰차액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집행액
3·1절 계기 참여형 웹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52	52	52
3·1절 계기 참여형 웹콘텐츠 이벤트 진행	3	3	3
합계	**55**	**55**	**55**

자료: 국가보훈부

향후 국가보훈부는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8. 제대군인 의료지원: 형식적 추계 관행의 시정 필요

가. 개 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재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6억 4,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3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	2,284	4,649	4,649	-	-	2,365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소계상되어 부족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사실상 타 사업 예산에 의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 현황(2018-2023)]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365	5,316	2,951	2,951
2019	2,365	3,269	904	904
2020	2,365	3,275	910	910
2021	2,365	3,649	1,284	1,284
2022	2,365	3,773	1,408	1,408
2023	2,365	4,649	2,284	2,284

자료: 국가보훈부

19) 일반회계-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복지증진국)

최근 4년간(2020-2023년)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매년 실적단가의 반영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총액을 동일한 금액(23억 6,50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예산규모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산출내역
2020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299 - 2018년 실적단가에 최근 3년 진료단가 평균증감율 반영 (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7.3%만 반영)
2021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0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2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3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2021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53% 수준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국회가 매년 같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2019·2020·2021 및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동사업 예산추계의 부정확성을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국가보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을 조속히 수행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9. 정전70주년계기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

가. 개 요

‘정전70주년계기사업’ 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참전국 정부관계자 및 참전용사 등을 초청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6억 1,400만원 중 62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3년도 정전 70주년 계기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13,764	13,764	38	△643	13,159	11,910	-	1,249	-
정전70주년 계기사업	7,257	7,257	-	△643	6,614	6,299	-	315	-

동 사업 추진단은 2022년 9월 제정된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39호, 2022.9.30. 제정)을 근거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음.

20) 일반회계-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제대군인국)

나. 검토의견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보훈부는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추진단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54억 4,400만원에 발주하였고 (주)○○기획과 49억 8,1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4억 6,3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계약명	발주금액 (A)	계약금액 (B)	낙찰차액 (A-B)
일반용역비(210-14목)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5,444	4,981	463

자료: 국가보훈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발생한 추가소요에만 사용할 수 있음.[21)]

그런데 동 사업의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023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연계 정전70주년 사전 붐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의 부적정한 사용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낙찰차액 집행 현황]

집행 내용	집행액
불용 처리	3억 1,500만원
2023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연계 정전70주년 사전 붐업	1억 2,100만원
조달수수료	2,700만원
합계	**4억 6,3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12. 일반용역비(210-14목)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집행

가. 개 요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사업은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대표 현충시설 기념관 인물들을 AI 디지털휴먼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 8,000만원 중 18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61.1%)되고, 11억 9,900만원은 이월되었음.[22)]

[2023년도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현충시설관리	7,170	7,170	-	-	7,170	5,902	1,199	69	4,916
현충시설 AI 디지털 휴먼	3,000	3,000	-	80	3,080	1,881	1,199	-	-

동 내역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어 지속 추진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 및 타 내역사업 예산 8,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향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시행 도중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하 2건의 계약을 총액 29억 4,400만원에 발주하였고, 26억 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3억 1,4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 집행잔액

22) 일반회계-현충시설관리(3146-406)(보훈문화정책관)

1,600만원 및 세목조정된 8,000만원을 활용하여 총액 4억 1,000만원 규모의 국가자원정보관리원을 통한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HW 구입’ 계약을 추진하였음.

[2023년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내역사업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집행액	이월액
보훈인물 AI 기반 디지털 휴먼 콘텐츠 플랫폼 구축	2,458	1,721	737
보훈인물 AI 기반 디지털 휴먼 콘텐츠 플랫폼 구축 감리	172	120	52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	40	40	-
보훈인물 AI 디지털휴먼 HW 구입 (낙찰차액 등 사용)	410	-	410
합계	**3,080**	**1,881**	**1,199**

자료: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지침 역시 정보화 예산의 이·전용, 낙찰차액의 활용 등을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23] 그런데 동 사업에서 낙찰차액을 재원 일부로 하여 추진한 ‘보훈인물 AI 디지털휴먼 HW 구입’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부는 사업내용이 정보화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낙찰차액 관련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휴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모델 등 개발내용을 플랫폼화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 사업을 연중 내용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국회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누락이 지적되었다는 점, 변경된 사업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임.

향후 국가보훈부는 사전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3) 2023년 집행지침상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①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또는 ②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보훈기금】

<지 출>

11.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지연 우려

가. 개 요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전국 각지에 보훈요양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68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4]

[2023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요양원 건립	6,839	6,839	-	-	6,839	6,839	-	-	3,365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2,339	2,339	-	-	2,339	2,339	-	-	3,018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4,500	4,500	-	-	4,500	4,500	-	-	347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법정민간대행(320-08목) 사업으로, 2023년에는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이하 ‘수원 증축’이라고 함)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이하 ‘충북 건립’이라고 함) 등 2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면적	병상 수
수원 증축	2022-2025	23,206	5,847	100
충북 건립	2023-2026	42,747	7,000	100

자료: 국가보훈부

24) 보훈기금-보훈요양원 건립(2161-443)(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가 초과요양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보훈요양원 건립’ 등의 내역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일정관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전 사업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초과 요양수요 해소 차원에서 수원보훈요양원을 증축하고, 충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 연말(12.31.) 기준 전국 보훈요양원 입소병상 합계가 1,628병상이고, 입소율도 평균 91.8% 수준으로 양호함에도 입소대기자 수가 1,480명에 달하는 등 초과요양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보훈요양원의 신속한 증축·건립이 요구되는 실정임.

[보훈요양원 입소 및 입소대기 현황(2023.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입소병상(A)	입소현황(B)	입소율(B/A)	입소대기자 수		
				보훈대상자	일반인	합계
수원	222	211	95.0	368	171	539
광주	200	184	92.0	5	9	14
김해	200	194	97.0	10	31	41
대구	200	178	89.0	17	18	35
대전	200	190	95.0	51	45	96
남양주	206	195	94.7	394	169	563
원주	200	190	95.0	53	91	144
전주	200	153	76.5	16	32	48
합계	**1,628**	**1,495**	**91.8**	**914**	**566**	**1,480**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수원 증축 내역사업의 2023년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6% 수준이며, 충북 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이 전무(실집행률 0.0%)하였음.

[2023년 보훈요양원 건립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수원 증축	2,829	583	20.6	2,246
충북 건립	4,500	-	0.0	4,500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수원 증축 사업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충북권 건립 사업의 경우 부지선정(2023.11. 완료) 과정에서 사업기간 대부분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개)

시기	주요 경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병상 수
2021.5.	복권기금 심의 거쳐 총 사업비 결정	24,464	100
2021.9.	기획재정부 조정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	19,665	80
2022.5.	축소된 예산 반영 위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19,665	80
2022.10.	재검토 거쳐 사업계획 확정	19,665	80
2023.1.	조달청 사업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를 증액 반영하여 총사업비 등록	23,068	100
2023.3.	설계비 증액소요 1억 9,600만원 (8억 1,100만원 → 10억 700만원) 반영하여 예산 증액	23,206	100
2023.8.	설계 착수 (계약기간: ′ 23.8.30.~′ 24.7.24.)	23,206	100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수원 증축 사업의 경우 입소대기자 수(539명)가 입소병상 수(222병상)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요양수요가 과밀한 지역임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규모(100병상)를 축소(80병상)하였다가 사실상 원점(100병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중 약 1년 3개월이 경과하였고, 충북 건립 사업의 경우 부지선정이 2023년 11월에야 완료되면서 사업기간이 당초 대비 2년 연장(2023~2026년 → 2023~2028년)될 예정이어서 보다 면밀한 일정관리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343억 3,500만원(31.8%)이 많은 5,560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6억 3,800만원(△17.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1,433	391,433	673,669	282,236	421,696	421,696	556,031	134,335	△117,638
총수입	391,433	391,433	673,669	282,236	421,696	421,696	556,031	134,335	△117,638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0.8%)이 적은 1,583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7,900만원(2.2%)이 증가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7,526	157,025	154,841	△2,184	159,603	159,603	158,320	△1,283	3,479
총지출	157,526	157,025	154,841	△2,184	159,603	159,603	158,320	△1,283	3,479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16억 9,600만원으로 8,538억 8,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560억 3,100만원이 수납(수납률 65.1%)되었고, 3억 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975억 5,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1,696	421,696	-	421,696	853,886	556,031	302	297,554
합 계	421,696	421,696	-	421,696	853,886	556,031	302	297,554

주) 총계 기준

한편,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18억 3,600만원으로, 이 중 1,583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18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3,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59,603	159,603	1,963	±1,622	270	161,836	158,320	1,880	1,636
합 계	159,603	159,603	1,963	±1,622	270	161,836	158,320	1,880	1,636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702억 2,100만원이 감소한 1,811억 8,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713억 5,400만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69억 5,600만원 증가한 278억 8,9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278억 8,9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40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178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5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1,184	451,405	△270,221	△59.9
		유동자산	160,112	431,466	△271,354	△62.9
		투자자산	291	223	68	30.5
		일반유형자산	4,600	4,104	496	12.1
		무형자산	13,532	13,092	440	3.4
		기타비유동자산	2,649	2,521	128	5.1
	부 채		27,889	933	26,956	2,889.2
		장기충당부채	27,889	933	26,956	2,889.2
	순자산		153,295	450,472	△297,177	△66.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4,013	80,618	3,395	4.2
	재정운영순원가		217,821	138,616	79,205	57.1
	재정운영결과		217,821	138,616	79,205	57.1

2.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의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은 2023년부터 경쟁영향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수행 방식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용역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관련 실적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므로,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은 온라인 교육플랫폼(공정거래교육센터) 교육과정 중 다수의 교육과정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미미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플랫폼의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거래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동일한 자율과제가 연례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과 과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당초 사업 목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향후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시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 제고 필요

가. 개 요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은 제도 및 시장 형태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경제적 분석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립하고,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3,400만원 중 9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9%)되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016	1,016	15	3	1,034	930	-	104	992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502	502	-	-	502	415	-	87	502
경쟁제한 규제개선	113	113	15	-	128	123	-	5	79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내역사업은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억 200만원 중 4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7%)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경쟁제한 규제개선’ 내역사업은 현행 제도 중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2) 일반회계-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경쟁정책국)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2,800만원 중 1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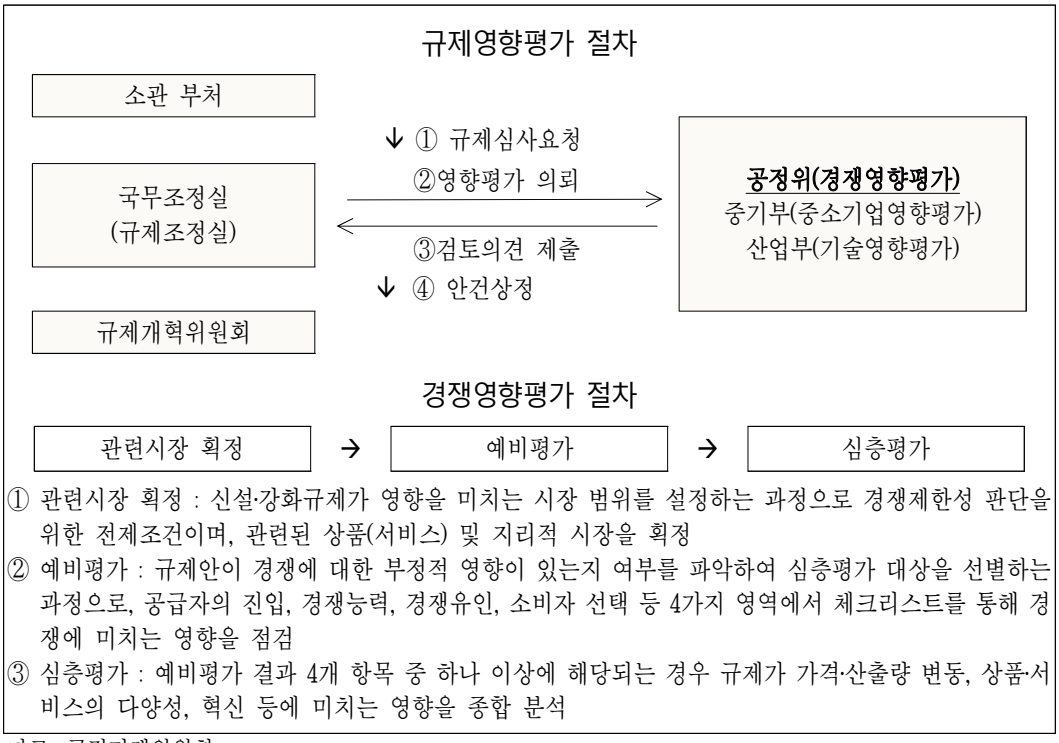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첫째, 경쟁영향평가는 202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수행 방식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용역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경쟁제한 규제개선 실적이 예년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사업방식 전환취지에 맞추어 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더 많은 경쟁제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쟁영향평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의 하나로,[3] 규제가 신설·강화되기 전에 시장 경쟁에 어떠한 영향(진입장벽, 사업자 경쟁요소 제한 등)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경쟁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경쟁영향평가 개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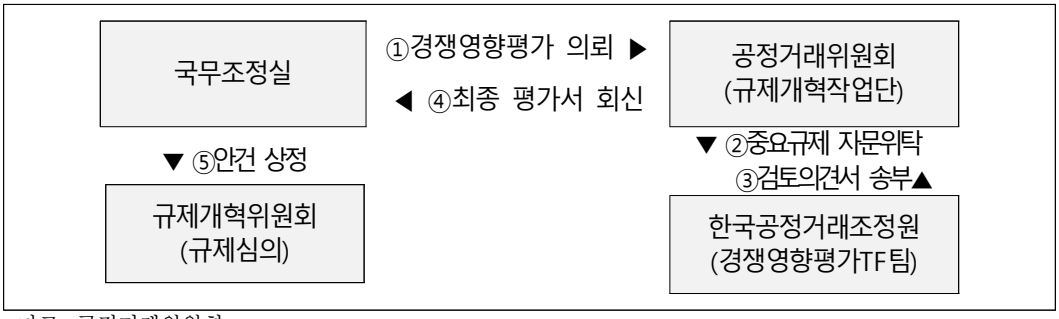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까지는 공정위 자체 인력(시장구조개선정책과 內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만으로 업무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규제유형에 따른 경쟁영향평가 체계]

구 분	내 용	평가 수행자
중요규제	▸ 진입제한(사업자의 수나 사업영역 제한) 규제 ▸ 사업자경쟁능력(가격, 광고활동 등) 제한 규제	공정위 → 조정원
기타규제	▸ 경쟁유인 제한(공동규율 형성, 영업정보 공개요구) 규제 ▸ 소비자선택권 제한 규제 등	공정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평가 업무 흐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경쟁영향평가 의뢰를 받은 783건 중 중요규제 116건을 조정원에 위탁하였고, 이후 조정원이 23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3건 중 20건에 대해 의견을 수용(3건 불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타규제 2건을 평가·발굴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 22건의 규제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특성상 계약상대자의 기술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위탁하였는데,[4] 이는 조정원이 새롭고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그러나 2022년 이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한 시기와 2023년 조정원이 위탁 수행한 시기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쟁영향평가는 공급자의 진입·경쟁능력·경쟁유인 및 소비자 선택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평가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수행 시보다 보다 활발한 경쟁제한 의견제출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 의견 제출 건수]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행방식	공정위 직접수행					위탁 수행
의뢰건수(A)	647	1,171	1,569	1,190	941	783
경쟁제한의견 제시건수(B)	25	12	21	13	16	22
의견 제시율(B/A)	3.86%	1.02 %	1.34 %	1.09 %	1.70 %	2.8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둘째,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수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제정·개정된 경쟁제한적 법령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5)]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 ·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 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 · 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 · 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업 절차]

과제 선정	⇨	개선 방안 마련	⇨	의견 수렴 (간담회 등)	⇨	개선방안 심의·조정	⇨	개선 방안 확정	⇨	이행 여부 점검

- 과제선정 : 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제 선정
- 개선방안마련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개선타당성과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 의견수렴 :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개선방안 심의·조정 :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심의·조정
- 개선방안 확정
- 이행여부 점검 : 소관 부처의 이행현황 확인 및 시장에서의 변화 현장점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하고자 하였음.[6)]

그러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실적은 발굴건수(40건)와 개선건수(22건) 모두 최근 5년간의 평균 실적(발굴 42.6건, 개선 25.4건)에 미치지 못하고, 합의비율(55%) 역시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임.

[2018~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실적]

(단위: 건,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굴 건수(A)	40	39	43	47	44	40
개선 건수(B)	23	19	23	32	30	22
합의비율(B/A)	57.5	48.7	53.5	68.1	68.2	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조사 및 정책분야 각각에 대해 집중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부서 및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향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 같은 정책 부분에서도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6) 대통령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년 7월, p.61.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정비 및 홍보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6억 5,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7)]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657	11,657	-	-	11,657	11,657	-	-	11,742
기관운영출연금	9,426	9,426	-	-	9,426	9,426	-	-	8,944
사업출연금	2,231	2,231	-	-	2,231	2,231	-	-	2,7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① 일반불공정·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② 공정거래연구, ③ 협약이행평가, ④ 공정거래전문교육, ⑤ 가맹·대리점종합지원, ⑥ 동의의결 이행관리, ⑦ 시정조치 이행관리, ⑧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의 사업비는 22억 3,100만원 중 21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8,500만원은 불용되었음.

7) 일반회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경쟁정책국)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계획	2023년 집행	세부 내용
수입	정부출연금	11,657	11,657	- 기존 출연금(11,657)
	기타수입	316	189	-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이월금 등
	수탁사업비	863	785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CP등급평가, 중소기업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경쟁영향평가 연구 등
	합계	12,836	12,631	
지출	인건비	7,171	7,032	- 임직원 보수, 퇴직충당금 및 법정부담금
	운영비	2,571	2,531	-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2,231	2,146	- 분쟁조정, 공정거래연구,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전문교육, 가맹종합지원, 대리점종합지원, 동의의결이행관리, 전산운영지원
	수탁사업비	863	770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CP등급평가, 중소기업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경쟁영향평가 연구 등
	합계	12,836	12,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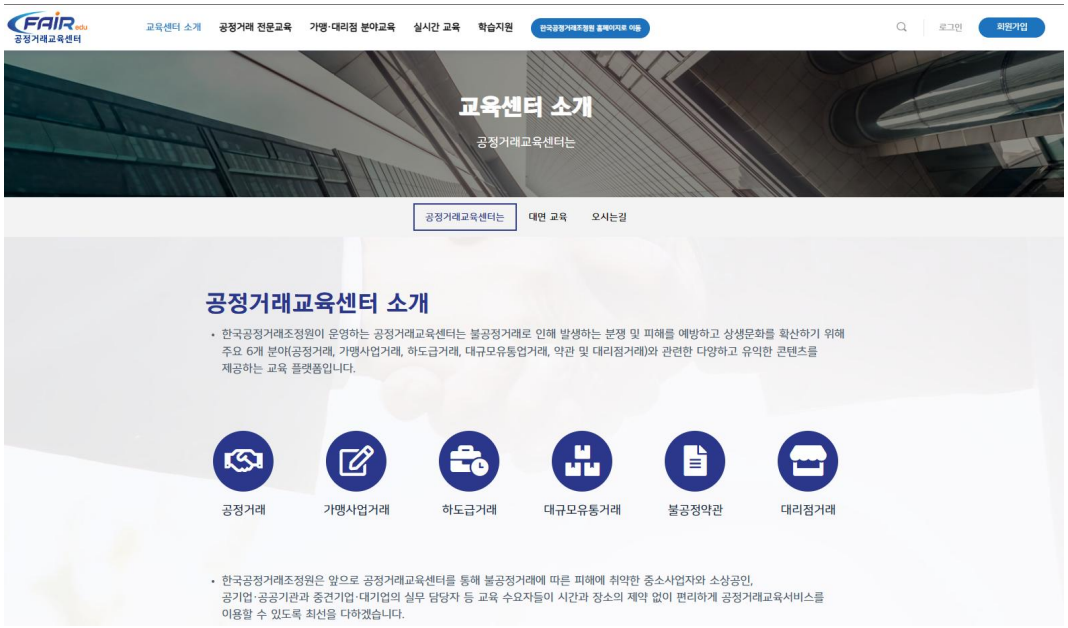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여러 온라인 교육플랫폼(공정거래교육센터) 교육과정 중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교육과정이 다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플랫폼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거래・불공정약관・대리점거래 및 기타 분야 총 7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공정거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체가입자 수는 1만 4,187명이고 전체 수료자 수는 1만 6,049명임.

[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 홈페이지]



[2023년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현황]

구분	수료자 수 범위	강의 수	주요 교육 내용
1	1000명 이상	4	공정거래법의 이해(2,456명) 실무자 대상 공정거래법 기본교육(1,924명) 실무자대상 하도급법 기본교육(1,350명)
2	500 ~ 999명	3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교육(930명)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교육(523명)
3	250 ~ 499명	5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373명)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심으로(296명)
4	100 ~ 249명	2	(심화)실무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교육(247명) 수급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198명)
5	50 ~ 99명	10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1편: 구입강제 행위(96명) 대리점분야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교육 1탄(90명) 대리점분야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교육 2탄(84명)
6	10 ~ 49명	40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공정거래 관련 분쟁(41명) 납품단가 조정협의 교육(39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재가공

그러나 2023년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0명 이상 수료한 교육 프로그램 64개 중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강의가 50개(78.1%)이고, 50명 미만인 강의는 40개(62.5%)로 나타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교육 수강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설 희망 교육과정 소요를 파악하고, 교육 대상자별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별·난이도별 공정거래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별 수료자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교육과정 수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온라인 플랫폼(공정거래교육센터) 교육과정의 선정 절차]

기존 콘텐츠 분석	▶	의견 수렴	▶	교육과정 계획 수립	▶	최종 교육과정 확정
기존 콘텐츠 수료자 수 등 현황 및 보완점 분석		교육생 설문조사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교육과정별 세부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선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분쟁해결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교육을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가맹사업, 하도급, 대리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소비환경개선 사업: 동일 자율과제의 연례적·관성적 선정 지양 필요

가. 개 요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소비문화·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5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

[2023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비자권익증진	3,018	3,018	-	-	3,018	2,748	-	270	1,234
소비환경개선	539	539	-	-	539	539	-	-	243

나. 검토의견

첫째,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자율과제 공모 시 동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였고 2024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 후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요청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과 차별화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매년 등록소비자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신청 받아 소비자단체(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2021년까지 자율과제로만 공모하였고, 2022~2023년에는 지정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공모하였으며, 2024년에는 공모 방식 대신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2023년에는 9개 지정과제에 대해 17개의 소비자단체가 신청하여 9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자율과제에 대해서는 4개의 소비자단체가 신청하여 2개의 소비자단체가 선정되었음.

8) 일반회계-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소비자정책국)

[2023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 지정·자율과제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과제	과제 분류	선정 여부	예산액	집행액	자부담률
부산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홍보 캠페인	지정	○	20,000	20,000	-
소비자와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야별 인포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캠페인	지정	○	32,000	32,330	1.02%
한국소비자교육원		지정	×	-	-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보 알리미 SNS 서포터즈 운영	지정	×	-	-	-
미래소비자행동		지정	○	40,000	26,998	4.76%
부산소비자연맹	온라인 유통 금지, 제한품목에 대한 종류 및 거래 실태조사	지정	×	-	-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지정	○	25,000	25,000	-
해피맘		지정	×	-	-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환불, 과도한 위약금, 면책조항 등 주요 불공정한 거래 이슈 실태조사	지정	×	-	-	-
한국소비자연맹		지정	○	32,000	29,790	-
소비자시민모임	구독서비스 자동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지정	×	-	-	-
미래소비자행동		지정	×	-	-	-
대한어머니중앙회		지정	○	32,000	25,890	-
소비자교육중앙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모니터링(캠페인, 실태조사) 확대	지정	○	48,000	48,000	-
한국부인회총본부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예방 홍보 콘텐츠개발 및 캠페인	지정	×	-	-	-
금융소비자연맹		지정	○	32,000	34,153	10.41%
서울YWCA	전자상거래 주요 분야별 거래행태에 관한 비교정보 제공	지정	○	20,000	22,226	10.02%
한국소비자연맹	청년 소비자 참여 소비자플랫폼 구축	자율	○	28,000	30,500	8.20%
부산YWCA	메타버스 취약소비계층 문제발생 실태조사 연구사업	자율	×	-	-	-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생 소비자 기자단 운영	자율	×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자율	○	230,000	213,26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선정된 자율과제 2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청년 소비자 참여 소비자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22년에도 유이(唯二)한 자율과제로 선정되었음. 전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자율과제로 연이어 선정되었고[9], 후자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율과제로 연이어 선정되고 있음.

동일한 내용의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율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소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모절차의 형평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해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소비자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과 예산편중 제한, 소비자단체별 성과평가 체계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사업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2024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후 ‘소비환경개선’의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 중 소식지 발간·소비자 권리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등은 이미 과거부터 자율과제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참여단체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개요]

·사업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캠페인, 실태조사 등 소비문화 및 거래환경 개선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2. 13.(금) ·사업범위 가. 소비자 정보 소식지 발간 나.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행사 및 캠페인 다.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라. 최신 소비자 이슈 실태조사 마.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사업예산: 243백만원(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9)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출판·홍보사업, 국제관계, 단체운영지원, 모니터교육, 소비자라운드테이블, 실무자 교육 등을 자율과제로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고, 2022년과 2023년은 해당 사업들을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으로 합하여 하나의 자율과제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그리고 2024년도 동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전체의 80%) 중 수행기관 전문성 배점에서 소식지 발간, 소비자 권리의 날, 청년 소비자 이슈 등 과거 자율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소비자단체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었음.

이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동 사업을 조달청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 및 선정방식에서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경쟁입찰 시 종전의 자율과제와는 차별화된 과제를 제안요청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2024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 기술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30점
	ㅇ 소비자 정보 소식지 발간을 위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점
	ㅇ 소비자 정보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유사한 실적이 있는가?	4점
	ㅇ 국제소비자기구 핵심이슈와 관련하여 분석력 및 기획력이 있는가?	4점
	ㅇ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행사과 관련하여 유사한 실적이 있는가?	3점
	ㅇ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점
	ㅇ 공모전 등 유사한 행사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가?	3점
	ㅇ 실태조사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점
	ㅇ 실태조시 이후 결과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ㅇ 사업 필요성과 목적, 과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사업수행 능력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소비자 정보 확산·전파를 위한 전략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6점
	ㅇ 파급력 있는 캠페인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7점
	ㅇ 시장 분석 및 소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7점
사업관리 방안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기관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6점
	ㅇ 캠페인 효과 검증·개선 및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한가?	7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인가?	7점
합 계		80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둘째, 2023년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는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ChatGPT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중 ‘실무자 교육’은 2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현황, 입법동향 청강 및 프롬프트 실습으로 진행되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당초 사업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3년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중 실무자교육 내역]

구분	일시	시간	교육내용
1차 실무자교육	2023.10.23.	3시간	· ChatGPT의 시대-인공지능의 시대 · AI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2차 실무자교육	2023.12.18.	4시간	· ChatGPT 프롬프트 작성과 활용

4. 데이터포털 구축 사업(종료): 장기계속계약 시 1차년도 사업지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의 연쇄적 예산이월 유의 등

가. 개 요

‘데이터 포털 구축’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하여, 데이터기반 사건처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플랫폼(FairDat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21년부터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도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7억 1,600만원 중 38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7,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300만원은 불용됨.[10)]

[2023년도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5,223	5,223	1,867	10	7,100	5,175	1,871	54	1,487
데이터포털 구축	3,849	3,849	1,867	-	5,716	3,822	1,871	23	-

나. 검토의견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3년(2021~2023년) 간 총 사업금액 104억 5,800만원에 대해 2021년 1차분 31억 5,800만원, 2022년 2차분 36억원, 2023년 3차분 37억원을 편성·집행하였음.[11)]

10) 일반회계-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기획조정관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차년도 3월까지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산 일부(잔금 50%)를 이월하여 집행하였고,[12]

2022년, 2023년 모두 1차 사업 지연체결에 따라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예산 중 일부(잔금 50%)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ISP결과 산출된 구축비용(181억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140억원(3년 장기)으로 삭감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과업조정 등 설계변경 작업이 추가되어 발주 일정이 순연되었고, 이후,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처리 및(EA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등) 내부결재(5.3.) 후 즉시 조달발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SW 분리발주 승인’ 절차를(5.4. ~ 6.2.) 거쳐 긴급 발주를 의뢰(6.3.)하여 사업자가 선정(8.17.)’ 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의견임.

[2019~2024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관련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기본 결재	계약 의뢰	계약 체결	사업기간	종료일	예산액	당해연도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총집행액
ISP사업	2019. 12.10	2019. 12.19.	2020. 3. 24.	2020. 3. 24. ~ 2020. 7. 22.	2020. 7. 22.	288,000	282,240	-	282,240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	2021. 5.13.	2021. 6.3.	2021. 8. 17.	2021. 3. 24. ~ 2022. 1. 14.(당초) 2021.8.17. ~2022.3.18.(변경)	2022. 3. 18.	3,158,000	1,515,000	1,515,000	3,030,000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 감리	2021. 9.1.	2021. 9.2.	2021. 10. 20.	2021. 10. 20. ~ 2021. 12. 30.(당초) 2021.10.20. ~2022.1.14.(변경)	2022. 1. 14.	115,983	79,562	36,421	115,983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2차	-	2022. 3. 29. (장기계속)	2022. 3. 29. (장기계속)	2022. 3. 29. ~ 2023. 3. 28.	2023. 3. 28.	3,453,000	1,726,500	1,726,500	3,453,000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2차 감리	2022. 7. 15.	2022. 7. 18.	2022. 9. 8.	2022. 9. 8. ~ 2023. 3. 28.	2023. 3. 28.	117,500	-	117,500	117,500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3차	-	2023. 3. 29. (장기계속)	2023. 3. 29. (장기계속)	2023. 3. 29. ~ 2023. 3. 17.	2023. 3. 17.	3,549,000	1,774,500	1,774,500	3,549,000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3차 감리	2023. 5.2.	2023. 5. 2.	2023. 8. 10.	2023. 8. 10. ~ 2024. 3. 18.	2024. 3. 18.	74,400	-	74,400	74,4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시,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부터 기본결재 준비-계약의뢰-계약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1차년도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②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계약의뢰 시 충분한 사업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전준비하는 한편, ③ 1차년도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차년도 사업범위를 사전에 조정하여 예산이월이 연쇄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에는 차년도, 차차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제안요청서에 사전에 예산 조정에 따른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의 협의·조정 가능성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2차년도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범위를 조율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함.[13]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상 차년도·차차년도 사업 조정가능성 안내문구]

※ 2021년도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며, 2022년 이후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공정위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조정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 감리' 사업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선금지급 불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데이터포털구축사업 2차 감리' 사업(2022.9.~2023.3.)의 계약액 1억 1,750만원을 전액 차년도 이월하고 감리사업이 종료된 2023년 전액 집행하였고, ② '데이터포털구축사업 3차 감리' 사업(2023.8.~2024.3.)의 계약액 7,440만원을 전액 차년도로 이월하고 감리사업이 종료된 2024년 전액 집행하였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수행업체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14]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어 사업종료 후 대금을 집행하였다는 의견임.

---

13)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을 회신 받아, 2차·3차연도 사업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과업기간 변경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조기발주·긴급발주 등을 통해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임.

1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때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도 포함되어 있음.[15)]

계약예규에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이 없어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선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를 공문서를 통해 주고받음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음.

나아가, 사업비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고이월 행위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예산의 조기집행 및 코로나19 피해극복 등을 위해 선금지급 허용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선금 미지급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1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12억 9,800만원(△0.4%)이 적은 2조 6,793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 600만원(△1.5%)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281,749	281,749	316,551	34,802	72,325	72,325	77,381	5,056	△239,170
기금	2,428,437	2,428,437	2,403,233	△25,204	2,618,351	2,618,351	2,601,997	△16,354	198,764
총수입	2,710,186	2,710,186	2,719,784	9,598	2,690,676	2,690,676	2,679,378	△11,298	△40,406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4억 9,200만원(△0.3%)이 적은 1조 5,982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00만원(3.0%)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00,006	1,556,542	1,551,816	△4,726	1,603,709	1,603,709	1,598,292	△5,417	46,476
기 금	175	175	81	△94	80	80	5	△75	△76
총지출	800,181	1,556,717	1,551,897	△4,820	1,603,789	1,603,789	1,598,297	△5,492	46,40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23억 2,500만원으로 1,489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3억 8,1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2.0%)되고 715억 6,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2,325	72,325	-	72,325	148,950	77,381	-	71,569
합 계	72,325	72,325	-	72,325	148,950	77,381	-	71,56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7,637억 900만원으로, 이 중 1조 9,021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5%)되고 5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8,610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763,619	3,763,619	90	±125	-	3,763,709	1,902,151	548	1,861,011
합 계	3,763,619	3,763,619	90	±125	-	3,763,709	1,902,151	548	1,861,01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2조 492억 4,900만원으로 47조 4,561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조 6,190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64.3%)되고 1조 8,699억 5,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4조 9,672억 2,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11,019,312	9,015,312	8,883,298	8,883,298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95,675	2,295,675	3,732,822	1,486,546	47,117	2,199,15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153	54,153	54,198	54,198	-	-
신용보증기금	12,328,730	12,328,730	22,355,048	10,465,063	1,648,795	10,241,18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63,019	3,463,019	4,904,634	4,904,634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2,360	4,892,360	7,526,185	4,825,263	174,041	2,526,881
합 계	34,053,249	32,049,249	47,456,185	30,619,002	1,869,954	14,967,22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2조 502억 2,900만원으로, 이 중 30조 6,190억 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5.5%)되고 1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715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적자금상환기금	11,019,312	9,015,312	-	9,015,312	8,883,298	-	113,8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95,675	2,295,675	-	2,295,675	1,486,546	-	7,6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153	54,153	-	54,153	54,198	-	1
신용보증기금	12,328,730	12,328,730	-	12,328,730	10,465,063	-	1,037,68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63,019	3,463,019	353	3,463,372	4,904,634	-	87,9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2,360	4,892,360	627	4,892,987	4,825,263	185	24,495
합 계	34,053,249	32,049,249	980	32,050,229	30,619,003	185	1,271,57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9,767억 6,100만원이 증가한 33조 4,472억 2,9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조 4,208억 9,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유동자산이 4조 2,957억 7,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9,560억 4,700만원 감소한 33조 9,451억 1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3조 4,671억 3,4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조 9,328억 900만원이 증가한 △4,978억 7,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4,184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894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8,498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91억 8,9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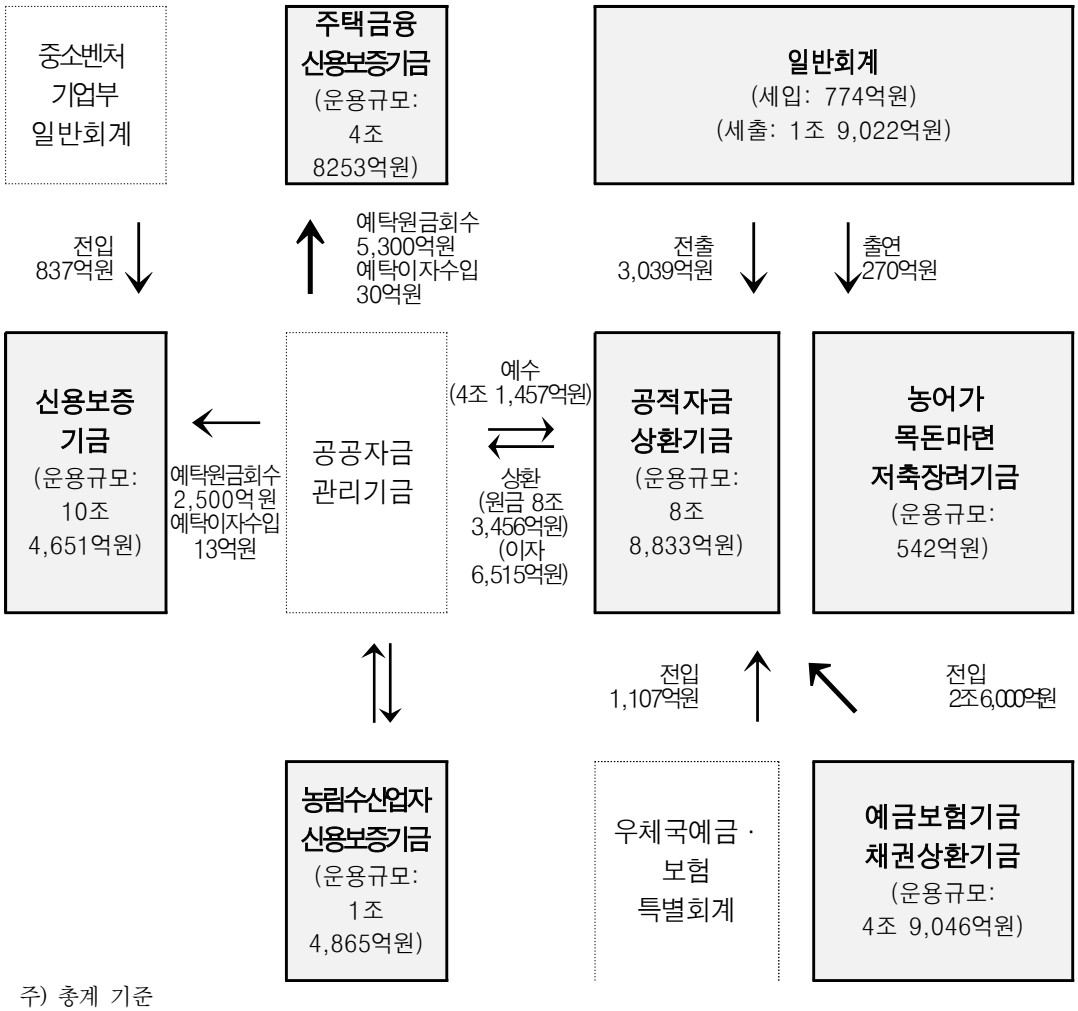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3,447,229	30,470,468	2,976,761	9.8
		유동자산	26,118,385	21,822,610	4,295,775	19.7
		투자자산	5,977,465	7,398,359	△1,420,894	△19.2
		일반유형자산	548,158	551,198	△3,040	△0.6
		무형자산	22,123	35,356	△13,233	△37.4
		기타비유동자산	781,098	662,946	118,152	17.8
	부 채		33,945,101	37,901,148	△3,956,047	△10.4
		유동부채	8,459,661	9,259,992	△800,331	△8.6
		장기차입부채	20,420,276	23,887,410	△3,467,134	△14.5
		장기충당부채	4,917,385	4,567,453	349,932	7.7
		기타비유동부채	147,779	186,293	△38,514	△20.7
	순자산		△497,871	△7,430,680	6,932,809	93.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418,406	528,988	1,889,418	357.2
	재정운영순원가		2,486,782	1,183,429	1,303,353	110.1
	재정운영결과		△2,849,804	△3,718,993	869,189	23.4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는 1개 회계(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특례 보증 등을 수행하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펀드 및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목표 대비 실적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의 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감리비용 지출 및 사업지연 등이 나타났고,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유상유지보수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문제가 있음.

셋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계획 대비 14%에 불과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주식 매각대금을 공적자금상환에 반영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영하였는데, 공적자금의 적기 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넷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관리 및 대위변제 사업은 전세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부실로 인해 대위변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구상채권의 회수실적은 미진하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의 예산안 연례적 미편성 부적정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수익금 등을 반납받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9,900만원 중 9,9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4]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99	99	-	-	100.0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4)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행정인사과)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매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 받고 있으나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된 핀테크 지원사업,[5] 금융관련 국제협력사업(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6] 디지털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7]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8]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정산 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수익금을 ① 예산안 편성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② 결산 시에는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실제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수익금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징수하고 있고, 2023년 역시 9,9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특성 상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예상하기 곤란하다' 는 이유로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최근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8	-	-	-	3	3	100	-	-
2019	-	-	-	8	8	100	-	-
2020	-	-	-	67	67	100	-	-
2021	-	-	-	52	52	100	-	-
2022	-	-	-	23	23	100	-	-
2023	-	-	-	99	99	100	-	-
2024.7.	-	-	-	27	27	100	-	-

자료: 금융위원회

5)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6) 일반회계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1431-301)

7) 일반회계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1431-306)

8)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그러나,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되는 보조사업이 매년 편성됨에 따라 보조금 이자수입의 수납이 충분히 예견되고, 실제로 2018년부터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평균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부 수납내역]

연번	수납 사유	납부자명	수납액	최초 결의일자	수납일자
1	2022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송달료 등 실비) 반납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994,630원	2023-02-28	2023-03-08
2	2022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부수사건 소송대리) 반납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11,160원	2023-02-28	2023-03-08
3	2022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변호사보수) 반납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5,207,270원	2023-02-28	2023-03-08
4	2022년도 보조금 이자징수요청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3,917,730원	2023-03-08	2023-04-10
5	2022년도 보조금 이자징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9,828,220원	2023-04-12	2023-04-14
6	2022년도 보조금 이자징수(해양대)	한국해양대학교	2,221,770원	2023-04-12	2023-04-14
7	2022년도 보조금 이자징수(부산대)	부산대학교	1,136,470원	2023-04-12	2023-04-14
8	2019년 핀테크 지원 사업 미수납 금액 징수 요청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230원	2023-06-08	2023-06-09
9	2019년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미수납 금액 징수 요청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1,340원	2023-06-08	2023-06-09
10	**2022년 핀테크 지원 사업 정산 후 이자반납처리**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641,120원	2023-11-13	2023-11-24
11	**2022년 핀테크 지원 사업 정산 후 이자반납요청**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74,202,690원	2023-11-13	2023-11-24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위원회는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반납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핀테크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3년 2월 28일 정산보고서를 작성 및 검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정산보고서 접수 후 8개월이 지난 11월 10일에야 보조금 정산 결과를 확정 통보하고 이자수익등을 수납 받았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연도 내 보조금 이자수익 정산의 지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9)]

해당 규정은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사업지연 및 복잡한 정산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다음 연도 내에 최종적인 절차인 반납까지 완료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증이 종료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보조금 및 이자수익을 반환받아야 할 것임.

특히, 정산보고서 검증 이후 보조금의 반환금 및 이자수익이 신속하게 수납되지 못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결산보고서의 검증결과 확정을 지연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출>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중도해지율 과소추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재원부족 초래 등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은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지급을 주관하고 적금실적을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601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0)]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360,168	360,168	-	-	360,168	360,168	-	-	165,738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저축장려금(1년차 2%, 2년차 4%)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2022년 2~3월 중 총 12개 은행에서 상품 가입신청을 접수하였음.

10)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금융소비자국)

[청년희망적금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청년층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1년차 납입액에 대해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출시 은행별 상이하고, 최대 9.3%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은행 자체금리: 기본 5%, 우대 0.0~1.0%p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을 실제보다 5%p 높게 추계한 결과 2024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까지의 가입유지 비율을 65%, 월 평균 납입액을 42만 5,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가입 유지 비율은 70.9%, 월 평균 납입액은 43만 2,000원으로, 2024년 저축장려금 지급예산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소하게 편성되었음.[11)]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최종 만기유지율은 집계 중이나,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인해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 560억 5,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으로 전용(감)하였음. 그러나 추계 오류로 인해 목적과 대상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2024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예산 산출내역>

○ 총 저축장려금 지원액 5,712억 8,200만원
- (1년차) 가입자(287만명) × 가입유지 비율 65% × 2023.6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42.5만원) × 12개월× 2% = 1,904억 2,700만원
- (2년차) 가입자(287만명) × 가입유지 비율 65% × 2023.6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42.5만원) × 12개월× 4% = 3,808억 5,500만원

○ 2024년 저축장려금 예산안 1,656억 8,200만원 = 총 저축장려금 지원액(5,712억 8,200만원) - 旣편성액 4,056억원 ('22년 456억원, '23년 3,6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2024. 4.1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56,05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56,050	(전용)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해지실적]

(단위: 천좌,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최초가입 시점 (3.4.)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5월말
가입계좌수(A)	2,868	-	-	-	-	-	-	-	-	-	-
누적 해지계좌수(B)	-	24	167	302	454	583	695	782	835	2,808	2,836
해지율 (B/A)	-	0.8%	5.8%	10.5%	15.8%	20.3%	24.2%	27.3%	29.1%	97.9%	98.9%
누적 특별중도 해지자 수		0.004	0.04	0.129	0.322	0.594	1.147	1.911	2.339	2.437	2,437
계좌 유지건수	2,868	2,844	2,701	2,567	2,414	2,285	2,174	2,087	2,034	61	32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	-	411	413	416	419	421	425	428	432	438	438

주 1) 해지율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 + 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가입계좌 수(누적))}×100
2) 계좌 유지건수 = 가입계좌 수(누적)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
3)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 = 당월 총 납입금액 / 당월 납입계좌 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2022~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실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1]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47,550	-	47,550	1,948	45,589	13	4.1%
2023년	360,168	45,589	405,757	519	405,221	17	0.1%
2024년 6월 현재	165,738	405,221	636,109[2]	628,762	-	-	98.8%

주 1) 교부현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2) 청년도약계좌 전용액(560억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 자금운용수익(91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위원회는 2024년 초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및 청년도약계좌의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입출금 제한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 신청을 시작한 이후,[12]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희망적금 계좌가 한도제한계좌[13]로 등록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문제가 대두되었음.

소득증빙이 어렵고 거래실적이 저조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적금을 출금하거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발급・자동이체설정 등 거래실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14]

사회초년생 및 청년 등의 한도제한계좌 문제는 사전에 파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환 신청이 시작한지 한달이 지난 지난 2월 23일에서야 은행권에게 특별거래 한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15]

1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인원은 48만 3,000명이고, 납입액은 3조 275억원임.

13) 한도제한계좌란,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 시 대포통장 개설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출금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영업점 출금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임.

14) 머니투데이, “겨우 모은 청년적금 내 맘대로 못 빼 황당... 신용카드 만들라고?”, 2024.2.18.
세계일보, “만기 채웠는데... 청년희망적금 인출 ‘쉽지 않네’”, 2024.2.21.

15)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2024.2.23.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사회초년생, 청년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집행관리가 요구됨.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등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678억 100만원 중 3,677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801	367,801	-	-	367,801	367,794	-	7	368,211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2023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11개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16)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금융소비자국)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사업목적</td><td>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td></tr>
<tr><td>상품내용</td><td>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td></tr>
<tr><td>금리</td><td>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td></tr>
<tr><td>지원내용</td><td>①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table>
<tr><th colspan="2">개인소득</th><th rowspan="2">본인
납입한도</th><th rowspan="2">기여금
지급한도</th><th rowspan="2">기여금
매칭비율</th><th rowspan="2">기여금 한도</th></tr>
<tr><th>총급여 기준</th><th>종합소득 기준</th></tr>
<tr><td>2,400만원</td><td>1,600만원</td><td rowspan="5">70만원</td><td>40만원</td><td>6.0%</td><td>2.4만원</td></tr>
<tr><td>3,600만원</td><td>2,600만원</td><td>50만원</td><td>4.6%</td><td>2.3만원</td></tr>
<tr><td>4,800만원</td><td>3,600만원</td><td>60만원</td><td>3.7%</td><td>2.2만원</td></tr>
<tr><td>6,000만원</td><td>4,800만원</td><td>70만원</td><td>3.0%</td><td>2.1만원</td></tr>
<tr><td>7,500만원</td><td>6,300만원</td><td>-</td><td>-</td><td>미지급</td></tr>
</table>
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혜택</td></tr>
<tr><td>금리</td><td>취급 은행별 상이하고, 최대 6.0%</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만기일시지급</td></tr>
<tr><td>취급은행</td><td>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td></tr>
</table>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계획에 비해 실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실적이 미흡하고, 사업 부진에 따라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므로,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안 편성 시 추계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내 가입자 수 306만명, 예상 납입률 80%를 예상하여 기여금 지원액을 3,440억 3,7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그러나 2023년 말 기준으로, 가입 후 계좌유지자 수는 46만 9,000명에 불과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의 15.3% 수준에 불과하였음. 청년도약계좌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받은 기여금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실집행률 12.6%), 3,008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음.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연금 예산 세부편성 내역]

세사업	예산 세부내역
· 기여금 지원 (344,037백만원)	- 기여금 지원 : 344,037백만원 (가입자(306만명)x월 지원금(2.34만원)x예상 납입률(80%)x6개월)
· 인프라 구축 (23,610백만원)	- 인프라 구축 : 23,610백만원 (소득심사센터 인건비 617백만원+민원상담 용역비 3,780백만원+경상운영비 4,184백만원+전산구축비 15,029백만원)
·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147백만원)	- 운영지원 : 147백만원 (일반수용비 4백만원+일반용역비 70백만원+국내여비 2백만원+사업추진비 8백만원+정책연구비 63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시기(2022년)와 달리 2023년 시중은행권은 일반 적금상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상대적 수익성이 낮아져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낮았으나,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견임.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 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집행률이 12.6%에 불과한 것과 같이 편성규모와 집행규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추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23년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소계
가입계좌 수	-	253	125	44	32	25	32	511
해지계좌 수(A)	-	3	6	6	8	10	9	42
해지율(A/B)	-	1.0%	2.2%	3.6%	5.4%	7.3%	9.0%	9.0%
계좌 유지건수(B)	-	250	370	407	430	446	469	469
기간별 적급 납입액	-	1,348	1,945	2,149	2,275	2,335	2,457	12,508
가입유지계좌의 적금납입 총액	-	1,183	1,753	1,969	2,118	2,209	2,357	11,589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천원)	-	533	550	566	566	565	565	557

주 1) 해지율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 + 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가입계좌 수(누적))}×100
2) 계좌 유지건수 = 가입계좌 수(누적)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
3)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 = 당월 총 납입금액 / 당월 납입계좌 건수
4) 특별해지자수는 2023년 말 기준 51명, 2024년 3월 말 기준 180명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도표에서 생략함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24년						2023~2024년 누적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소계	
가입계좌 수	39	154	355	167	78	794	1,305
해지계좌 수(A)	10	10	15	18	집계중	53	95
해지율(A/B)	9.5%	8.8%	7.3%	7.8%		-	7.8%
계좌 유지 건수(B)	498	642	982	1,131		-	1,131
기간별 적금 납입액	2,621	13,390	18,591	8,732		43,334	55,842
가입유지계좌의 적금납입 총액	14,584	27,674	45,572	53,321		-	53,321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천원)	565	2,213	2,180	1,022		-	1,022

주 1) 해지율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 + 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가입계좌 수(누적))}×100
2) 계좌 유지건수 = 가입계좌 수(누적)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
3)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 = 당월 총 납입금액 / 당월 납입계좌 건수
4) 특별해지자수는 2023년 말 기준 51명, 2024년 3월 말 기준 180명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도표에서 생략함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출연금 예산을 1회 전액 교부하였는데, 향후에는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출연기관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 예산 3,678억 1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 중 87.4%인 3,008억 1,600만원을 실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여 당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미집행된 상태로 유보하게 되었음.

① 매월 정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정산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가입부진으로 인해, 출연금 3,440억 3,700만원 중 12.6%에 해당하는 432억 2,100만원만 집행되고, 87.4%에 해당하는 3,008억 1,600만원은 이월되었고, ② 청년도약계좌 인프라 구축 관련 출연금 236억 1,0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은 집행되고 25억 5,100만원은 이월되었음.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치금리가 높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이라는 의견이나,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 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제 사용되지 못할 예산이 출연기관에 유보되어 이자수익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344,037	344,037	344,037	344,037	-	344,037	43,221	344,037	43,221	300,816	-	12.6
인프라 구축	23,610	23,610	23,610	23,610	-	23,610	21,059	23,610	21,059	2,551	-	89.2

자료: 금융위원회

셋째, 금융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한 후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 동 사업은 지원사업이 5년간 지속되는 동안 경직적인 재정소요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재정규모를 확정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예산내용의 임의적 변경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실적이 당초 예상에 비해 미진함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음.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이하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연 6,23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억 368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억 3,3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억 6,202만원 이하는 가입대상에 포함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변화 내역]

구분	최초(2023년 6월~)	2024년 제도 변화
개인소득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직전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미확정 시(1~7월)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직전 과세시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봄 *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납입한도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특별중도해지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기존 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사유 추가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 변화]

(단위: 만원)

구분	2022년 기준 (2023.7.~2024.6. 가입자)			2023년 기준 (2024.7.~2025.6. 가입자)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 250%	가구원 평균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 250%	가구원 평균
1인가구	4,200	5,834	5,834	4,488	6,233	6,233
2인가구	7,041	9,779	4,890	7,465	10,368	5,184
3인가구	9,060	12,583	4,194	9,579	13,304	4,435
4인가구	11,061	15,363	3,841	11,666	16,202	4,050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유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에서 250%이하로 완화했다는 의견임.

[2024년 예산안 의결 시 청년도약계좌 관련 부대의견]

(2)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변화는 육아휴직·복무중 상태의 가입 허용, 혼인·출산 등의 특별중도해지 요건 추가 등은 실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구소득 요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당초 국회가 예산안 규모를 심의·확정할 때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 사업은 가입기간 동안 5년간 경직적으로 재정투입(기여금)이 발생하므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면밀하게 예산 편성 및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청년층은 결혼·주택마련 및 출산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3~5년간 자금을 묶어 두어야 하므로 적금상품이 외면받고 있고, 생애주기 상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청년기에 단순한 저축장려 보다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17]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 금융정책 설계·운용 시 사업부진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실수요에 맞는 자산형성 상품을 면밀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7) 중앙SUNDAY, “ “목돈 묶이고 수익률도 감질나” ... 청년 외면받는 청년 금융정책 “, 2024.6.1.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 보증)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보호 시 도덕적 해이 주의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특례 보증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8)]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28,000	-	-	28,000	28,000	-	-	56,000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80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2022년 9월 출시되었고, 2023년은 280억원, 2024년은 560억원이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음.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금을 활용하여 최저신용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임.

나. 검토의견

고금리 민간·정책 자금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융자 미상환에 따른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서민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안자금으로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고 있음.

그중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금리상승 등으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피해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 운영 중이던 햇살론15보다 신용등급 기준이 하위 10%로 더 낮게 설정되었고, 햇살론15 보증거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햇살론15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 시 연체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품설계 시부터 부실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및 햇살론15 사업개요]

구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15
사업목적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최대 1,400만원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023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청자 수는 11만 8,398명이고 그 중 94.6%인 11만 2,009명이 선정되었으며, 총 대출액은 2,9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61만원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분기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22년 4/4분기	23년 1/4분기	23년 2/4분기	23년 3/4분기	23년 4/4분기	24년 1/4분기	소계
지원 건수	신청	34,943	30,521	33,793	19,223	34,861	19,191	172,532
	지원	34,208	28,776	28,382	17,647	37,204	19,754	165,971
총 대출액		10,019,490	6,946,380	6,785,680	4,889,000	10,613,940	5,152,020	44,406,510
평균 대출액		292	241	239	277	285	261	268

자료: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보증공급 전체 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증잔액 2,917억 9,500만원, 기본재산 189억 700만원으로 운용배수는 15.4배였으며, 대위변제율 역시 14.5%까지 증가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을 받은 최저신용자가 거치기간(1년) 종료 후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부실-대위변제-사업손실로 이어져, 대위변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4년까지 대위변제율을 40%, 사업손실률을 20.6%로 추산하였으나, 2025년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하여 서민금융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대위변제율을 53.5%, 사업손실률을 33.0%로 예상하고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보증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배)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1/4~3/4분기	4/4분기 (2022.9.2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보증잔액(A)	-	96,689	158,128	198,906	219,746	291,795	303,227
신규보증액	-	100,195	69,464	67,857	48,890	106,139	51,520
보증해지액[2]	-	3,505	8,025	27,079	28,050	34,090	40,088
대위변제액[3]	-	8	211	17,360	36,017	57,093	79,428
대위변제율[4]	-	0.01	0.1	7.3	12.6	14.5	17.9
기본재산[5](B)	-	47,992	75,789	58,640	39,983	18,907	52,572
운용배수(A/B)	-	2.0	2.1	3.4	5.5	15.4	5.8

주 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및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보증해지액 =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 (전분기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3)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 (월말 누적 기준)
4)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5) 기본재산 = 누적 출연금 - 누적 대위변제액

자료: 금융위원회

아울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 비해 대출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햇살론15의 경우에도 대위변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말 기준 21.3%에 이르고 있다는 점[19]을 고려할 때, 연체이력 등으로 햇살론15에서도 보증이 거절되고,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부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신용도를 평가하여 상환을 전제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금융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일정 조건이 되면 현금 등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대출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 제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20] 대규모 신용사면[21] 조치 등으로 인

19) [연도별 햇살론15 보증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배)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보증잔액(A)	1,306,593	1,281,707	1,464,924	1,909,903	2,150,165	2,181,341	2,114,025	2,095,948	2,038,072
- 신규보증액	191,516	190,121	396,718	652,095	476,166	306,540	237,698	288,182	236,994
- 보증해지액2)	194,866	215,007	213,501	207,117	235,903	275,363	305,015	306,259	294,869
대위변제액[3]	403,406	468,672	537,297	602,194	677,219	794,550	948,306	1,107,097	1,235,492
대위변제율[4]	15.2	16.5	16.6	15.5	15.5	17.0	19.3	21.3	22.7

주 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월말 누적 기준)
3)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20)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2024.1.3.

21)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 2024.3.12.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개요]

지원대상: 2021.9.1.~2024.1.31. 기간 동안 소액(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개인: 298만명 / 개인사업자: 31만명)
지원요건: 20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
지원효과: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 상승 (개인: 평균 37점 상승 / 개인사업자: 평균 102점 상승)
기타: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1년 단축

자료: 금융위원회

해 자칫 저신용자·서민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환의무 없는 보조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항상 유의하여 서민금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결성·투자 필요와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보고 등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혁신성장 분야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혁신산업펀드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0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참고로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600억원(△20.0%) 감액된 2,400억원이 편성됨.[22)]

[2023년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300,000	-	-	300,000	300,000	-	-	240,000

동 사업은 재정과 정책자금(산업은행 출자)이 마중물로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자펀드에서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기존의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변경하면서 투자분야를 혁신산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로 나누었음. 각각의 펀드를 5년(2023~2027년)간 매년 1.5조원씩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예산안 2,400억원(재정출자비율 8%)을 투입하여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임.[23)]

22)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금융정책국)

2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부안 감액분 600억원은 산업은행에 출자된 기존 정책펀드(혁신모험펀드 등)의 누적 회수재원을 활용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연말 어려운 민간 자금상황에서 신속한 자펀드 결성을 위해 산업은행이 재정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조속히 선정하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은행은 2023년 혁신성장펀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6월 1차 자펀드 운용사 선정, 10~11월에 2차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연말에서야 비로소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였음.

[2023년 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추진 일정]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실행
▸ 재정모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3년 2월 중	2023.2.24.
▸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3월 중	3. 31.
▸ 1차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4월 말	4. 28.
▸ 1차 자펀드 운용사 선정	6월 중	6. 23.
▸ 2차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연내[1]	10.16.(성장지원) 9.12(혁신산업)
▸ 2차 자펀드 운용사 선정	연내[1]	11.8.(성장지원) 10.30.(혁신산업)
▸ 자펀드 결성(3조원) 완료	~2023.12월	~2023.12.31.[2]

주 1) 2차 사업은 매칭출자로 他기관 출자사업 일정, 참여 예상 운용사들의 출자 확약서(LOC)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내 추진

2) 2023년 말 기준으로 목표(3조원)을 초과한 3.15조원 펀드를 조성하였고, 13개 중 12개 자펀드 결성 완료 (잔여 1개 펀드 2024.3. 결성 완료)

자료: 금융위원회

매년 11~12월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book closing) 시기에는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자펀드 운용사가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24]

특히 최근 금리 상승 및 PF 금융의 부실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25]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펀드 참여에 신중한 검토가

24)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를 의미함. 이와 대비되는 용어인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은 조합 혹은 펀드를 운용하는 자로서, 펀드 운용과 동시에 투자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역할을 함.

25)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거래기법을 의미함.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펀드 운용사 선정 후 자펀드 결성까지 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24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시 2월에 운용사 모집공고하고, 4월에 선정을 완료하여, 최대한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한을 앞당긴 바 있음.

둘째, 자펀드의 조속한 투자 집행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당초 정책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고 정책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은행 및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2023년 혁신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시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를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② 2년간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 중에 위탁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혁신성장펀드 1차(혁신산업, 성장지원), 2차(혁신산업)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상 운용보수]

○ 관리보수 : ① 또는 ② 중 택일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투자잔액	연1.6% 이내	연1.1%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연1.4% 이내	연0.9% 이내		

* 성립일~2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② 2년간 약정총액,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성립일~2년	연1.5% 이내	연1.0%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2년~만기				

*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2차(성장지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상 운용보수]

운용보수	○ 기모집된 출자확약서(LOC)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안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가 관리보수 체계를 선택한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사 중 3개 사가 선제적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관리보수①’을 선택하고, 9개 사는 2년 간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 받는 ‘관리보수②’를 선택하여, 선제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3년 혁신성장펀드 자펀드별 약정총액 및 관리보수 체계]

(단위: 억원)

구분	사업연도	펀드명	운용사명	자펀드 약정 총액	관리보수①	관리보수②
자펀드	2023	AA 투자조합	AA	2,505	O	
		BB 사모투자합자회사	BB	1,210	O	
		CC 투자조합	CC	1,592		O
		DD 사모투자합자회사	DD	2,400		O
		EE 사모투자합자회사	EE	1,200		O
		FF 사모투자합자회사	FF	4,680		O
		GG 혁신성장펀드	GG	2,652		O
		HH 사모투자합자회사	HH	2,318		O
		Ⅱ 사모투자합자회사	Ⅱ	1,200		O
		JJ 사모투자합자회사	JJ	5,000		O
		KK 사모투자합자회사	KK	1,070		O
		LL 성장투자조합	LL	8,600	O	
		MM 사모투자합자회사	MM	2,500	해당없음	
		NN 사모투자합자회사	NN	2,500	해당없음	
	합계			36,927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관리보수①은 투자잔액과 유보액에 대한 관리보수율 격차(0.2%p)가 미미하여 조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반해, 관리보수②는 2년간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하여 위탁운용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보수②를 선택할 유인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2024년 2월 기준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1차(2021년)의 자펀드 결성총액 대비 투자집행액 비율 54.2%, 2차(2022년)는 33.6%, 혁신성장펀드 1차(2023년)는 4.0% 수준으로, 자펀드 결성 후 2년 내 투자집행비율이 50% 수준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운용사가 보다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유인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2023년 말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회수재원의 원칙적 국고 반환과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더해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규모 및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등에 대해 충실한 국회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봄.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으로 배분되는 모펀드 청산 분배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 모펀드의 재투자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 모펀드 운용사의 보수규정 등을 포함하는 펀드출자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내 내부규정(「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음.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

제8조(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처리) ① 은행이 재정모펀드로부터 회수한 재원(이하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이라 한다)은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주관부서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이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 출자사업의 재원 등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며,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재투자 분야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주관부서는 연1회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동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재정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관리보수를 조정하는 등 재정모펀드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성과평가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예 : 정부 등 유관기관 주도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관부서장의 재량으로 동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재정모펀드의 운용사는 연1회 해당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말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재정모펀드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반환이 어려워 출자사업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회수재원의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음.[26)]

② 회수재원의 예상 규모 및 재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결정 내용(회수재원의 양과 활용방식 등)에 대해서도 예산안 제출 시 국회에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음.

③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 역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거 재정을 투입한 재정모펀드의 성과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향후 예산안 심의 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6) 금융위원회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회수재원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자본금 유상감자를 거쳐야 하는데, 자본금의 감자는 통상 결손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외투자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채권자가 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의견임.

6.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결원에 따른 연례적 불용 및 직제 외 파견인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 운영에 필요한 보수·기타 직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0억 1,200만원 중 52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7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3년도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FIU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6,012	6,012	-	-	6,012	5,256	-	756	6,290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검사·감독 업무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및 검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하 1관 2실 5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 결산시정요구 및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파견인력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결원문제 해소를 위해 인사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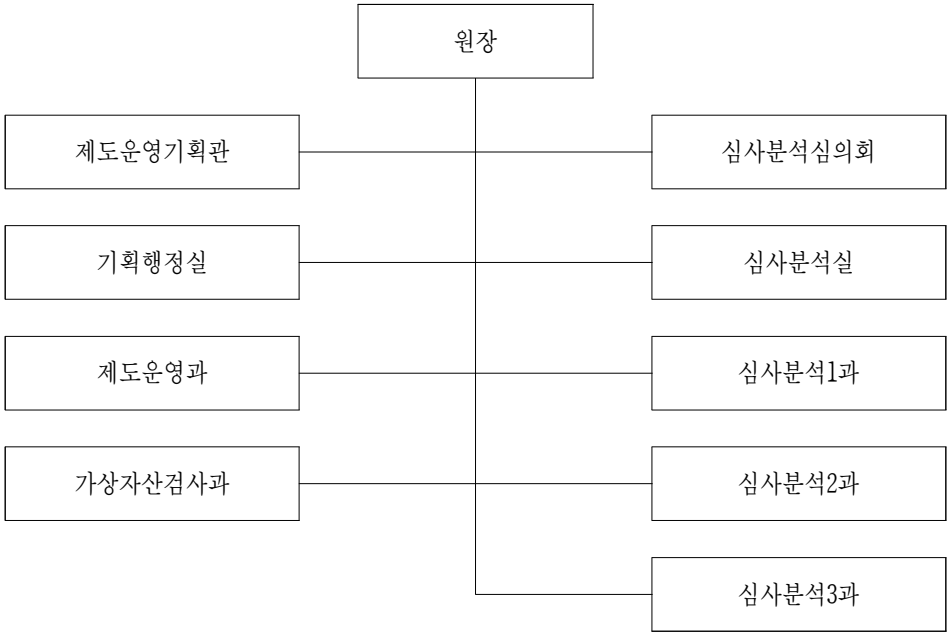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으며,[28)] 금융정보분석원 내에서는 정규조직으로 2실 4과(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 1·2·3과)를 운영하고,[29)]

27) 일반회계-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7102-101)(금융정보분석원)

2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2025년 1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를 운영 중임.[30]

[금융정보분석원 조직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내 조직도를 재구성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은 정규조직의 정원 70인과 한시조직(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 8인, 한시정원 1인으로 79인임.

2023년 말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원은 72.5인이고, 직제 외 인원 중 주요 파견인력으로는 검사 3인,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각 1인, 금융감독원 직원 2인, 코스콤(KOSCOM) 1인 등임.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원소속이 금융위원회인 직원은 적은 반면, 인력부족분을 국가기관(검찰청·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파견인력 등으로 충원하고 있음.

---

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 · 제도운영과 · 심사분석실 · 심사분석1과 · 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3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및 현원 표]

(단위: 명)

실과명	정원				현원		직제 외 현원	직제 외 현원 내역
	정규조직	한시조직	한시정원	총계	23말 기준	24.5. 기준		
원장	1	0	0	1	1	1	-	-
제도운영기획관	0	1	0	1	1	1	-	-
기획행정실	18	0	0	18	16	17	5	사무원(3), 에디터(2)
제도운영과	7	0	0	7	6	4	1	**금융감독원(1)**
가상자산검사과	2	7	0	9	8	7	1	**코스콤(1)**
심사분석실	15	0	0	15	14.5	14.5	7	**검사(3), 금감원(1)** 사무원(1), 에디터(2)
심사분석1과	12	0	0	12	12	11	-	
심사분석2과	9	0	0	9	9	8	-	
심사분석3과	6	0	1	7	5	7	4	**국세청(1), 관세청(1), 해경(1), 선관위(1)**
정보분석심의회	-	-	-	-	-	-	2	심의위원(1), 사무원(1)
합 계	70	8	1	79	72.5	70.5	21	

주 1)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심사분석실장은 검사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는 인력을 검사로 두도록 규정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을 채용하도록 규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본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현원 배치가 직제 대비 적어 FIU 인건비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최근 5년간 인건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금융위 본부에 비해 FIU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2023년 금융위원회 본부 인건비 집행률은 92.6%이나, 금융정보분석원 인건비 집행률은 87.4% 수준으로 5억 8,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FIU 및 금융위원회 본부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2019년	4,778	4,778	-	△32	4,746	4,212	88.2	-	534
2020년	5,097	4,736	-	△197	4,538	4,538	95.8	-	-
2021년	5,059	5,059	-	△138	4,921	4,669	92.2	-	252
2022년	5,847	5,838	-	-	5,838	5,251	89.9	-	587
2023년	6,012	6,012	-	-	6,012	5,256	87.4	-	756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2019년	22,448	22,448	-	△145	22,303	20,583	91.7	-	1,720
2020년	22,954	22,699	-	△280	22,419	22,418	98.8	-	2
2021년	24,097	24,097	-	△194	23,903	23,220	96.4	-	684
2022년	25,463	25,426	-	-	25,426	23,873	93.9	-	1,553
2023년	25,841	25,841	-	-	25,841	23,930	92.6	-	26,747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결산 심사 시 ① 금융위원회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파견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② 금융정보분석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직원의 결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2022년도 금융위원회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금융위원회의 민간전문가 파견 인력이 과도하여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인력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파견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민간전문가 파견 인력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제도개선)

○ (지적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금융위원회 본부 대비 인건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인력배치 불균형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시정)

또한, 감사원은 2023년 말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① 다수의 비정규 부서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급 직위를 부여하는 것과, ② 비공식 파견 포함하여 정원의 16% 상당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주의 또는 통보 조치를 한 바 있음.

[2023년도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 (지적사항) 다수의 비정규 부서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급 직위 부여 -> (조치할 사항) ① 현재 운영 중인 인사팀 등 비정규 부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즉시 폐지, 정규 직제화 추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비정규 부서를 설치하고 과장급 등 상위직위를 과다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③ 법령에 근거가 없이 운영한 금융국제화대응단 부단장 직위를 2023년 7월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그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통보(시정완료)
○ (지적사항) 비공식 파견 포함, 정원의 16% 상당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 -> (조치할 사항) ①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행정보조 목적, 장기파견 등의 부적정한 파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대외에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③ 비공식 파견자를 2023년 3월 모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 그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함[통보(시정완료)]

금융정보분석원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인력의 경우 비별도 정원으로 국세청·관세청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7인(검사 3인 포함)을, 민간으로부터 3인의 파견인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별도 파견인력은 원소속기관이 결원을 보충할 수 없고 인건비가 원소속기관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31]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3년 말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불필요한 파견직위의 감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32] 금융위원회는 기관 정규직제처럼 6년 이상 장기 운영한 심사분석실·제도운영과의 2인(금융감독원)과 통계관리·동향파악 등 특별한 전문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가상자산검사과 1인(코스콤)을 2023년 말 기준 여전히 파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1) 반면 '별도 정원'은 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음.

32) 금융위원회는 파견자가 원소속기관과의 업무연락 등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파견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파견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불필요한 파견직위의 감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감사원,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2023.12. p.52)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한시조직인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를 2021년 9월 신설한 이후,[33][34]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을 2년(2021.9.17.～2023.9.16.), 9개월(2023.9.17.～2024.6.30.), 1년 6개월(2024.7.1.～2025.12.31.) 연례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한시정원 역시 2021년 9월 신설된 이후,[35]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2021.9.17.～2023.9.16.), 9개월(2023.9.17.～2024.6.30.), 1년 6개월(2024.7.1.～2025.12.31.) 연례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례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정당화되기가 어려움.

33) 2024년 8월 기준 제도운영기획관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인임.

34) 2024년 8월 기준 가상자산검사과 정원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1인, 행정・전산사무관 3인, 행정・전산주사 2인, 행정・전산주사보 1인 총 7인임.

35) 2024년 8월 기준 한시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임.

7.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지연 부적정 등

가. 개 요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및 기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억 5,8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2%)되고, 4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3년도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858	1,858	-	±28	1,858	1,360	493	5	1,058
ISP 수립	83	83	-	28	1,069	573	493	3	-
시스템 고도화	958	958	-						

2023년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내 ‘금융위 업무포털 고도화 ISP’ 8,300만원과 ‘e-금융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9억 5,800만원은 서로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 분리편성 되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 사업’으로 통합하여 발주 후 8억 500만원의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사업예산 8억 500만원 중 선금 4억 250만원은 집행하고 잔금 4억 250만원은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완료하였음.[37)]

36) 일반회계-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32-501)(기획조정관)

37) 2023년 집행액은 5억 7,300만원으로,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사업 4억 250만원과 상용 SW 구매사업 1억 7,000만원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집행하면서 다른 내용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발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감리사업의 추가 집행, 사업의 지연 및 이월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는데,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용대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당초 예산편성 시 ISP 사업계획보다 통합발주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확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통합발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금융위 업무포털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금융위 내부 업무포털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300만원이 반영되었음.

[금융위 업무포털 개선 ISP 사업 예산편성 당시 설명자료]

ㅇ 추진배경 -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의 한계, 필요 기능 미 제공, 보안 취약점 조치 불가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 ㅇ 추진방향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금융위 내부 업무포털 고도화 사업 추진 등 내부 행정업무의 효율화 추진 - 안건관리시스템 등 업무포탈 기능개선으로 내부 직원간 안건 및 정책자료 공유·검색·활용이 가능해져 맞춤형 금융행정 기반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실제 통합수행하여 수행한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의 결과보고 요약본에서는 금융위 내부 업무포털 고도화 사업 뿐만 아니라, 인허가등록신고, 업무연락, 회의체운영, 제재정보 관리 등 금융위원회의 전체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의 ISP 사업계획 대비 과제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사업 내용의 확대 및 통합발주 준비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당초 통합사업 추진 시에는 2023년 4~11월(8개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23년 5월~2024년 1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

2023년 12월 말 수행된 종료감리 단계 보고서의 감리업체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과도한 내용의 제안요청 후 사업수행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임.[38]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개요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도출과제]



자료: 금융위원회

38) ① 고도화 ISP에서 가장 중요한 이행계획 수립 및 구축계획 산출물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② 응용시스템 구현 대상 기능 88개 중 완료 개수는 42개였으며, ③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31건의 데이터 요구사항 중 13건이 적합으로 판정되고, 특히 운영DB 구축 및 데이터 이행 등 다수의 과업이 미완료 상태이므로 조속한 이행 및 일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만 금융위원회는 종료단계 감리(2023.12.18.~22.)에서 지적된 내용은 조치확인 단계(2024.1.4.~5.)에서 대부분 이행 확인되어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견임.

금융위원회는 향후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안 편성시부터 ISP 구축 목표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금융위원회는 당초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ISP 구축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ISP 구축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함에 따라 ‘ISP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감리사업을 수행하였음.

금융위원회는 감리비 미편성 및 감리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감리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9,000만원에 대해 동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6,200만원과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낙찰차액 2,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사업 감리 관련 낙찰차액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7132-501)	2023년 금융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519	30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사업」 감리사업에 사용(28백만원), 불용(2백만원)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사업	805	62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사업」 감리사업에 사용(62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ISP 사업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일부 연관성이 있고 목표모델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와 마찬가지로 ISP 사업에 대해서도 감리를 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라면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정보시스템 감리예산을 각각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임.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정보화사업의 통합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감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8.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유상유지보수 부적정 등

가. 개 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7,400만원 중 5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3년도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74	574	-	-	574	537	-	37	323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포함) 및 관계 기관의 파견인력으로 구성됨.

불공정거래 사건을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긴급·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Track)를 통해 검찰에 바로 통보하고, ‘중요사건’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일반사건’은 금융감독원에 배당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39) 일반회계-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7132-504)(자본시장조사단)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기간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 산정 시 2022년 도입하여 무상유지보수 대상(구입 후 1년)에 해당하는 장비도 유상 유지보수 사업대상에 6개월분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2년 도입 장비(2022.8.22. 도입)의 무상 하자보수 1년 기간을 고려하면, ① 2023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고, ② 유상유지보수 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임.

그런데, 유상 유지보수 계약상 기간(6개월)을 고려할 때 중복 계상 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52일간에 해당하는 101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보아 계약을 체결한 것임.[40]

[2022년 포렌식 장비도입 사업 제안요청서(16p) 중 하자보수 관련 사항]

⑧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범위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ㅇ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의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ㅇ 디지털 포렌식 경력을 보유한 전담 인원 배정을 통한 전문 기술지원 수행 ㅇ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협조 및 관련 가이드 지원 ㅇ 기술지원을 위한 콜센터 조직을 직접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수행 ㅇ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1년)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자료: 금융위원회

40) 2022년 도입 장비는 크게 ①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와 ②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용 콘솔로 나뉘며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에 유지보수 사업비로 산출된 내역은 총 1,014,356원임
1)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 도입 금액(41,800,000원) × 유지보수 요율(약 14.2%) × (52일 / 365일) = 843,397원
2) 콘솔 도입 금액(22,848,000원) × 유지보수 요율(약 5.3%) × (52일 / 365일) = 170,959원

[2023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 산정내역]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비 = (하드웨어×유지보수비율(평균)) + (소프트웨어×유지보수율(평균))
= 13,192,200원 (HW : 94,230,000원 × 0.14) + 58,043,200원 (SW : 362,770,000원 × 0.16)
= 71,235,400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영 현황]

(단위: 대, 원)

구분	장비 명	대수	도입연도	내구연한	금 액	비고
하드웨어	휴대용쓰기방지장치	1	2020년	5년	4,950,000	특사경 +1
	데이터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등	3	1식: 2017년 2식: 2020년	5년	1식: 4,000,000 2식: 34,100,000	특사경 +1
	현장 H/W KIT	2	2020년	5년	8,980,000	
	현장 포렌식 운영 콘솔	6	2022년	5년	24,000,000	특사경 +4
	이미징 장치	1	2020년	5년	13,000,000	
	NAS스토리지 및 L2스위치	1	2020년	5년	17,200,000	특사경 +1
	유상유지보수 대상 (2022년식 제외)				82,230,000	
	전체 (2022년식 포함)				106,230,000	
소프트웨어	모바일데이터 획득 MD-NEXT	3	1식: 2017년 2식: 2020년	라이센스	1식: 23,492,000 2식: 59,400,000	특사경 +2
	모바일데이터 분석 MD-RED	3	1식: 2017년 2식: 2020년	라이센스	1식: 38,658,000 2식: 154,000,000	특사경 +2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MD-LIVE	2	1식: 2017년 1식: 2020년	라이센스	1식: 21,750,000 1식: 36,500,000	
	클라우드 포렌식 솔루션 MD-CLOUD	2	2022년	라이센스	42,000,000	
	디스크 포렌식 솔루션 Encase Forensic	1	2020년	라이센스	7,150,000	특사경 +1
	현장용 디스크 포렌식 Encase Portable	1	2020년	라이센스	500,000	
	증거복구 솔루션	1	2020년	라이센스	180,000	
	문서편집 솔루션	1	2020년	라이센스	140,000	
	유상유지보수 대상 (2022년식 제외)				341,770,000	
	전체 (2022년식 포함)				383,770,00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3년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산출내역서 작성 과정에

서 유지보수의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비 계산 편의를 위해 유상 유지보수기간을 6개월로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52일이 추가 산정되었으나, 전년 대비 유지보수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유지보수 예산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후속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에는 2023년 장비 도입분(2023.12.17.)을 제외하여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유상 유지보수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함.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정확한 유지보수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계약절차의 공정성,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성 및 다른 부처의 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7,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1억 4,200만원 중 1억 1,382만원을 집행하고, 2,818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 유지보수 사업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2023년 예산액	2023년 집행액	불용액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04-210-15)	23년도 디지털포렌식 유지보수	71,000	71,000	-
	23년도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유지보수	142,000	113,818	28,182
합계		213,000	184,818	28,18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받은 포렌식 장비를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나,[41]

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구매한 자산 중 라이선스를 제외한 하드웨어 장비(NAS 스토리지, 콘솔, 워크스테이션 등)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이후 유지보수 사업를 하나의 업체와 연이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유지보수의 단가산정을 경쟁 없이 장비도입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보수비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청 계약절차의 공정성, 다수 업체 간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7~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센터 유지보수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유지보수 업체	계약기간		예산	집행액	방식
		시작일	종료일			
2017년	A 사	2017-03-08	2017-12-31	160,000	124,856	경쟁입찰
2018년	B 사	2018-01-01	2018-12-31	50,000	43,000	경쟁입찰
2019년	B 사	2018-12-19	2019-12-19	100,000	83,160	경쟁입찰
2020년	B 사	2020-01-02	2020-12-31	110,000	96,360	경쟁입찰
2021년	C 사	2021-01-01	2021-12-31	160,000	144,440	경쟁입찰
2022년	C 사	2022-01-01	2022-12-31	160,000	153,860	경쟁입찰
2023년	D 사	2023-01-01	2023-12-31	168,000	161,700	경쟁입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총 괄>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 사업방식 전환 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197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마련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금의 수입은 사실상 법정부담금(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1:1 비중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42] 지출은 저축장려금・기금관리비 및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출이 저축장려금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3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집행률	구 분	계획액		결산	집행률
	당초	수정(A)	(B)	(B/A)		당초	수정(A)	(B)	(B/A)
총 계	54,153	54,153	54,198	100.1	총 계	54,153	54,153	54,198	100.1
자체수입소계	27,120	27,120	27,165	100.2	저축장려	53,082	54,135	54,135	10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80	80	132	165.0	저축장려금 (1631-301)	53,082	54,135	54,135	100.0
법정부담금 (59-593)	27,033	27,033	27,033	100.0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7	7	-	-	기금운영비	1	1	-	-
					기금관리비 (3276-201)	1	1	-	-
정부내부수입 소계	27,033	27,033	27,033	100.0	여유자금운용	1,070	17	63	370.6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27,033	27,033	27,033	100.0	한국은행예치 (9701-970)	10	10	63	630
					통화금융 기관예치 (9701-971)	1,060	7	-	-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2만 2,000좌에 대해 총 1조 2,869억원이 불입되어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541억원 지원되었음.[43)]

[2015~2023년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단위: 천 좌,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가입 계좌수	346	317	296	276	277	267	254	235	222
불입액	11,177	10,037	9,587	9,507	10,319	11,588	12,949	12,903	12,869
저축장려금	988	1,006	831	829	708	678	682	533	541
저축기관 지급금리	3.39	2.59	2.05	2.45	3.11	2.72	1.82	2.91	5.34

자료: 금융위원회

4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소득수준 및 만기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등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일반과 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수준 분류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사실상 단년도 사업추진방식의 기금 운용,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낮은 연계성, 농어민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기금 목적과의 합목적성 및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저축지원 사업방식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과 정부재정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데, ① 한국은행 출연금은 1976년부터 출연된 역사적 사실 이외에 기금 지출사업인 농어민 재산형성과의 연관성이 낮아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출연금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당기순이익은 결국 정부에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세입귀속 후 재정지출이 가능하며, ③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저축장려금 지급에 대부분을 집행하는 단년도 사업추진방식으로 운용되어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결산 (A)	법정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B)	(B/A)	(C)	(C/A)		(D/A)
2017	83,099	41,542	49.99	41,542	49.99	15	0.02
2018	82,961	41,467	49.98	41,467	49.98	27	0.03
2019	70,815	35,395	49.98	35,395	49.98	25	0.04
2020	67,761	33,872	49.99	33,872	49.99	17	0.03
2021	68,240	34,112	49.99	34,112	49.99	16	0.02
2022	53,260	26,615	49.97	26,615	49.97	30	0.06
2023	54,153	27,033	49.92	27,033	49.92	132	0.24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연간 저축한도와 저축장려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존치 의견을 받은 후, 2019년 및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저소득 농어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폐지(일몰)를 권

고 받았음.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저축에 대한 이자지원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며, 낮은 저축한도(연 240만원)로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지원 효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세적으로 연간 수혜대상과 기금의 지출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효과는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며 폐지(일몰)를 권고받았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및 기금운용평가 결과]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	연도	기금존치평가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 적정성	기금존치 타당성
2013	아주미흡	2013	개선	부적정/적정	조건부존치
2015	아주미흡	2016	개선(조건부존치)	적정	조건부존치
2017	아주미흡	2018	개선	-	조건부존치
2019	아주미흡	2019	폐지(일몰)	적정	폐지(일몰)
2021	아주미흡	2022	폐지(일몰)	부적정	폐지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9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44] 농어민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부족한 상황임.[45]

---

44) 이데일리,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 범위 확대된다”, 2023.9.12.

45)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취 급
근 거</td><td colspan="5">o 1976. 3. 30 :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o 1985. 12.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정</td></tr>
<tr><td>실 시
기 간</td><td colspan="5">o 1986. 1. 1.(1976. 4. 1.) ~ 계 속</td></tr>
<tr><td>취 급
기 관</td><td colspan="5">o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td></tr>
<tr><td rowspan="7">가 입
대 상
(법 시행령
제2조 참고)</td><td>구 분</td><td colspan="2">개정 전</td><td colspan="2">개정 후</td></tr>
<tr><td></td><td>일반농어민</td><td>저소득농어민</td><td>일반농어민</td><td>저소득농어민</td></tr>
<tr><td>농 민</td><td>1ha초과~2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
타인농업종사자</td><td>1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td><td rowspan="4">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023년 기준: 월 297,600원)</td><td>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td></tr>
<tr><td>어 민</td><td>5톤 초과~20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어민, 어선원</td><td>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td><td rowspan="2">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td></tr>
<tr><td>양축가</td><td>젖소 20마리 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td><td>일반 양축가의 1/2이하의 가축소유 양축가</td></tr>
<tr><td>임업인</td><td>5ha초과~10ha이하 산림·토지 소유(임차) 임업인</td><td>5ha 이하 산림·토지 소유(임차) 임업인</td><td>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023년 기준: 월 220,900원)</td></tr>
<tr><td>(가입제한)</td><td colspan="4">타 분야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td></tr>
<tr><td rowspan="2">가 입
한 도</td><td>구 분</td><td colspan="2">일반농어민</td><td colspan="2">저소득농어민</td></tr>
<tr><td>3년·5년</td><td colspan="4">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td></tr>
<tr><td rowspan="4">이자율
·
저축장려금</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4">이자율(%)</td></tr>
<tr><td colspan="2">일반</td><td colspan="2">저소득</td></tr>
<tr><td>3년 만기</td><td colspan="2">연 0.9</td><td colspan="2">연 3.0</td></tr>
<tr><td>5년 만기</td><td colspan="2">연 1.5</td><td colspan="2">연 4.8</td></tr>
<tr><td colspan="5">*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 기본금리 변경(매년 1.1. 변경) :
(2016)2.59%→(2017)2.05%→(2018)2.45%→(2019)3.11%→(2020)2.72%→(2021)1.82%→(2022)2.91%→(2023)5.34%→(2024)4.04%</td></tr>
<tr><td>장려금재원</td><td colspan="5">o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해당 사업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농어민)에게 정책금융의 목적(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재정운용 방식을 일반회계 출연사업으로 전환(기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1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이 논의한 바 있으나, 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관련 논의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46]

4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개편 관련 기관별 의견(2024.1.)
- ㅇ (농림부) 기금사업 및 금융위 존치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하며,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 필요
- ㅇ (기재부) 소관 이관은 농림부-금융위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ㅇ (한은) 재정의 화폐화 우려 등 감안시 한은 출연은 부적절
- ㅇ (국조실) 국회 등은 농림부 이관, 일반회계 전환 등을 오랫동안 언급하였으며 제도개편 관련 전향적인 검토 필요

【공적자금상환기금】

<총 괄>

10. 일반회계전입금 등: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부진 등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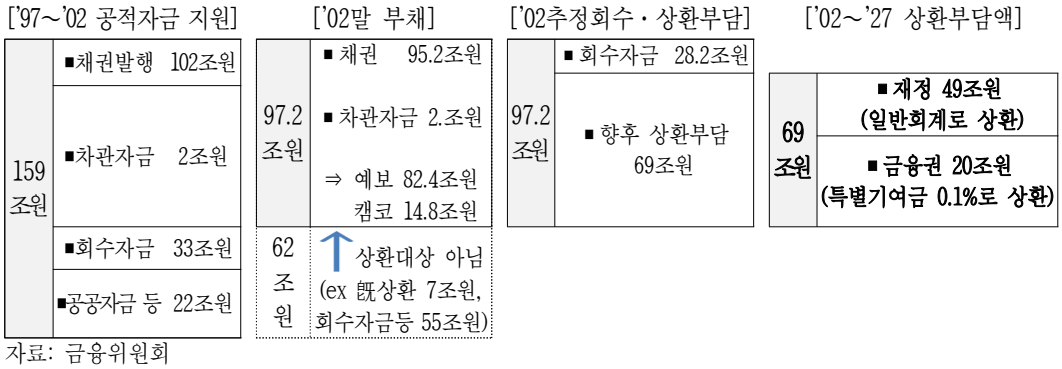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국채발행자금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2012년 말 종료)에 출연(2003~2006년)한 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위한 계정성 기금임.[47)]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 총 투입된 159조원 중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원금은 97.2조원이며, 이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2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을 2027년까지 25년간 정부(49조원)와 금융권(20조원)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음.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가 기준)을 출연하고 우체국 예금・보험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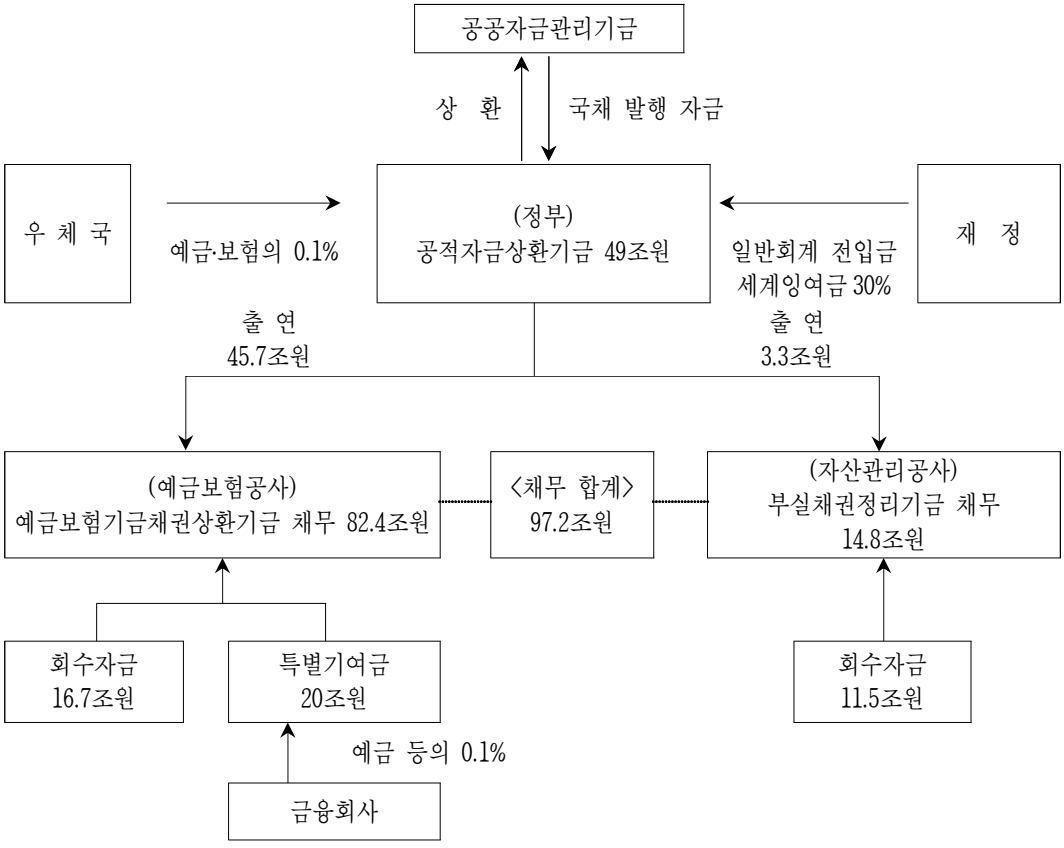
47) 공적자금(Public Funds)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으로, 공적자금 지원은 2002년 말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21.8.)

[공적자금 상환 연혁]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상환 구조도]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주식 매각, 일반회계전입금의 계획 대비 축소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액 11조 193억 1,200만원의 80.6%인 8조 8,83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음.

①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조 6,000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수납되었고,

② (재고자산매각대) 현물 반환 받은 주식등의 매각대금은 당초 계획인 180억 2,800만원 중 5억 3,400만원만 수납되어 당초 매각계획의 3% 수준에 불과하며,

③ (세계잉여금이입액)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1조 6,843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이입액 1조 9,970억 2,800만원의 84% 수준임.

④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은 당초 계획액 2조 1,600억원의 14%인 3,038억 6,000만원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고,[48] 이는 세수부족에 따라 자금이 미배정되었기 때문임.

⑤ (특별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액 797억 8,600만원(우체국예금 평균잔액의 0.1%)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액 309억 1,900만원(우체국보험 평균잔액의 0.1%)을 더한 1,107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액 1127억 5,700만원의 98.2% 수준임.

48) 일반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8411-880)

⑥ (기금예수금) 기금예수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당초 계획액 6조 1,282억 400만원 중 2조 40억원을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한 4조 1,242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수납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11,019,312	9,015,312	8,883,298	98.5	총 계	11,019,312	9,015,312	8,883,298	98.5
기타재산이자 수입 (54-546)	323	323	1,463	453.0	기금관리비 (3574-201)	5	5	3	61.8
기타경상이전 수입 (59-593)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재고자산매각대(73-731)	18,028	18,028	534	3.0	자산매각비 (3574-203)	75	75	2	2.9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	-	93	-	한국은행예치 (9710-970)	-	-	12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	-	58,100	-	통화금융기관 예치 (9715-971)	18,202	18,202	-	-
세계잉여금 이입(89-892)	-	-	1,684,34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111-841)	10,342,600	8,345,572	8,345,572	100.0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2,160,000	2,160,000	303,860	14.1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91-912)	112,757	112,757	110,705	98.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9211-842)	658,430	651,458	537,709	82.5
기금예수금 (94-943)	6,128,204	4,124,204	4,124,204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계획액 10조 3,426억원을 8조 3,455억 7,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금 예수이자상환 사업 계획액 6,584억 3,000만원을 6,514억 5,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한 후 5,377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20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대신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등 추가적인 상환을 못하여 발생한 미상환분은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49]

첫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 당초 전입금 계획액의 14% 수준만 전입하였고,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세계잉여금 이입을 이유로 공적자금을 계획대로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미래 상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2023년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을 당초 2조 1,6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3,038억 6,000만원만 집행하였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임.

이로 인해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계획현액 2조 1,600억원 중 3,038억 6,000만원만 수납되었음.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전입금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	1,856,140	14.1	-

금융위원회는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을 세계잉여금으로 보충하였다는 의견이나, 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별개의 내용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입금대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대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입되어야 함. 「국가재정법」 및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전년도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50]

---

4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04호, 2002. 12. 26.>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최근 10년 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세계잉여금 이입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액 집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세계잉여금 이입을 이유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공적자금 상환의지를 실현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금융구조조정 당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2027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전액 상환하고 미래세대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한대로 일반회계에서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해 공자기금 상환을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50)「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10년 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15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100.0
2016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00.0	100.0
2017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00.0	100.0
2018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100.0
2019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100.0
202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100.0
2021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100.0
2022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100.0
2023	2,160,000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14.1	100.0
2024	2,500,000	2,500,000	2,500,000	-	-	-	-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10년 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세계잉여금이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15	-	-	-	28,918	28,918	-	100.0
2016	-	-	-	758,300	758,300	-	100.0
2017	-	-	-	684,876	684,876	-	100.0
2018	-	-	-	1,219,786	1,219,786	-	100.0
2019			-	38,500	38,500	-	100.0
2020	-	-	-	-	-	-	-
2021	-	1,036,180	-	1,036,180	1,036,180	100.0	100.0
2022	-	1,997,028	-	1,997,028	1,997,028	100.0	100.0
2023	-	-	-	1,684,340	1,684,340	-	100.0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재고자산매각대는 보유주식의 매각을 연례적으로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고 실제 매각실적은 부진함에 따라, 지출 측면에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13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후 현물로 받은 舊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각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23년에서야 비로소 한화오션 신주인수권의 일부 매각에 성공하여 5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음.

보유주식 매각을 전제로 한 재고자산매각대의 과도한 수입계상은 재고자산매각대의 미수납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계획액보다 적게 상환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는 보유주식 매각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51)]

[최근 10년 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14	289,038	289,038	289,038	-	-	-	-
2015	390,539	390,539	390,539	-	-	-	-
2016	272,363	272,363	272,363	-	-	-	-
2017	81,848	81,848	81,848	-	-	-	-
2018	44,117	44,117	44,117	-	-	-	-
2019	28,256	28,256	28,256	-	-	-	-
2020	30,085	30,085	30,085	-	-	-	-
2021	22,749	22,749	22,749	-	-	-	-
2022	28,295	28,295	28,295	-	-	-	-
2023	18,028	18,028	18,028	534	534	3.0	100.0
2024	30,099	30,099	30,099	-	-	-	-

자료: 금융위원회

셋째,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의 절반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공자기금 차환을 통한 재원 마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조 1,242억원은 2023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

51) 2023년 말 기준 보유주식인 한화오션 232만 5,577주는 2024.5.27. 기준 716억 2,780만원 수준임.

입 규모(8조 8,833억원)의 46.4%에 해당하여, 사실상 마련된 재원의 절반 가량은 부채로 조달한 것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액 8조 3,456억원의 49.4%로 부채 상환액 중 절반은 차환을 통해 마련한 것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는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자금상환을 위한 차환을 최소화하고, 보유주식의 매각・예보채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52)]

한편,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11조 193억 1,200만원을 감액 변경한 계획현액 9조 153억 1,200만원 중 8조 8,83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액은 당초 11조 10억원에서 8조 8,833억원으로 2조 1,177억원(19.3%)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공적자금을 80% 수준만 상환한 것임.

금융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당초 원리금 상환스케쥴에 맞추어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안정적인 청산을 위해, ①보유 자산 매각, ②신규 공자기금 예수 최소화를 통한 신규 부채 및 이자 부담 최소화, ③재정 지원 등 상환 재원 마련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스케줄]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 (~2023)	7.1	7.0	8.9	-	-	-	-
원리금 상환계획 (2024~2027)	-	-	-	10.3*	8.4*	9.0*	5.4*
잔액(원금)	38.6	32.2	28.0	21.9*	13.9*	5.2*	-

주) 2024~2027년은 확정금액이 아닌 계획액으로, 실제 예산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52)「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 출>

11.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의 전출 규모 확대 필요

가. 개 요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보채상환기금”)의 부채상환 완료 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전출하려는 것으로,[53] 2023년 계획현액 2조 6,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4]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2,600,000	-	-	2,600,000	2,600,000	-	-	4,250,000

참고로, 2023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수입은 4조 9,046억 3,400만원으로, 법정부담금(부보금융회사 평잔의 0.1%) 2조 4,927억 9,800만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조 8,610억 8,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04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됨.

5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부칙 제6807호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5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금융정책국)

2023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지출은 4조 9,046억 3,400만원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조 6,000억원, 통화금융기관 예치 9,233억 5,4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조 3,774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3,463,019	3,463,019	4,904,634	141.6	총 계	3,463,019	3,463,019	4,904,634	141.6
정부출자수입 (52-521)	156,451	156,451	277,801	177.6	전입금환급 (1131-310)	84,245	84,245	-	-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54-542)	17,375	17,375	57,263	329.6	소송및법적절차비 (1131-360)	1,469	1,469	220	15.0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54-543)	1,268	1,268	12,523	987.6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131-370)	2,226	2,226	57	2.5
기타민간이자 수입 (54-544)	36,442	36,442	36,442	100.0	인건비 (3575-101)	3,019	3,019	2,930	97.1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54-547)	-	-	1,674	-	기금관리비 (3575-201)	429	429	633	147.5
법정부담금 (59-593)	2,323,213	2,323,213	2,492,798	107.3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8901-901)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기타경상이전 수입 (59-596)	-	-	4,608	-	통화금융기관 예치 (9705-971)	770,594	770,594	923,354	119.8
재고자산매각대 (73-731)	215,642	215,642	80,000	37.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5-972)	1,037	1,037	1,377,440	132,829.3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631,534	631,534	1,861,080	294.7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3)	81,094	81,094	80,446	99.2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시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운용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1년 8월 차입부채를 상환완료한 이후, 우리금융지주·한화생명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금, 법정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 등의 수입 발생 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또는 여유자금으로서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에는 법적 부담금 수준인 2조 6,000억원만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참고로, 2023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평잔은 1조 8,425억원이고, 평균수익률은 4.12%였음.

[최근 3년간 예보채상환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MMF (수익률)	국공채형 (수익률)
2021년	828,542	828,542 (0.94%)	739,946 (0.95%)	88,596 (0.82%)	-
2022년	1,403,176	1,403,176 (2.40%)	1,139,689 (2.45%)	263,487 (2.32%)	-
2023년	1,842,499	1,842,499 (4.12%)	1,330,944 (4.05%)	299,047 (3.90%)	212,508 (5.01%)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예치금은 사실상 금융권 특별기여금 및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2021년 1조 400억원, 2022년 5,000억원, 2023년 1,3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지분 매각대금을 바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지 않고 2023년까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 후 2024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일부 전출할 예정임.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국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편성 및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여유자금 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 재정수입을 담보로 차입을 통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2023년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액을 늘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차환을 줄이는 것이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함.

둘째, 한화생명 보유지분 매각과 서울보증보험 IPO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보유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예보채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신속히 상환할 필요가 있음.

예보채상환기금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출연 등을 통해 보유한 주식등의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예보채상환기금의 출자금융회사는 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우리금융지주 및 수협중앙회(우선출자증권) 등임.

[2023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지분 보유회사 현황]

(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회사명	총지원액	회수액	지분율	장부가액
서울보증보험	102,500	46,136	93.85	1,361
한화생명	35,500	25,071	10.00	2,458
우리금융지주	127,663	128,797	1.24	1,267
수협중앙회	11,581	4,807	-	-

자료: 예금보험공사

이 중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MOU를 통해 미상환잔액 상환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국채를 수령하고, 2027년까지 연도별 국채 만기 시 현금을 회수할 예정이고,[55] 2024년 3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935만 7,960주(지분율 1.24%)를 1,366억원에 매각하여 우리금융지주 관련 공적자금 상환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였음.

그러나, 2023년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6,552만 8,906주(지분율 93.85%)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을 시도하였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상장이 무산된 바 있고, 2025년 상반기 소수지분(10%이상)에 대한 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할 계획임.[56] 또한, 한화생명 잔여지분 8,685만 7,001주(지분율 10.0%)도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금융위원회는 예보채상환기금의 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지분에 대해서 2027년 내 매각 및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각대금 발생 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5)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 4,374억원

56)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수정 및 IPO 재추진”, 2024.3.19.

【신용보증기금】

<지 출>

12.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대환보증 계획액 과다추계 및 연도 중 사업내용 임의 변경 부적정

가. 개 요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권 등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시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당초 계획액은 2,237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1,206억원을 감액하여 계획현액 1,031억 3,100만원 중 247억 8,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83억 4,300만원은 불용하였음[57)]

[2023년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223,731	103,131	-	103,131	24,788	-	78,343	254,436

참고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2022년 9월 말부터 운영 중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 2023년도 본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을 받았고,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편성하고 있음.

57) 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금융정책국)

나. 검토의견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을 과다추계하여 공급실적이 목표 대비 부진함에 따라 매년 연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대환보증 및 대위변제 규모를 적절하게 추계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국회에서 심의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5.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저리대출에 대해 보증(대출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말부터 시행 중임.

그러나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시행 이후, 동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매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및 전체 보증총액별 비교]

(단위: 억원, 개사, %)

구분	2022년		2023년	
	대환보증	보증 전체	대환보증	보증 전체
보증잔액	2,316	833,689	11,276	816,227
순증	2,316	47,801	8,960	△19,269
업체수	6,959	590,972	21,344	559,422
보증공급	2,321	646,493	9,504	669,483
보증부실	2	15,588	602	27,302
(부실률)	0.1%	1.9%	5.3%	3.3%
대위변제	-	10,790	244	20,227
(변제율)	-	1.3	2.2%	2.5%
출연금	6,800	20,713	800	14,151
(정부출연금)	6,800	9,600	800	837
순자산	6,730	105,482	7,159	117,227
운용배수	0.3	7.9	1.6	7.0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8조 5,00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6,800억원, 2023년도 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1조원을 목표로 출연금 8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 말 기준 누적공급액은 1조 1,654억원, 보증잔액은 1조 1,276억원이며 이는 각각 목표 공급액 9조 5,000억원의 12.3%, 11.9%에 불과함. 운용배수 역시 1.6배로 매우 낮은 상황임.

소상공인 대환보증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 및 의결을 마친 이후 2023년 2회, 2024년 1회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있음.

2023년 3월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삭제되었고, 지원액이 2배로 확대되었으며,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2023년 8월에는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당 2,000만원까지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된 2023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보증료율이나 적용금리가 인하되었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내용 변경내역]

	2022.9.30. ~2023.3.12.	2023.3.13. ~2023.8.30.	2023.8.31. ~2024.3.17.	2024.3.18. ~현재
목표 공급규모	‣ 8.5조원	‣ 9.5조원		
신청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은 정상차주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코로나피해 관련 요건 면제)		
금리 요건	‣ 연 7% 이상 고금리대출			
대출 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	
시기 요건	‣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0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목적 가계대출) 2020.1.1 ~2022.5.31. 중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0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목적 가계대출) 2020.1.1 ~2023.5.31. 중 취급된 대출
차주당 대출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 (법인기업) 1억원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개인기업) 1억원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 대환한도 2천만원 포함) ‣ (법인기업) 2억원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1.0% / 일시납(일부연납)	‣ (1~3년차) 0.7% (4~10년차) 1.0% / 10년치 일시납시, 총액의 15% 할인		‣ 최초 1년간 0.7%p 추가 감면 (은행 출연)
중도상환 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만기구조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 (3~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 (1년차) 최대 5.0% ‣ (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운용기한	‣ 2023.12.31.까지	‣ 2024.12.31.까지		

주) 밑줄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이 부진함에 따라, 2023년 대환보증 대위변제 역시 당초 계획액 2,237억 3,100만원의 11%인 247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자체 변경)을 통해 대환보증대위변제 1,206억원을 소상공인위탁보증대위변제로 변경하였음.

[2023년 대위변제 사업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건명	구분	세부사업	목	세목	2023년 계획현액	변경액	변경후 금액
2023.10.5. (제3차)	소상공인위탁보증대위변제 내 예비비및기타(목) 증액	지출	소상공인위탁보증대위변제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및 손실금	364,618	+220,600	585,218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328,007	△100,000	228,007
			대환보증대위변제			223,731	△120,600	103,131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액 및 대환대출 대위변제액을 과다계상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체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기금운용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및 심사를 저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 괄>

13. 구상권관리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 철저 및 회수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구상권 관리’ 사업은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소송·공탁·경매 등 법적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58] 2023년도 계획액은 117억 6,6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100억 1,0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217억 7,600만원 중에서 199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5,600만원이 불용되어음(집행률 91.5%).

[2023년도 구상권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구상권관리	11,766	21,776	-	-	21,776	19,920	-	1,856	23,156

구상권 관리 사업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등을 한 후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 구상권을 회수하게 되면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계상되는데,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등 구상권의 행사에 의한 구상권 회수금, 법인세 환급금 및 구상권관리비 환수액 등으로,[59] 2023년도 계획액은 1,456억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조 7,986억 5,600만원 중 1,433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1%) 1,740억 3,5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5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구상권관리(2631-301)(금융정책국)

5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금융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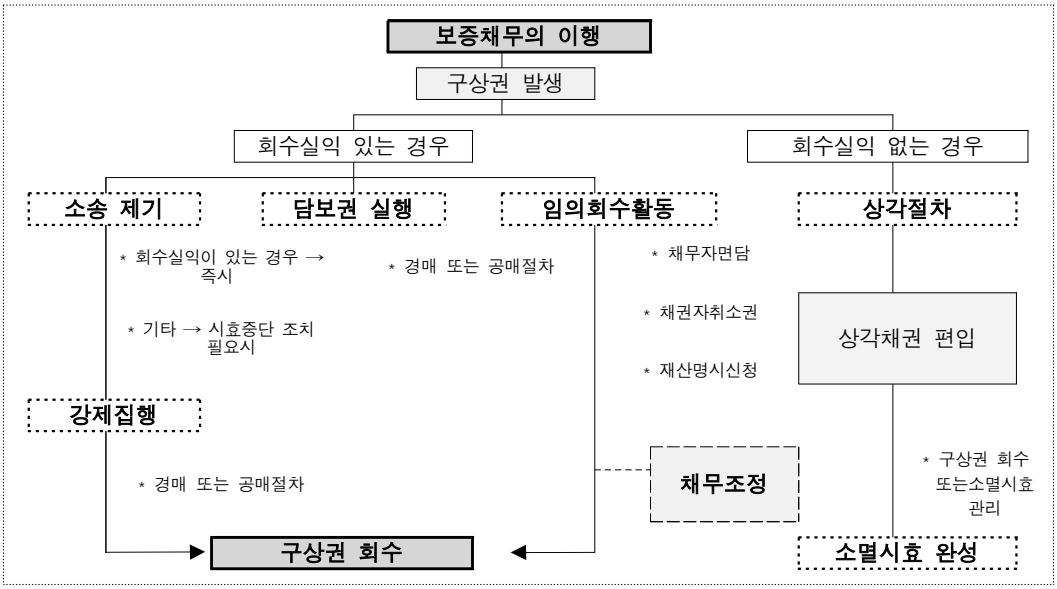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145,612	145,612	2,798,656	143,348	174,035	2,481,273	5.1	-

구상권관리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공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조사를 실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수행함. 이후 임의상환 독촉, 강제집행, 소송 등을 통해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구상권관리 사업 집행 절차]



나. 검토의견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관리대상인 구상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납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불납결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상권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구상권관리 사업의 결산액을 보면, 2018년 113억 2,800만원에서 2023년 199억 2,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특히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으로 1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수요에 대응하여 3차례 증액을 통해 당초 계획액의 84.9% 수준인 100억원을 증액하였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구상권 관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8년	13,356	13,356	-	13,356	11,328	84.8	-	2,028
2019년	11,437	11,437	-	11,437	10,601	92.7	-	836
2020년	11,003	12,338	-	12,338	11,478	93.0	-	860
2021년	13,703	13,703	-	13,703	8,130	59.3	-	5,573
2022년	13,400	13,400	-	13,400	11,241	83.9	-	2,159
2023년	11,776	21,776	-	21,776	19,920	91.5	-	1,856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 구상권관리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2023.7.5 (2차)	자체 변경	대위변제 (주신보) (2631-303)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91,83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95,359
		구상권관리 (주신보) (2631-3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529			
2023.9.7 (4차)	기재부 협의	대위변제 (주신보) (2631-303)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137,60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140,426
		구상권관리 (주신보) (2631-3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820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2023.11.27 (6차)	자체 변경	구상권관리 (주신보) (2631-301)	일반수용비 (210-01)	257	보증료환급 (2631-302)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3,661
		구상권관리 (주신보) (2631-3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404			

자료: 금융위원회

구상권 관리 사업은 전세보증 관련 보증사고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및 공탁 등으로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채무자가 보증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법원은 「민사집행법」제280조제3항에 근거하여 채권보전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령하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 및 현금 공탁을 실시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 악화·금리인상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규유입 채무자 동반 증가로 인해 공탁비용이 증가하였고, 최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시 담보제공금액의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령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탁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최근 채권보전조치 및 법원 공탁 집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채권보전조치							
건수	2,001	2,056	2,047	1,555	1,612	2,269	840
집행실적	1,870	2,033	1,987	1,328	1,743	1,841	722
법원 공탁							
건수	912	851	920	582	728	1,183	374
집행실적	7,110	6,979	7,930	5,168	7,976	16,637	5,088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집행액 대비 구상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임. 2023년 구상권 회수액은 1,259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203억원보다 많으나, 구상

권 발생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2023년 21.4%로 최근 5년 평균인 54.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주택신용보증계정 구상권 발생액 및 회수액]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상)
구상권 발생액(A)		2,989	2,150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15,588
회수	연도중(B)	1,846	1,355	1,145	1,182	1,447	1,145	1,098	1,259	1,823
	누계(C)	18,392	19,747	20,892	22,074	23,521	24,666	25,764	27,023	28,846
구상권 잔액		31,628	30,616	27,418	24,259	21,829	21,051	21,769	24,671	34,819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		61.8	63.0	61.2	66.2	58.2	50.1	34.7	21.4	11.7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구상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구상권 회수금이 대부분인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살펴보면, 2023년 1,433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1%) 1,740억 3,5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여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많았음.

불납결손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각각 649억 1,400만원, 237억 9,2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51.0%를 차지하고, 시효완성과 기타 회수불가능이 404억 7,900만원, 448억 5,000만원으로 나머지를 차지함.

[2023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형별 불납결손 처리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신보계정	주연보계정
시효완성	40,479	-
파산면책	23,792	-
개인회생	64,914	-
기타 회수불가능	44,850	6
합 계	174,035	6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구상권의 회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① 구상권관리 집행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반면 구상권회수의 경우 분할상환 등 장기간 회수되어 회수시차가 발생하고, ②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채무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3년 말까지 구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구상권 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③ 신용회복위원회[60] 및 개인회생 채무조정이 증가[61]하여 구상권 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채권보전조치·법원공탁 등 구상권 관리를 통해 구상권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액의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파산면책·개인회생이 아닌 시효완성 등으로 인해 불납결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상권 회수가 부진할 경우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보증 규모를 줄이거나, 금융기관 출연금 등 기타 보증재원을 늘려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회수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상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0)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강화」(금융위, 2021.12.29.)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 협약으로, 20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및 원금감면율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61) (신복위 채무조정 실적) 2022년 668억원 → 2023년 841억원
(개인회생 채무조정 실적) 2022년 1,169억원 → 2023년 1,519억원

<지 출>

14. 대위변제 사업: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대신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3,061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883억 4,5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5,944억 4,500만원 중 5,890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53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62)]

[2023년도 대위변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위변제	306,100	594,445	-	-	594,445	589,067	-	5,378	669,400

나. 검토의견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인해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계약 관련 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액을 보면, 2018년 1,869억 9,700만원에서 2023년 5,944억 4,5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특히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으로 3,06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증가한 대위변제 집행소요에 대응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당초 계획액의 92.5% 수준인 2,88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음.

6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대위변제(2631-303)(금융정책국)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8년	290,000	290,000	-	290,000	186,997	64.5	-	103,003
2019년	248,000	248,000	-	248,000	178,398	71.9	-	69,602
2020년	240,000	253,130	-	253,130	248,767	98.3	-	4,363
2021년	281,000	281,000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년	291,200	320,000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년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99.1	-	5,378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목-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3.7.5.	710-03	대위변제	91,830	주택경기 위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집행소요 증가
기재부협의변경	2023.9.7.	710-03	대위변제	137,606	
기재부협의변경	2023.11.30.	710-03	대위변제	58,909	
합 계				288,345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2023년의 대위변제액이 확대된 것은 주로 전세보증자금의 보증잔액 및 사고발생액 증가에서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상품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보증잔액 130조 8,230억원 중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잔액은 87조 9,913억원(6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은 9조 6,557억원(7.4%)을 차지함.

주택금융신용보증의 총 대위변제액은 5,891억원이고,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이 4,983억원(84.6%)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840억원(14.3%)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위변제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전세자금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0.57%로 2022년 0.34%에 비해 0.23%p 증가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0.87%로 2022년 0.15%에 비해 0.72%p 증가하였음.

[보증유형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월
총계	보증공급액	454,692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208,927
	보증잔액	775,180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12,132
	대위변제액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1,854
	대위변제율	0.24	0.20	0.24	0.20	0.26	0.45	0.14
	보증사고액	3,564	4,001	3,829	3,631	5,450	10,594	3,600
	보증사고율	0.46	0.45	0.36	0.31	0.44	0.81	0.27
	운용배수	10.9	11.0	13.3	13.4	13.7	12.6	12.6
	기말기본재산	71,125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100,176
	기본재산증감	9,985	10,570	△2,519	7,478	2,339	11,183	-
전세자금보증	보증공급액	336,025	403,196	506,948	493,353	546,800	529,299	145,189
	보증잔액	503,622	641,749	784,650	857,191	888,598	879,913	869,188
	대위변제액	1,813	1,689	2,386	2,166	3,053	4,983	1,420
	대위변제율	0.36	0.26	0.30	0.25	0.34	0.57	0.16
	보증사고액	2,621	2,936	3,061	3,244	4,909	7,100	1,881
	보증사고율	0.52	0.46	0.39	0.38	0.55	0.81	0.2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공급액	-	-	2,941	10,700	30,650	68,298	22,058
	보증잔액	-	-	2,928	13,384	41,849	96,557	113,164
	대위변제액	-	-	-	-	61	840	424
	대위변제율	0.00	0.00	0.00	0.00	0.15	0.87	0.38
	보증사고액	-	-	-	-	109	1,013	497
	보증사고율	0.00	0.00	0.00	0.00	0.26	1.05	0.44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리인상 및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개인보증 상품별 보증사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개인보증 사고발생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 확대에 따라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감소하였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대출 상환부담 가중으로 사고발생은 증가하여 보증사고율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율이 증가하였다고 밝힘.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2020년 7월 상품도입 이후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보증기한 만료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과 동시에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보증금 미환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전세계약 관련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차인의 전세자금보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증가하고 있어 보증사고율과 보증공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계약 관련 보증심사 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초 계획액 수준만큼 증액변경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보증유형별 대위변제 추계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보증유형별 대위변제 계획액 및 집행액 비교]

(단위 : 억원, %)

계정	사업명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주택금융신용보증	개인보증	[2,372억원(전년도 사고잔액 예상액)+2,879억원(당해연도 사고순증 예상액)×0.5]×73.2%(최근3년(2019~2021)내 최대 구상채권발생률)	2,792	5,035	180.3
	반환보증	[475억원(전년도 사고잔액 예상액)+180억원(당해연도 사고순증 예상액)×0.5]×11.4%(예상 대위변제율)	204	840	411.8
	사업자보증	232억원(사고발생 예상액)-28억원(사고정상화 예상액)	65	16	24.6
합 계		3,061		5,891	192.5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800만원(2.2%) 많은 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원(△28.7%)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39	539	1,179	640	823	823	841	18	△338
총수입	539	539	1,179	640	823	823	841	18	△338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7억 7,200만원(△5.0%) 적은 90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00만원(1.9%)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3,288	92,793	88,484	△4,309	94,958	94,958	90,186	△4,772	1,702
총지출	93,288	92,793	88,484	△4,309	94,958	94,958	90,186	△4,772	1,702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억 2,300만원으로 11억 1,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억 4,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5.6%)되고, 2억 7,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23	823	-	823	1,113	841	-	271
합 계	823	823	-	823	1,113	841	-	271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49억 5,800만원으로, 이 중 901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고, 11억 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억 7,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4,958	94,958	-	±839	-	94,958	90,186	1,196	3,576
합 계	94,958	94,958	-	±839	-	94,958	90,186	1,196	3,576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4억 6,100만원이 감소한 320억 5,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4억 4,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38억 4,200만원이, 기타비유동자산이 13억 4,0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 증가한 4억 2,2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6,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8억 1,300만원 감소한 316억 3,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15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1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2,059	35,520	△3,461	△9.7
		유동자산	2,443	488	1,955	400.6
		투자자산	50	74	△24	△32.4
		일반유형자산	21,700	21,910	△210	△1.0
		무형자산	7,863	11,705	△3,842	△32.8
		기타비유동자산	3	1,343	△1,340	△99.8
	부 채		422	70	352	502.9
		유동부채	363	-	363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59	70	△11	△15.7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1,637	35,450	△3,813	△10.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1,541	98,990	2,551	2.6
	재정운영순원가		101,540	98,968	2,572	2.6
	재정운영결과		101,540	98,968	2,572	2.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를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9개 세부사업에서 종합상담창구운영, 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수납실적의 제고 및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시 관계법령의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예산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연례적 과소계상이 확인되고,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를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셋째,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이 확인되므로, 향후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시 관계법령의 신중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과태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 징수결정액 1억 2,800만원 중 수납액 없이 과오납금반환금 6,200만원이 발생(수납률 △48.4%)되어 음(-)의 수납이 이루어졌음.[2)]

[2023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110	110	128	△62	-	190	△48.4	160

2) 일반회계-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금반환금이 발생하였음. 향후 수납실적 제고 노력과 더불어 이행강제금 부과시 관계법령의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의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최대 42.3%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23년에는 수납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송 패소로 과오납금반환금이 발생하여 음(-)의 수납이 확인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과태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결산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C/A	C/B
2020	30	147	37	-	110	123.3	25.2
2021	60	200	40	-	160	66.7	20.0
2022	100	260	110	-	150	110.0	42.3
2023	110	128	△62	-	190	△56.4	△48.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는 2023년 과태료 수납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3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미 수납된 6,200만원을 과오납처리하여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임.

[2023년 과태료 관련 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차수)	결정일 (반환일)	반환액	비고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2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12-18 (2023-12-2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2023.12.18.)
합계		△62	-

주) 같은 원인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차 이내, 회차당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과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법령의 해석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패소결과만 부각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처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임.[3)]

그러나 비교적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아래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법적 근거 부재가 문제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로 패소하였음.

[최근(2024.3.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소송 2건의 요지]

<사례 1: OO고등학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요지> 원고들이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신법 제62조의6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례 2: OO센터 신분보장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요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법 제62조의3에서 정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아닌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신법 제6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 대법원 판결(2024.3.4.)이 위에 인용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입과목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이 어느 과목에서 반납되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을 세출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제1항[4)]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과오납금의 반납은「국고금 관리법」 제15조[5)]에 따라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

3)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1심에서는 원고 승소, 2심에서는 피고(위원회) 승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심급별로 소송결과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4)「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5)「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과태료 과목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패소로 인하여 이전 연도에 납부된 과태료 6,200만원을 과오납처리하여 반환하게 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과오납금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었음.

[2023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110	110	128	△62	-	190	△48.4	16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과태료 과목의 수입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국고업무해설」[6] 및 디지털전자회계시스템(D-Brain)의 안내 등에 따라 수입징수관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처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특정 수입과목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기관의 총 수입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입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처리하게 되면, ① 국회 결산심사에서 수입과목에서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반환액이 다른 어느 과목에서 반환되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②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목에서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조[7]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오납금반환금 발생 시 지급 가능한 재원의 범위를 해당 수입 과목의 수납액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세출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6) 「한국은행 국고업무해설」(2015.7.), 120쪽
3.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
O. **환급·반환금은 지출이 아니므로 자금계획과는 관계없이 해당 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처리되며,** 소속 회계계정의 잔액이 여유가 있더라도 수입징수관계좌 잔액 부족시 취급불가

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세 출>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연례적 과소추계 및 부적정한 전용 지양

가. 개 요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위해 금전적 급부를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홍보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억 7,900만원 중 42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832	2,832	-	1,447	4,279	4,274	-	5	2,989

8) 일반회계-부패신고자 보호보상(1136-364)(심사보호국)

나. 검토의견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고, 부족분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인건비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 예산에 대해 적정한 금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동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3년에 동 기간 최대 규모인 14억 4,2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2020-2023)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A)	실집행액(B)	부족분(B-A)
2020	3,233	3,878	645
2021	2,582	3,540	958
2022	2,682	2,999	317
2023	2,832	4,274	1,44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는 부패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매년 과소추계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예산안 편성시점 추세가액이 한 차례 이상 감액조정되면서 과소추계가 심화되었음.

[최근 4년간(2020-2023) 부패신고자 보상금 산출내역]

연도	산출내역
2020	최근 3년간(16-18) 1건당 평균지급액(20,321천원) × 예상 처리건수(108건) = 3,108백만원
2021	최근 3년간(17-19) 평균 보상금 지급액(2,509백만원)에서 지출한도 고려하여 **일부 차감한 2,457백만원 요구**
2022	최근 3년간(18-20) 평균 보상금 지급액(3,085백만원)에서 지출한도 고려하여 **일부 차감한 2,857백만원이 재차 감액조정된 2,557백만원**
2023	최근 3년간(19-21) 보상금 평균 지급 단가(10,390천원)에서 지출한도 고려하여 **일부 차감한 8,990천원에 평균 지급건수(약 300건)을 곱한 2,797백만원이 재차 감액조정된 2,697백만원**

주) 굵은 글씨: 추세가액의 감액조정 내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의 일시적 집행부진이 추세가액에 반영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이 과소추계되었다는 입장이나, 2019년 추세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10억원 규모의 단일 신청건은 특이치에 불과하여 추세가액에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적고, 추세가액을 조정한 결과 과소추계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추계

방식이 적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9] 그런데 동 사업에서는 예산의 부족분 4억 4,600만원을 인건비 중 보수(110-01목)[10]를 전용하여 동 사업 포상금(310-03목)에 충당하고 있어, 예산 운용이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금액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포상금 (310-03)	931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내역변경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포상금 (310-03)	23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내역변경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136-368)	포상금 (310-03)	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내역변경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포상금 (310-03)	41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전용	**인건비 (1101-100)**	**보수 (110-01)**	**44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합계			**1,44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 보상금이 예산 집행지침에 규정된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분’에 해당하며, 재원이 부족하여 인건비로부터 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이 아니더라도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는 맞지 않고, 부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부족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7쪽
(2)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가)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10) 인건비(대상)(1101-100)-보수(110-01)

3. 청탁금지제도운영: 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가. 개 요

‘청탁금지제도 운영’ 은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제도 운영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억 6,500만원 중 1억 7,800만원(집행률 67.2%)을 집행하고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11)]

[2023년도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탁금지제도 운영	303	303	-	△38	265	178	-	87	244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125	125	-	-	125	91	-	34	85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43	43	-	△16	28	20	-	8	40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63	63	-	-	63	21	-	42	47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30	30	-	△23	7	7	-	-	30
청탁금지 제도운영 보조인력	42	42	-	-	42	39	-	3	43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 사건에도 대응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동 추진단 관련 사업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음.

11) 일반회계-청탁금지제도 운영(1136-367)(부패방지국)

나.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에서 실적 감소로 인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집행률이 최대 80%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2020	507	△25	482	378	74.6	78.4
2021	509	△40	469	215	42.3	45.8
2022	427	△3	344	235	67.7	68.3
2023	303	△38	265	178	58.7	67.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실적의 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임. 실제로 최근 4년간(2020-2023)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 처리건수는 2020년 273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142건(△52.0%)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집행액도 2020년 3억 800만원에서 2023년 1억 7,8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42.2%) 감소하였음.

[최근 4년간(2020-2023) 청탁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처리 건수	본예산(A)	집행액(B)	집행률(B/A)
2020	273	398	308	82.8
2021	205	399	168	44.9
2022	124	315	177	56.2
2023	131	303	178	67.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점검·대면자문의 실시가 어려워 지출소요가 감소하였고, ② 실적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2023년에도 처리 건수 및 집행실적에 큰 변화가 없었고, ② 2023년 내역변경(감)에도 집행률이 67.2% 수준으로 저조하였으므로 실적 감소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12)]

12)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4,400만원으로, 2023년 예산현액(2억 6,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4.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종료): 임시조직 운영 근거의 사전 확정 필요

가. 개 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은 반부패 관련 의제 논의기구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7,700만원 중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4.1%)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3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672	-	△9	663	459	-	204	455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186	186	-	△9	177	25	-	152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3호, 2020.2.26. 시행)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동 훈령의 유효기간은 2023년 2월 25일임.

13) 일반회계-청렴권익민관협력(1133-333)(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 근거인 훈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2월 25일까지임에도 12개월 운영을 전제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당초 계상했던 예산 대부분이 불용(불용률 81.4%)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의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근거인 훈령의 개정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2023년 전 기간(12개월) 운영을 전제로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훈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 중 1억 5,200만원(81.4%)이 불용되었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근거 현황]

2018. 1. 3.「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10호) 제정
2020. 2. 26. 개정「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시행에 의해 유효기간 연장(~ 2023. 2. 25.)
2023. 2. 25. 유효기간 만료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근거 소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치는 등 훈령 개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였음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 근거인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제로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불용 위험이 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명한 업무협의기간(2022년 11월~2023년 2월)은 예산안 제출시점 이후에 해당하므로, 업무협의가 적기에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14)]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의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4) 일례로, 과거 한 차례 있었던 훈령개정은 당시 훈령의 유효기간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20년 2월 26일에 훈령 개정 및 시행이 성사되어서, 차기 예산안 편성시점에는 이미 협의회의 운영근거가 확정되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192억 6,100만원(2,810.1%)이 많은 1,23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1억 4,100만원(3,572.4%)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906	2,906	3,363	457	4,244	4,244	123,505	119,261	120,141
총수입	2,906	2,906	3,363	457	4,244	4,244	123,505	119,261	120,141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9억 6,900만원(△3.3%)이 적은 569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6,300만원(18.2%)이 증가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0,197	50,017	48,192	△1,825	58,924	58,924	56,955	△1,969	8,763
총지출	50,197	50,017	48,192	△1,825	58,924	58,924	56,955	△1,969	8,76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억 4,400만원으로 1,259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35억 500만원이 수납(수납률 2910.1%)되고 3,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4억 2,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44	4,244	-	4,244	125,961	123,505	32	2,424
합 계	4,244	4,244	-	4,244	125,961	123,505	32	2,424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9억 2,400만원으로, 이 중 569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8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8,924	58,924	-	-	-	58,924	56,955	826	1,144
합 계	58,924	58,924	-	-	-	58,924	56,955	826	1,14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969억 9,400만원이 감소한 78억 6,1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1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1억 1,300만원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8억 1,600만원 감소한 5,5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18억 1,6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51억 7,800만원이 감소한 78억 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87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30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5,1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61	104,855	△96,994	△92.5
		유동자산	3,151	101,264	△98,113	△96.9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967	850	117	13.8
		무형자산	3,742	2,741	1,001	36.5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55	1,871	△1,816	△97.1
		유동부채	1	1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54	1,870	△1,816	△97.1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806	102,984	△95,178	△92.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8,723	32,017	6,706	20.9
	재정운영순원가		53,087	47,336	5,751	12.1
	재정운영결과		53,087	47,336	5,751	12.1

2. 2023년도 결산 재정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분야에 재원 투자를 확대하였음.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성 예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연사업 비중이 77.8%로 과도하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수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사업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단계)이 지연되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2단계 구축사업 역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합 발주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등 출연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소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해당 부처의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사업 집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총괄: 과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연사업 비중의 단계적 축소 노력 필요

가. 개　요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 427억 2,100만원 중 414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집행률 97.0%), 이 중 77.8%를 차지하는 332억 2,200만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연사업으로 위탁 수행하고 있음.

[2023년 개인정보위원회 전체 사업(기본경비 제외)의 집행 방식별 분류]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직접수행	KISA 위탁	소계
위원회 운영지원	회의체 운영지원	380	244	-	244
	조직혁신지원	442	420	-	420
	기관운영지원	1,222	1,164	-	1,164
	위원회법무지원	315	248	-	248
	위원회홍보지원	660	633	-	633
	소계	3,019	2,709	-	2,709
위원회 정보화지원	정보화체계구축	1,220	1,120	-	1,120
	정보화체계 유지관리	838	831	-	831
	정보화업무지원	55	53	-	53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운영	1,807	-	1,807	1,807
	소계	3,920	2,004	1,807	3,811
개인정보 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1,139	497	639	1,136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공유	227	90	127	217
	개인정보보호 교육	928	-	928	928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직접수행	KISA 위탁	소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1,720	-	1,370 350 (개인정보 보호협회 보조)	1,720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1,314	-	1,314	1,314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지원	780	7	773	780
	소계	6,108	594	5,501	6,095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630	-	630	630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900	-	900	900
	소계	1,530	-	1,530	1,530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393	-	393	393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1,011	-	1,011	1,011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117	63	54	117
	소계	1,521	63	1,458	1,52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	391	391
	가명처리 기술지원	1,657	-	1,657	1,657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944	-	2,944	2,944
	소계	4,992	-	4,992	4,99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2,410	-	2,410	2,410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787	-	787	787
	소계	3,197	-	3,197	3,197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R&D)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	3,840	-	3,840	3,840
	신산업 민감 개인정보 활용 지원 기술개발	1,920	-	1,920	1,920
	기평비	235	-	235	235
	소계	5,995	-	5,995	5,995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 (R&D)	표준개발	1,140	-	1,140	1,140
	표준화 기반 구축	300	-	300	300
	기평비	60	-	60	60
	소계	1,500	-	1,500	1,500
개인정보침해 방지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7,082	2,461	3,765	6,22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3,827	-	3,827	3,827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30	30	-	30
	소계	10,939	2,491	7,592	10,083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직접수행	KISA 위탁	소계
합계	합계	42,721	7,861	33,572 (개보협 제외 33,222)	41,43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77.8%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시 재위탁하는 등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2020년 8월)된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수행역량이 부족하여 많은 집행 사업을 출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의 출연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한 부처의 포괄적인 사업을 대부분 특정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움.[1)]

출연사업은 그 특성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편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등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연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을 다시 위탁하여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의 경우,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반경쟁 후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은 단순 사업관리에 그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1)「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 관련 사업수행내역]

(단위: 백만원)

	교재 유형	제작비용	제작업체	사업수행방식
2021년	보호교육	250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인식 제고	205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전문관리자	100	B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B사
2022년	정보주체	290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개인정보 처리자	275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전문관리자	80	B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B사
2023년	정보주체	245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개인정보 처리자	230	A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A사
	전문관리자	63	B사	출연-일반경쟁 개보위-KISA-B사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둘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사업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당초 출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체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용자산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19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마다 쪼개어 집행하였는데, 해당 임차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체사업(KISA 운영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용자산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집행내역]

(단위: 원)

	출연사업 명	내역사업 명	지출결의금액
1	위원회 정보화지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35,907
2	위원회 정보화지원	개인정보 소통플랫폼 개선 및 운영	19,948
3	위원회 정보화지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64,616
4	위원회 정보화지원	정보주체 권리행사 지원 AI비서 운영	20,887
5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디지털환경 개인정보보호 이슈 연구	22,295
6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25,268
7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	2,425

	출연사업 명	내역사업 명	지출결의금액
8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보호 홍보	9,935
9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	31,291
10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	41,304
11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자율규제 활성화	52,413
1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보장	54,760
13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23,468
14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15,646
15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63,678
16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지원 보급	16,428
17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교육	54,760
18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15,646
19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30,744
20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1,957
21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7,132
22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4,224
2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20,887
2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제도개선	9,700
25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	23,468
26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82,687
27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지원시스템	230,303
28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78,228
29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171,867
30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81,592
31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83,391
32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처리 실태 모니터링	59,453
33	개인정보 침해방지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48,188
34	개인정보 침해방지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1,904
35	개인정보 침해방지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3,077
36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291,555
합 계			**1,911,032**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출연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금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산 출연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활성화 필요

가. 개 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결합·분석 등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가명정보 결합·활용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9억 9,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

[2023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992	4,992	-	-	4,992	4,992	-	-	3,328

나. 검토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활성화하여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을 통한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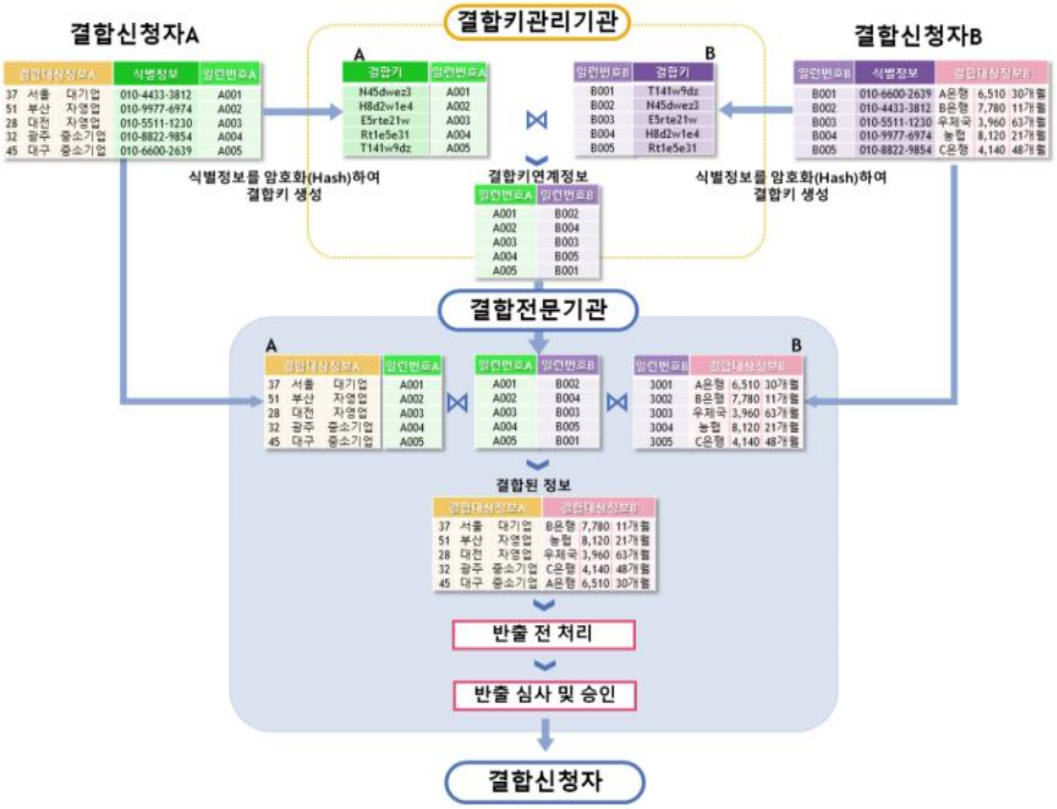
---

2) 일반회계-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개인정보정책국)

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등을 지원하며, 반출심사 후 결합정보 반출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가명정보 결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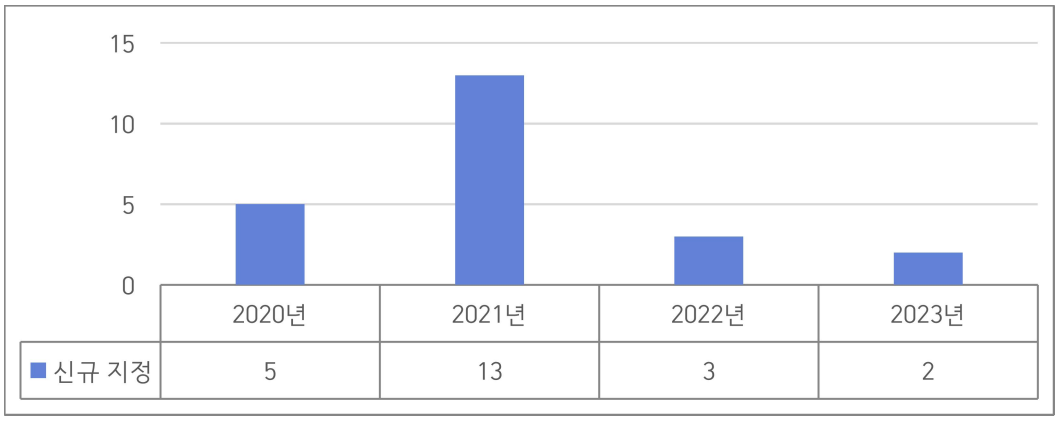
① 결합신청자는 각자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❶일련번호, ❷결합키, ❸결합대상정보를 생성 ② 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후 1번 단계에서 생성한 결과물 중 결합키관리기관(KISA)에는 ❶,❷번, 결합전문기관에는 ❶,❸번 송신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정보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전달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결합대상정보’를 결합 ⑤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결합된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하고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 ⑥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인 경우 반출승인

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규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신설 직후에는 2020년 5건, 2021년 13건으로 비교적 활발히 지정되었으나, 이후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지정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4)]

[2020~2023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규 지정건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 많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서로 다른 가명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간 결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2023년 말 기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23개를 구성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처 3개,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은 10개로, 민간부문의 비중은 절반 이하인 43.5%이며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2020~2023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구분	지정부처	지정기관	분류	지정일 (재지정일)
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통계청	부처	2020.11.27.(2023.11.27.)
2		삼성SDS	민간	2020.11.27.(2023.11.27.)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기관	2021.6.30.
4		㈜케이씨에이	민간	2021.6.30.
5		롯데정보통신	민간	2021.6.30.
6		한국정보인증	민간	2021.11.15.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민간	2022.4.11.
8		국세청	부처	2022.4.21.
9		LG CNS	민간	2022.7.5.
10		CJ 주식회사	민간	2023.2.2.
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기관	2020.10.29.(2023.10.29.)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2020.10.29.(2023.10.29.)
13		국립암센터	공공기관	2021.9.1.
14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2020.11.24.(2023.11.24.)
15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관	2023.11.1.
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기관	2021.1.8.
17		SK C&C	민간	2021.1.8.
18		더존비즈온	민간	2021.1.8.
19		비씨카드 주식회사	민간	2021.10.6.
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공기관	2021.10.6.
2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기관	2021.6.1.
22	산업통산자원부	한전KDN	공공기관	2021.9.6.
23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부처	2021.12.2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가명처리기술지원’(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가명처리 지원센터·활용센터) 16억 5,700만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9억 4,400만원 역시 가명정보 결합 생태계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992	4,992	-	-	4,992	4,992	-	-	3,328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391	-	-	391	391	-	-	391
가명처리 기술지원	1,657	1,657	-	-	1,657	1,657	-	-	2,537
가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944	2,944	-	-	2,944	2,944	-	-	400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명정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을 받은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사업은 가명·익명처리 기술, 인프라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개인정보처리자 대상으로 법제도·기술 등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2023년도 해당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음.

2023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은 종합컨설팅 15회, 부문컨설팅 31회 수행하여 총 46회 수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부문컨설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행으로 전환하고 종합컨설팅은 22회 이상 수행할 계획임.[5)]

5)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수행 시작(서류작성)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평가 및 결합 등 데이터 활용까지 수반되는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컨설팅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문 컨설팅은 법제도, 기술, 적정성 검토 등 단계를 부분적으로 컨설팅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3년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수행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목표)
종합컨설팅	5건	11건	15건	22건
부문컨설팅	36건	36건	31건	(KISA 자체수행 전환하여 목표 미설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부터 데이터 분석, 결합까지 지원함에 따라 종합컨설팅 과정에서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이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가명정보 결합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을 받은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회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계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의 주요 사업내용]

1. 사전 준비 및 교육 수행(연구자 대상 사전 교육 수행, 컨설팅 요구사항 파악)
2. 제도 및 법률 검토 지원(가명처리 내부관리계획 마련,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정 지원, 연구계획서 작성 지원)
3. 데이터 사전 분석(보유 스키마 분석, 데이터 셋 구성협의, 결합키 선정 지원)
4. 결합대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전처리 지원
5. 위험도 분석(위험도 분석 수행 및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수행)
6. 가명처리(가명처리 수준 정의표 작성, 가명처리 지원)
7. 적정성 검토(적정성 검토 기초자료 작성)
8. 결합(결합신청서 작성 지원)
9. 반출(반출심사 대응 지원)
10. 사후관리(결합대상데이터에 대한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공)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사업: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으로, 예산현액 70억 8,200만원 중 62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2,6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3,000만원을 불용되었음.[6)]

[2023년도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인정보 침해방지	10,939	10,939	-	-	10,939	10,083	726	130	8,686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7,082	7,082	-	-	7,082	6,226 [5,903]	726	130	5,164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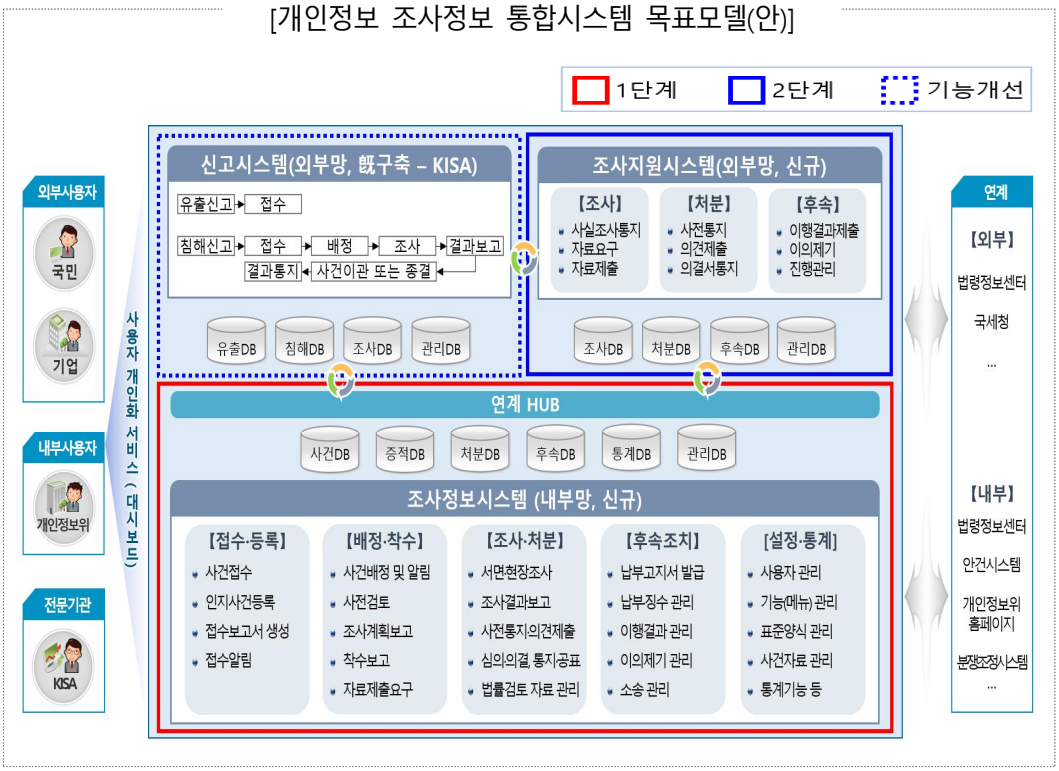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수립한 ‘개인정보 사건처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3~2024년 2년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자 하였음.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은 현재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조사 이력 및 현황 관리, 조사자료의 보안 등에 등의 취

6) 일반회계-개인정보침해방지(1034-301)(개인정보정책국)

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신고·접수·조사·처분까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② 사건별 관리번호 부여 체계를 완비하는 등 조사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③ 조사·처분 정보 및 판례 정보 등을 DB화 하는 등의 사업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목표모델(안)]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업수행 단계에서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 5월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이월 발생 사유로, ① 과업 도중 계약자의 귀책으로 PM, 총괄 PL 등 주요 인력 8명에 대한 인력교체가 발생(2023.6.23.)하여 업무분석 및 설계에 상당한 추가시간이 소요되었으며, ② 조달청 입찰을 통한 기술평가 결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경험부족 등에 따른 낮은 업무이해도로 인한 빈번한 시스템 오개발 및 재개발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한편, 2024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을 9개월로 예상하고 사업을 수행(2024.3.15.~12.31.)하고 있는데, 1차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은 1차 사업의 종료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년도 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2차 사업의 수행업체는 1차 사업의 수행업체와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는바, 1차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1~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건수]

(단위: 건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163	167	318
처분	56	85	176

주) 신고 건은 신고 접수된 사항을 기준으로 허위·중복신고, 타부처(금융위) 이관 건 등이 포함된 것이고, 당해연도 처분 건은 처분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신고를 포함하여 집계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가. 개 요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국민 서비스인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사업출연금(350-02)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18억 700만원 중 17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었음.[7)]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지원시스템 운영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위원회 정보화지원	3,920	3,920	-	-	3,920	3,811	100	9	1,921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1,807	1,807	-	-	1,807	1,807	-	-	1,028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소관 부처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각 위탁운영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되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용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등)과 자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7) 일반회계-위원회 정보화지원(정보화)(1030-302)(기획조정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장기계속계약 중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사업 20억 3,79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개요]

❍ 사업명 : 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24개월)
- 1차년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2차년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예산 : 총 3,988,166,000원(부가세포함)
- 1차년 사업예산 : 1,994,083천원, 2차년 사업예산 : 2,037,900,000원
* 2차년도 계약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
❍ 사업 목적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적정 성능을 상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본원 전산실 운영 전문성 강화
-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출연사업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보시스템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복수 부처의 출연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나로 각 부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부처는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출연금의 미집행분 또는 이자상당액의 반납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각 소관 부처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체 홈페이지 등의 운영·유지사업은 KISA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회계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상 정보자원 현황]

구분	본부	담당부서	시스템명	위치	수량	홈페이지	
1	경영기획본부	정보보안팀	경영정보시스템 (원내 기반시설)	나주	360	1	대표
			정보보안 (원내 보안장비)		432		-
2		재무관리팀	자산관리(업무용 PC)	나주	2	2	전자계약
3		운영지원팀	기록물관리시스템, 항온항습기	나주	5		-
4	사이버침해대응본부	탐지대응팀	[신규] 파밍사이트 차단안내	서울 가락동	-	3	파밍사이트
5		전자정부보호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나주	9		-
6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 침해조사팀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나주	3	4	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5	신고처리
7		118상담팀	118상담시스템	나주	14	6	118상담
8		스팸정책팀	스팸대응시스템	서울 논현 LG + KIDC	127		-
9		전화사기예방팀	발신번호변작대응시스템		33		-
10	디지털보안산업본부	보안수준인증팀	ISMS 인증관리시스템	나주	6		
11		디지털서명인증팀	최상위인증기관인증시스템	서울 가락동, 일부 나주	81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	7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신규] 전자서명인증 인정기관 홈페이지		-	8	전자서명인증 인정기관
12		차세대암호융합팀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	나주	-	9	암호이용활성화
13		보안교육정책팀	KISA아카데미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나주	4	10	아카데미
14		글로벌진출지원팀	글로벌사이버보안협의체	나주	-	11	CAMP
15	디지털기반본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나주	4	12	전자거래
			[신규] ICT분쟁조정 지원센터(온라인광고)	나주	-	13	온라인광고
16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나주	-	14	인터넷분쟁
합 계(부서 16개팀)					1,080	14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부처명	연번	사업명	지출액	지급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지원	7,511,740	2023년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8,199,446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4,614,295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060,939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8,604,751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3,290,001	
	7	개인정보 침해방지	75,028,339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173,309,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	342,330,815	
	2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45,707,687	
	3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	110,034,287	
	4	전자서명인증	160,054,885	
	5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5,404,130	
	6	핀테크산업활성화 기반조성	8,438757	
	7	암호이용활성화	25,469,023	
	8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운영	8,314,046	
	9	인터넷이용환경 고도화	38,899,594	
	10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4,611,893	
	11	이용자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45,799,838	
	12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2,585,668	
	13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8,31,404	
	14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498,843	
	15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75,248,865	
	16	글로벌 ICT혁신클러스터 조성	286,835	
	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26,226,656	
	18	페이퍼리스 촉진지원	43,195,704	
	19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	9,644,710	
	소계		962,752,236	
방송통신위원회	1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3,994,898	
	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4,863,717	
	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139,024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3,427,183	
	소계		23,424,822	
행정안전부	1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24,680,103	
	소계		24,680,103	
KISA 운영지원	1	KISA 자체사업, 경상비 등	853,733,328	
	소계		853,733,328	
합계			2,037,900,00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가 소관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세부사업(‘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업의 집행액 19억 9,400만원 중 1억 7,33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에 각각 나누어 지출하였는데, 각 출연사업의 예산편성내역에는 해당 유지보수 사업의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지급대금을 매월 지출하면서 1~9월분 지출내역은 있으나 10~12월분은 지급내역이 없는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나의 통합사업을 각 부처의 출연사업마다 지출하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지출건명	지출액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지원	1~9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7,511,740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8,199,446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4,614,295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060,939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8,604,751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3,290,001
7	개인정보 침해방지		74,737,702
			290,637 (조달수수료)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173,309,55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용역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을 집행하면서 다수의 출연사업에 쪼개어 집행하는 것은 ① 해당 유지관리 사업 지출이 각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고, ② 출연사업별로 유지관리 사업 지출을 배분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예산의 77.8%를 출연하는 만큼, 출연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출연금 집행내역을 면밀히 살피어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의적인 출연금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위원회 정보화지원' 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으로 재편성하거나 각 세부사업에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